

제 1 장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

1. 청소년의 개념

1) 학술적 정의

인생의 발달단계 중 한 단계로서의 청소년기란 개념은 스탠리 홀(Stanley Hall)이 1940년에 ‘청소년기’란 책을 내면서 학문적으로 처음 사용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일차대전후 전쟁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이 ‘새 세대’(new generation)로 출현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들은 과거의 행동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성인들이 젊은이들의 유행을 따르게 되었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따라 가기도 하면서 또한 비난하기도 한다. 다시말해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생리적 변화로 시작되지만 성인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끝나게 된다. 성인의 지위란 그 사회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 및 권리로 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상을 법률(민법)상의 성인으로 인정한다. 법률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성인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란 우선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이춘재, 1988).

청소년기라는 일생의 한 단계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없었던 개념이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배우면서 거들고, 그것이 바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는 심리·생물학적으로 성숙하는 것과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성인이 되는 것과의 별다른 괴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시기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 습득해야 할 과업이 많아지고, 가정의 수입이 많아진데 반해 각 가정에서 양육해야 할 자녀수는 감소함에 따라 청소년 개개인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져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성

인유예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잠깐 동안의 과도기가 아니라 일생의 발달단계 중 중요한 시기로 이론적으로 구분되며, 사회적으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물론,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사회계층이 되었다.

종래에는 청소년기의 정의를 사춘기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사춘기는 영어로 adolescence로서 이 말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어른(adol)이 되기 시작한다(escence)’, ‘성장해서 성숙에 이른다’의 뜻을 알 수 있다. 어원에서 시사하듯이 사춘기는 성인으로서의 생식기능이 발달하게 되어 인간의 종족보존 기능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시기로서, 생에 있어서 출생에 버금가는 중요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때이기도 하다(이춘재, 1988).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제2차 성징이 출현하고 생식능력과 출산능력이 갖춰지는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체중, 신장 등 체격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특성을 갖는다. 제2차 성징은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상의 성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자의 경우에 최초로 사정이 시작되고 목소리가 굵어지며 목뼈가 튀어나오는 등의 특징을 보이는 한편, 여자의 경우는 초경이 시작되고 골반이 커지며 유방이 융기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생리적 차원과 함께 심리적, 사회 구조적 차원을 고려하여 청소년기를 정의하는 것이 학계의 추세이다. 즉, 생리적 사춘기가 도래하는 때를 청소년기의 하한으로 보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 형성됨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때를 청소년기의 상한으로 보고 있다.

2) 법률상 정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보이는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별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청소년을 지칭하는 법률용어가 상이하고, 청소년에 대한 적용연령이 각각 상이하며, 청소년기본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에서

는 상한 연령만 규정하고 있다(표 1참조).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 명칭은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아동” 등 다양하다.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법률에서 사용하고 연령범위(9세-24세)까지 함께 정의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이 유일하다. 그외 연령범위는 정의하지 않고 단지 청소년이라는 명칭만 사용한 준용법률로는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이 있다.

유사명칭으로서 “연소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18세미만자로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영화진흥법과 음반및비디오물등에관한법률이고, 연령정의 없이 연소자 명칭을 사용한 준용법률로는 공연법이 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명칭을 사용한 법률로는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 법률들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법률로서 유해업소를 단속, 정화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4조에 성년(만 20세이상)만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정의는 어느 법에도 없기 때문에 민법의 “성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성년자”를 해석하여 20세미만자로 적용하고 있다.

“소년”명칭을 사용한 법률은 유일하게 소년법이고 동법에서는 소년을 20세미만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연령대를 지칭하는 법률용어로 “아동”명칭을 사용한 법률은 아동복지법으로서 18세미만자를 아동이라 규정하였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청소년명칭 대신에 18세미만자, 20세미만자를 혼용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률의 연령별 각종 행위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육성법률군(예: 청소년기본법 등)은 연령규정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9세-24세), 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유해업소의 출입제한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법률군(예 : 공연법, 음반및비디오물등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은 연령 규정이 낮은 편이다.

셋째, 미성년자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된(법조문 7개조에 불과) 법률로서 시

대상황에 뒤떨어지고 타법과도 상충되고 있다. 예컨대, 20세미만자에게 담배·술 제공을 금지하고, 풍속영업과의 벌칙규정이 상이함으로 인해 미성년자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청소년해당연령을 18세미만자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청소년 연령규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명칭과 연령 적용범주가 법률마다 상이하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청소년행정의 다양한 특성에 기인한다. 청소년행정과 관련된 부처는 17개 부처(청)로, 각 부처의 소관업무에 따라 육성, 지원, 복지, 규제, 단속, 보호 등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 적용범주가 다양하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법률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명칭을 통일하고 적용연령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행상의 곤란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청소년의 법률상 개념의 다양성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통일성도 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명칭과 연령기준을 정부시책의 고유목적에 따라 신축성 있게 설정하고 시대상황에 맞게 청소년 연령범위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육성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은 24세로, 규제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은 18세미만으로 규정할 것을 권장할 만하다.

둘째, 시대상황 및 현실여건과 동떨어진 법률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20세미만자를 미성년자로 해석하고 미성년자의 음주,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19세미만자에 대하여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9세, 20세에 달한 청년들은 실제 사회적 신분으로는 주로 대학생, 군인, 근로자 등으로서 성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음주 및 흡연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인데도, 상기한 두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 사회관행과 현행 법률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현행법률의 청소년 연령정의

법률상 명칭	연령	규정 법률	준용 법률
청소년	9세~24세	○연령을 정의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연령정의없이 “청소년”명칭사용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청소년기본법 -육성·지원의 폭을 확대 ○UN권장사항 -15~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
소년	20세미만	○소년법	
아동	18세미만	○아동복지법	
연소자	18세미만	○영화진흥법 ○음반및바다오물해관한법률 ○공연법	○공연법상에는 연령규정없이 연소자로만 규정
미성년자	만20세미만	○미성년자의 연령을 정의한 법률 없음 -사유:민법의 성년개념반대해석 ○연령정의없이 “미성년자”명칭사용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민법 -민법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원용
-	19세 미만 18세 미만	○국민건강증진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명칭없이 연령만 규정
청소년, 미성년자, 18,20세미만자 혼용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 종류에 따라 출입제한연령을 상이하게 규정

 연령정의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

	13세미만 총 1-2	14세미만 총 2-3	16세미만 총 1-2	18세미만 총 3-대1	19세미만 대1-2	20세미만 대2-3	전국민
형법 305조 강간죄(305조) 근로기준법 50조 금지	· 13세미만부터 간음시 · 근로자로 사용 · 금지						
형법 9조 소년법 4조 약사법 48조 아동복지법 18조	· 형사책임 무능력자 · 형사사건에도 보호처분 · 독약·극약 구입 금지 · 흉행을 위한 곡예금지						
소년원법 8조 민소법 293조 형소법 159조 형법 274조	· 소년원에서 16세이상자와 분리수용 · 법정에서 선서무능력자 · 생명·신체유해업무에 고용금지						
음비법 8조·22조 영화진흥법 18조 공연법 14조의 3, 22조 마약법 46조의 3 향정신약품법 20조 유해화학물질법 30조 아동복지법 2조·13조 근로기준법 51·56·58조 소년법 59조·62조 종속영업법 3조	· 연소자관람판가 배채물 담지 · 비디오방 출입금지 ·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환 각물질(본드,신나,부탄가스) 판매금지 · 아동복지시설 수용대상 · 유해사업·경내근로·야업금지 · 형사상 특별취급 · 종속영업소에서 고용금지 (유혹주점·성인전자유기장·음 반비디오 판매·대여업, 만화대 여업, 노래연습장 등) · 성인전자유기장, 성인소극장, 노 래연습장에 출입금지						
국민건강증진법 9조	· 19세미만자에 담배판매금지						
미성년자보호법 2조 종속영업법 3조	· 흡연·유흥금지 · 불량판화, 음란도서·공연 등 판매금지 · 성인용 공연물 관람금지 · 출입제한구역 출입제한 · 유흥주점, 터키탕, 무도장 출입금지 · 소년법의 보호대상 · 소년교도소 수용대상 · “미성년” 적용대상						
소년법 2조 행형법 2조 민법 4조							
형법 243·244조						· 음란물 제조·반포 금지	

〈그림 1〉 청소년보호관련 법률에서의 청소년연령별 보호내용

2. 환경의 개념과 분류체계

1) Lewin의 場理論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다같이 주장하는 주요 논제는, 행동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내에 존재하는 환경보다는 오히려 지각된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기초가 되는 환경에 대한 현상학적 개념은 Kurt Lewin의 개념인 ‘생활공간(life space)’ 또는 ‘심리학적 장(psychological field)’이다. Lewin은 행동과 발달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는 환경적 측면은 객관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실재(reality)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주관적 실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환경 속에서 그리고 환경과 더불어 상호작용하는 인간이 그 환경을 지각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Lewin의 최초의 논문인 ‘전쟁풍경’은 장이론(field theory)의 기본적인 이론적 개념들을 훌륭히 예시해 주고 있다. Lewin은 풍경에 대한 지각된 실체가 어떻게 우리가 그 풍경에 한발짝 더 가깝게 이동할 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 나타났던 농장, 들판과 숲이 우거진 지역의 사랑스러운 목가적인 장면이 점차 변형된다. 숲으로 쌓인 언덕 꼭대기는 관측소가 되며, 언덕에 가려진 쪽은 소총을 설치하는 곳이 된다. 들여다 보이지 않는 도랑은 포병부대의 전방 응급 치료소 후보지로 보인다. 단 몇 km 뒤에 있을 때는 밝게 보였던 자연스런 풍경의 측면들이 이제는 불길한 것으로 지각된다. 즉, 무서운 협곡, 나무로 된 위장품, 보이지 않는 적이 숨어있는 언덕, 정복해야 할 보이지 않는 목표물, 격전 후의 안전을 위한 장소와 순간들로 지각된다.

후에 개념화한 Lewin의 장이론의 기본 전제들이 바로 “전쟁풍경” 속의 문학적 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행동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 환경보다 현상학적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환경이 장면내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를 참고하지 않고 환경의 객관적인 속성들만 가지고는 그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 환경적 사물과 사건도 뚜렷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보이지

않는 적, 따뜻한 음식을 주리라는 약속, 생존을 위해 하룻밤을 잘 것인지 깨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 등과 같이 비현실적이고 상상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2)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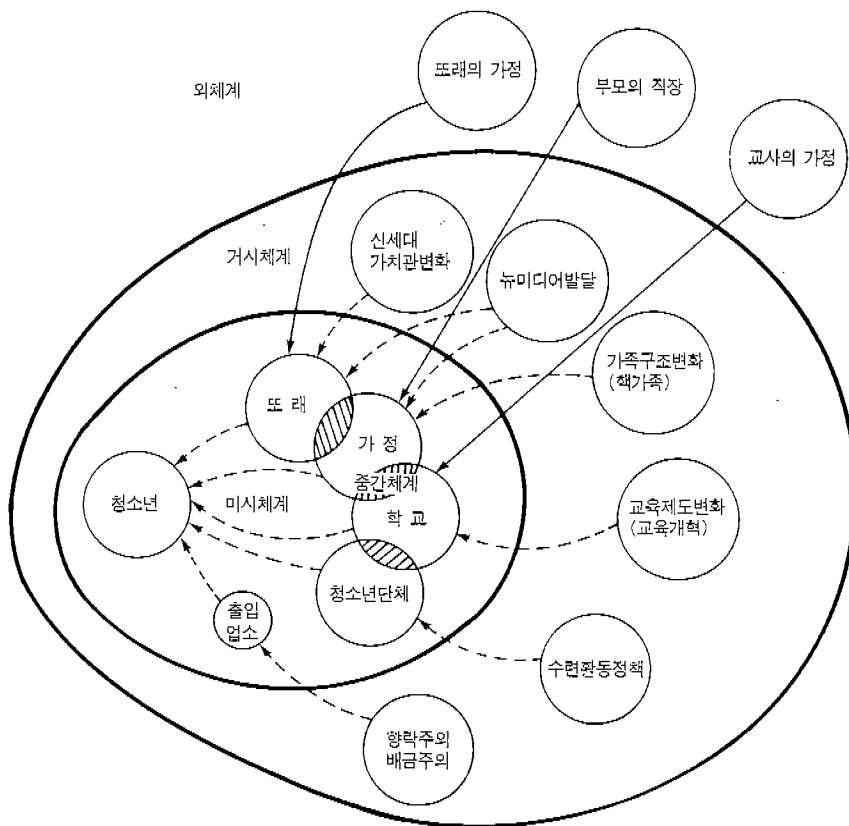
인간발달생태학(human developmental ecology)이란 환경적 상호연결성과 그 상호연결성이 심리학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힘에 관한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이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은 대인간 과정들(interpersonal process), 예컨대, 강화, 모델링, 동일시 및 사회학습 등에 대한 이론들이다. 대표적으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은 사회환경이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학습이론적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생태학적 환경은 발달하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인 상황, 즉 개인이 반응하는 대상이나 그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초월한 훨씬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그 장면(setting)에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들간의 관계, 그 관계의 본질, 그리고 그 관계가 직접 그 개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발달주체인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영향들이다. 이러한 즉각적인 환경 내에서의 상호관계들의 복합체를 미시체계(microsystem)라고 부른다.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의 원리는 장면들내에서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면들간의 연결고리들에게도 똑같은 힘과 결과로써 적용된다고 본다. 발달주체가 실제로 참여하는 장면은 물론 그가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도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 개인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다. 전자가 중간체계(mesosystem), 후자가 외체계(exosystem)가 된다.

마지막으로 겹구조로 된 상호관련된 체계들의 복합체는 특정한 문화나 하위문화에 공통되는 사회적 제도의 이념과 조직 위를 덮고 있는 아치형태로 볼 수 있

다. 그러한 일반화된 형태를 거시체계(macrosystem)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회나 사회 집단내에서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의 구조와 본질이 마치 같은 모델에 의해 구성된 것처럼 유사한 경향이 있고, 그 체계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간에는 그 구성체계가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 다른 인종, 종교집단이나 혹은 전체 사회들을 특징짓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더 큰 사회적 맥락이 인간발달을 위한 환경으로서 갖는 생태학적인 속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인간발달생태학 체계

발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머니-아동 이원체제의 역량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뿐 아니라 가족 외부 사람들의 행동에도 의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외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컨대, 탁아기관 종사자- 다른 장면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하고(중간체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컨대, 어머니의 직장 동료와 같은 사람- 어머니와는 접촉이 있어도 아동과는 전혀 접촉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외체계). 그러한 외적 긴장과 지원의 존재와 본질은 좀 더 넓은 사회(거시체계)에 있는 제도와 신념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혼가정 아동들의 삶을 의의있게 변화시키거나 이혼으로 인해 입은 심리적 발달의 손상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의 제도와 이념적 유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미시체계(microsystem)

미시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의 독특한 물리적·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가정, 학교, 야영장, 놀이터, 각종 영업시설 등과 같이 사람들이 쉽게 얼굴을 마주 대하는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다. 활동,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요인들은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건축자재인 셈이다.

아동의 심리적 성장은 아동이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촉진된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그후에는 가정 밖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아동 자신은 계속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고, 딸, 여동생, 손자, 조카, 친구, 학생, 같은 팀의 동료로서 새로운 역할을 배울 때 좀 더 복잡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킨다.

대인관계 요인으로는 관찰적 이원체제, 공동활동 이원체제, 일차적 이원체제 등이 있다.

관찰적 이원체제(observational dyad)는 한 구성원이 다른 사람의 활동에 대해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적어도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형성된다.

공동활동 이원체제(joint-activity dyad)는 두 명의 참여자들이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는 의미라기 보다는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다소 다르면서, 일종의 통합된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아동이 함께 그림책을 쳐다보고 있더라도 엄마는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동은 엄마의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물건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이다.

일차적 이원체제(primary dyad)는 함께 있지 않을 때조차도 양쪽 참여자에게 현상학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체계이다. “현상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두 구성원이 서로서로의 사고 속에 나타나고 강한 정서적 감정의 대상이 되며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서로의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아동, 혹은 친구사이로 그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말할 할지 등을 상상하는 경우가 일차적 이원체제인 것이다.

(2) 중간체계(mesosystem)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이루어진다. 예로서, 아동의 경우는 가정, 학교와 이웃, 동료집단 사이의 상호작용들이며, 성인의 경우는 가족, 직장, 사회생활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다.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된다. 이러한 일차적인 연결 이외에도 상호연결성에는 많은 부가적인 형태의 상호연결고리들이 있다.

아동이 성장하여 더 높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는 가정으로부터 점차 고립되어 간다. 학교건물은 점점 더 멀리 떨어지고 더 커지고, 더욱 비인격적이 된다. 교직원의 수는 증가하고 더 먼 지역으로부터 뽑혀오며, 때로는 그 지역사회에서 살지 않고 멀리서 통근을 한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교사들이 서로 알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학교가 도시의 변두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는 청소년들을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준비시키려는 학교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리고 학교가 기여해야 할 지역사회, 이웃, 가족들의 생활로부터 물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일종의 “수용소”가 되어간다. 학교 자체내에서도 청소년들은 해마다

바뀌는 교실로 인해 서로 차단되어지면서 반복적으로 고립화된다. 게다가 교실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정체감이 거의 없거나 아주 없고, 적극적 공동체로서 교실간의 연결도 별로 없다. 이러한 상호연결고리의 부재는 많은 수의 아동들이 주로 또래끼리만 내던져지므로 연령별로 분리된 파괴적인 세력이 만들어져도 이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학교는 과거 수십년이상 “사회에서 집단을 만드는 가장 세력있는 양식장의 하나”가 되어 왔다(Bronfenbrenner, 1974b, p. 60). 미국의 청소년들이 과거 수십년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취도 검사에서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바로 이 소외때문이라고 본다. 이 점은 청소년들의 살인, 자살, 약물복용과 범죄의 증가율에서 더욱 뚜렷이 볼 수 있다(Bronfenbrenner, 1975).

(3) 외체계(exosystem)

외체계란 하나 이상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주체가 그 환경들 속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환경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환경이다. 외체계의 예를 들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손위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부모의 사회적 조직망(social network), 지방 교육청의 활동 등이 포함될 것이다.

부모의 직장은 외체계 영역이다. 외체계는 아동발달에서의 가능성과 과정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치에서만 주변적일 뿐 영향력 면에서는 결코 주변적인 것이 아니다. 요즘은 사회문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중년기 아버지들의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이 가족에게 특히 청소년자녀에게 미치는 정신적, 경제적 불안을 상상해 보면 외체계인 부모의 직장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 형성된 태도가 가정으로 연장되어, 부모로서의 가치관과 양육실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Kohn의 연구결과들은 작업환경이 아동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체계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스컴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외체계로서 작용한다. TV프로그램

램이 외부로부터 가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TV는 아동의 외체계 일부를 구성한다. 이 강력한 대중매체가 발휘하는 영향력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모사이와 부모-아동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므로 2차적 효과를 갖는다. 이 경우, 그 효과는 완전하게 미시체계내에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체계의 현상으로서 생태학적 경계들을 걸쳐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TV화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TV가 이끌어 내는 “나쁜” 행동들 -예컨대, 선정성, 폭력성 등- 의 발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TV가 방해하는 “좋은” 행동의 형성을 저해하는 데에도 있다. 즉 아동은 대화, 게임, 가족모임과 토론 등의 “좋은” 행동을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성격도 형성되는데, TV는 이러한 행동들을 방해하고 있다 (Bronfenbrenner, 1974c, p.170).

(4) 거시체계(macrosystem)

거시체계는 주어진 문화 또는 하위문화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그리고 외체계의 형태와 내용이 나타내는 일관성을 의미하며, 그런 일관성에 기초가 되는 신념체계 또는 이념을 의미한다.

Luria는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려면 역동적인 환경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발달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동적인 환경체계 내에서의 발달”을 Einstein의 특수상대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비유하자면, 인간의 발달이란 달리는 기차안에서 진행하고 그 달리는 기차가 바로 거시체계이다.

텔레비전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사건들을 아동들의 일상적 경험속에 끌어들임으로써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표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나 신념체계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텔레비전이 아동발달의 거시체계를 구성하는 현상학적 세계에 외적체계는 물론 거시체계까지 제공해 주게 된다.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여부는 발달주체에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을 자극하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지 혹은 폐쇄되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아동기부터 부모와의 다른 성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가정밖의 과제지향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건

전한 발달이 증진된다.

청소년에 대한 기회의 개방은 이론적 의의 뿐 아니라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사실과, 거리에서의 청소년비행, 학교 내에서의 학원폭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실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사회과학과 사회정책간의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바람직하게 되려면,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고 특정한 문화나 하위문화가 갖는 특징적인 제도적 구조와 일반화된 이념 등을 포함한 거시체계적 사회환경을 사회정책적 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정책은 거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하위체계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의 속성을 결정 짓는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발하는 기본 틀이 되기 때문이다.

3) 유해환경의 개념정의

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환경은 인간의 성장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 즉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이상섭, 1991:26~27).

국내외 학자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의 유해환경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표 2참조). 이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청소년과 그러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유해한 영향의 결과”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특성은 첫째, 환경의 유해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즉, 어떤 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판단의 주체나 판단기준, 청소년의 연령, 사회풍토, 사회문화적 맥락, 특정환경의 운용행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대성은 유해환경의 규제가 청소년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도종수 외, 1990:46~

47).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미시적 환경 요소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시적 환경요소들을 포괄한다.

〈표 2〉 유해환경의 개념정의

연구자	개 념 정 의
서울 YMCA (1990)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
유수현(1989)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제요소를 유해환경으로 보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학교주변 향락업소, 유해 영상매체, 유 해 출판물 등을 유해환경의 요소에 포함
유재천(1989)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잡지, 방송, 영화, 만화 등 의 대중매체를 유해환경의 주요 요소로 포함
임형진(1991)	환경이 건전하지 못하여 도리어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 내지 침해함으로써 건전육성을 방해하는 생활환경
한준상(1991)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성장에 비교육적이고도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과 그런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의 총 체
김문조(199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에 문화나 제도영역과 같은 비가시 적인 여러 사회환경을 포함
失鳥正見(1987)	청소년 유해환경의 유해성 요소 3가지 ○ 청소년 건전성장의 저해 ○ 청소년의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피 해’ ○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가능 성

4) 유해환경의 분류

(1) 유해성의 개연성에 따른 분류 : 절대적 유해환경과 상대적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유해성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절대적 유해환경과 상대적 유해환경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연령, 사회문화적 맥락 등에 무관하게 특정 환경에 대한 접촉 자체가 명백하게 청소년에게 유해성을 초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일반이 널리 인정하는 환경을 말한다. 예컨대, 성폭력과 같은 유해행위, 마약과 같은 유해물품, 안전장치 없는 놀이터같은 유해시설 등이 절대적 유해환경에 속한다. 상대적 유해환경이란 특정 환경 그 자체가 언제나 어떤 청소년에게나 반드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미성숙도에 따라, 청소년이 그것을 접촉하는 상황에 따라, 특정 환경에 대한 그 사회의 수용도에 따라 그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할 개연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환경을 말한다. 예컨대, 선정성 또는 폭력성 유해매체물,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할 영업소 등은 특정 사회의 특정 시대상황에 따라 특정 연령대의 청소년들에 한해서 접촉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유해환경을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든 유해환경들이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이러한 환경요소가 위치한 장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목적 등에 따라 유해성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이러한 환경이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상대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2) 분석단위에 따른 분류 : 미시체계 유해환경과 거시체계 유해환경

전술한 인간발달생태학의 관점에 기초한 분류로서 미시체계적 환경은 청소년이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게 되는 일차적, 직접적 환경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생활영역에 따라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구분하던 방식인

가정, 학교, 사회의 구분은 생태학적 관점의 분류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 ‘학교’ ‘사회’란 물리적인 생활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역할 등으로 규정되는 생활영역을 의미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가정환경’에도 미시적 체계가 있고 동시에 거시적 체계가 있다. 예컨대, 특정 청소년과 부모형제가 만나는 집안에서의 만남의 장은 미시체계 환경이나, 사회내에 만연해 있는 ‘2명남기 가족계획운동’이나 ‘딸보다는 아들 낳고 싶어하는 남아선호’ 등의 인식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전반적 가치관이라는 거시체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또한 미시체계가 될 수 있고 거시체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길거리를 걷다가 본 낯모르는 어느 사람의 행동이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 말은 미시체계 환경일 수 있다. 그외에 사회적으로 조성된 각종 의식과 가치관, 풍조, 공공정책, 법과 제도 등은 거시체계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청소년학회, 1993) 분류하였던 사회심리적 유해환경을 미시체계 환경에 포함하고, 사회제도적 환경은 거시체계 환경으로 분류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주요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시체계 유해환경 : 사회심리적 유해환경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유해환경은 신체적·심리적으로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 사회화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 사회의 각 영역에서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요소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가정내 유해환경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가정내의 갈등, 권위주의적이거나 통제적 또는 방임적인 양육태도 등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애정이 결핍된 부모-자녀관계 등이다.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환경요소가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저해함과 동시에 청소년 문제행동의 중요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부모 대부분이 자신의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유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내 유해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자.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의 장이다. 학교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유해환경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교사와 학생간 또는 학생 상호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시위주 또는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성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만으로 교사와 학생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다음으로는 또래집단내 유해환경을 들 수 있다.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사회구조, 대가족의 쇠퇴, 세대차의 심화 등으로 인해 또래집단의 영향은 더욱 커지고, 청소년들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의 특성상 쉽게 동조하는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또래집단에 예속되어 자신들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응집성이 강한 비행성 집단내에서 비합법적인 태도와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청소년기 비행이 사회화된다는 비행이론에서도 주장하는 바이다. 국내외 대부분의 비행관련 현장연구들은 비행과 비행성 또래집단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비행성 또래집단은 거기에 속한 청소년이 가해자로서 비행에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이 있는 환경이면서 동시에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는 소위 학교내외의 비행집단으로 일반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한 유해환경이 되고 있다.

거시체계 유해환경 : 사회제도적 환경

한 사회내에 존재하는 사회제도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제도적 환경은 개인의 행동이나 가치관 그리고 도덕 등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비하여 그 영향의 정도가 크고 그 효과 또한 지속성을 지닌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 예로는 주로 개개인의 신념체계에 속하는 이념, 가치관, 도덕적 판단, 역할, 기대, 지각 등과 집단이나 제도의 구조적 속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적 환경은 넓게 보면 우리 삶의 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 과도한 간섭이나 기대 등도 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유해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사회의 모든 성인들이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나 한 연구(한승희 외, 1990)는 우리나라의 성인들 대부분이 청소년을 문제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청소년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과 반항의식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3. 청소년유해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첫째, 인쇄매체에 대한 사회적 유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설정 및 그 적용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청소년기준과 성인기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대체로 도서, 잡지, 주간신문, 만화 등의 독자가 일반대중인 경우에는 청소년 표준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독자층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록 성인에게는 무방한 성적표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선정적 표현을 실은 도서, 잡지, 만화, 주간신문의 판매를 제한시켜야 한다.

둘째, 가부장적 간섭원리에서(paternalism)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청소년 매체물을 규제하게 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파트널리즘은 국가나 나라의 안전보장이나 사회적 공인 혹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별하고 선택해 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체육부, 공보처,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내무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서 매체물에 관한 관리나 통제 및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행정부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행 매체물 관련법규들은 청소년의 건전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주로 매체물의 음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폭력성에 대한 심의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해한 간행물의 폭력성을 심의하고 규제할 근거가 불충분하다.

1) 제도적 개선방향

인쇄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성인용, 청소년용, 아동용에 관한 등급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심의규정을 재조정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행물 유통은 성인용 도서를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등 극히 일부분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청소년용이 대형서점, 그리고 편의점이나 가판대, 도서대여업소 등에서 특별한 구분없이 진열·판매되고 있다.

서점의 형태와 자본의 영세성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을 들 수 있으나, 간행물의 등급을 구분하여 기획, 제작, 판매하는 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면 성인용 간행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도적 혹은 우연한 접근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행 간행물 심의기구에 준사법권 기능을 부여하여 압수권한 등 제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연, 영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해서는 공연윤리위원회가 방송물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심의를 맡고 있으나 출판물에 대해서는 민간기구인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법적기구가 아니므로 압수 규제권한과 같은 사법권이 없으므로 주의, 경고, 제재건의의 심의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불법 간행물의 제작·판매·대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간행물 관련 유통기관 중에서 가장 역할수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곳이 ‘간행물 유통을 조사하고 감독하고 고발하는 기관들’이다. 따라서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적 유해간행물의 유통을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긴급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유해한 인쇄매체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쇄매체는 대부분이 사후심사이고 심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해출판물이 생산·유통되고 난 후 규제를 하게 되므로 유해출판물이 생산·유통되는 것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심의할 시간이 없을 경우, 일본에서와 같이 긴급으로 유해지정을 내릴 수 있는 긴급지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스포츠신문은 대중오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문윤리심의회의 심의보다는 간행물 윤리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그 유해성을 심의할 필요가 있고, 윤리규정면에 있어서도 스포츠신문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스포츠신문 자율윤리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유통구조 개선방안

성인용 간행물은 비닐등으로 특별포장하여 성인전용 서점이나 일반서점내의 성인전용 코너에서만 진열되고 판매되는 방식을 강화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일본 불법복제 만화가 주로 공급되는 학교주변의 문방구점, 도서대여점에 대한 정부의 집중단속이 요구된다.

1991년 내무부는 풍속영업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만화대본소를 무도장과 동일시하여 유해업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이를 삽입하여 1995년 말까지 학교건물에서 200미터 이내에 있는 대본소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대본소의 영업장이 폐쇄될 경우, 한국만화의 유통시장이 무너지게 되어 한국만화의 공급원을 축소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학교앞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취급하는 일본만화가 날개 돋친 듯 팔리게 되어 일본만화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중대형 출판사의 만화시장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만화시장에서 영세 출판사들이 일본만화를 불법복제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이익을 남기려 하는 성향때문에 만화시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대형 출판사들의 진출로 만화를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행히도, 근래에 고려원 미디어의 '만화로 배우는 불교', '먼 나라 이웃나라', 프레스빌의 '임궏정'과 같은 만화를 출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유능한 신인작가의 발굴, 우수만화 및 작가 표창, 만화인력 양성기관 설정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만화가들의 자질과 출판의식 문제를 들 수 있다. 많은 만화상품이 소수 인기작가 그룹에 의해 집중 생산되고 있어 작품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능한 신인작가를 계속 발굴해 감으로써 만화산업의 종합적인 기획

력을 높여야 하겠다.

3) 시민운동 활성화 방안

청소년 간행물의 확산을 위한 이벤트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건강한 청소년용 간행물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건전한 독서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병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학교주변의 서점이나 문방구, 가판대에서 성인오락지나 유해간행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유해간행물을 접촉하는 주요 장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오가는 전철안에서 성인들이 읽다가 두고 내린 스포츠신문을 친구들과 돌려가며 읽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인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학부모 및 학교당국의 감시 및 고발이 절실하며 교육당국이나 정부기관의 엄격한 법집행도 요구된다.

유해간행물에 대한 사회시민단체의 활동을 조직, 연대하여 간행물 소비자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소비자이면서도 간행물에 대한 비판적 대응력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기관, 학부모, 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유해간행물을 제작·유통시킨 업체들의 영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요구되며, 시민활동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요망된다.

제 2 장 민간단체의 유해환경 감시활동

1. 음란폭력성 조장매체대책 시민협의회(음대협)¹⁾

1) 조직 및 활동원칙

스포츠신문의 음란폭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단체 연대로서 1990년 조직된 음대협의 활동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 왔다. 음대협은 처음에는 13개 시민단체들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3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3인의 실행위원(전대련, 이주영, 손봉호)이 있으며, 간사단체는 기운실이 맡고 있다. 재정은 실행위원 단체는 연간 200만원씩, 회원단체는 30만원씩 분담하고 있다.

활동의 기본원칙은 회원단체가 모니터하여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원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들어 종합하여 항의운동을 전개해 왔다.

2) 시민단체 연대의 필요성

(1) 대중매체는 돈을 벌기 위해 성을 이용하고 있다.

스포츠신문은 플레이보이에나 나올 수 있는 외설스런 여체사진들을 게재하고 있고, 10대의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섹스행각을 펼치는 만화가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논리 앞에 도덕논리는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방송에서도 일간신문에서도 성의 상품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시도는 성도덕 타락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매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품판매 전략에도 성의 상품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섹시 No.1이라는 상표에서부터 인터넷 음란주소를 디자인한 화장품 등과 광고를 통한 성상품화 등이 그 예이다.

1) 본 보고서에 게재한 음대협의 활동현황은 음대협에서 작성한 홍보자료를 중심으로 일부내용을 수정, 재편집한 것이다.

(2) 성의 자유로운 탐닉을 인간성 회복의 최종 목표라고 외치는 허위 선전이 많아지고 있다.

소위 ‘성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포털테러리즘’이란 이름으로 성해방론자들은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마광수교수는 청소년에게 섹스교제의 자유를 일간신문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다. 문화 이론가들은 동성애의 인정, 가족주의의 해체, 미성년자의 섹스자유보장 등을 주장한다. 성인잡지에서는 반윤리적인 성의 탐닉을 강변한다. 예컨대, 어머니가 자녀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성교육을 시키라는 등의 메시지들을 주장한다. 여기에 예술을 빙자한 성의 상품화까지 가세하여 온갖 종류의 성도덕의 타락이 예술내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는 것이다.

(3) 외국의 저질문화의 유입에 대해 우리사회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섹스숍이 성업중에 있는데 경찰과 교육기관들은 법령만 뒤적이면서 속수무책이다. 외국의 저질문화산업이 우리의 생활공간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안방 침투는 말할 것도 없고, 펜트하우스, 플레이보이 한국판이 거리에서 편의점에서 포장도 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영화인들은 영화의 사전심의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외국의 저질 X등급 영화의 무제한 수입을 앞으로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가?

(4) 음란문화의 범람에 청소년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어른들은 말로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또 다른 집의 아이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청소년에게 음란한 것을 보여주는 노래방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디오방에서 남녀청소년들이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신문 구독자들의 상당수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온갖 음란한 기사를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음란문화가 결과적으로 가장 성적 호기심이 많고 충동에 약한 청소년을 주고객으로 상품화되

는 것이다.

3) 회원단체 현황

(1) 공식회원 단체 : 34개

청 소 년 단 체 (6개)	종 교 단 체 (19개)
서울YMCA 서울YWCA 흥사단 청소년교육선교회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한국청소년사랑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낮은울타리 UBF 대한기독교간호사회 우리동네기도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예수전도단 전국직장선교연합회 학생신앙운동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신도연맹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대학인회 한국기독교학생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가톨릭돈보스코센터 보리방송모니터
여 성 단 체 (2개)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 회 단 체 (7개)	
경제정의실천연합 맑고향기롭게살아가기운동본부 사랑의연수원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한국선명회 한국에이즈연맹 건강을위한시민의모임	

(2) 회원단체 연락처

회원단체명	전 화	팩 스	담당자
경실련기청협	741-7961	745-8006	구교형
기독교윤리실천운동	871-7487	883-2177	권장희
낮은울타리	333-1316	338-6477	김정효
UBF(음대협담당)	763-7097(815-4151)	741-3350	
대한기독교간호사회	394-6377	394-2169	이숙자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512-0488	546-8124/511-1036	김예리
맑고향기롭게살아가기 운동본부	741-4697	741-4698	김자경
보리방송모니터	712-5813	712-5812	김재일
사랑의연수원	015-135-1944	0562-60-1149	김용진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734-4100	734-9241	유근운
서울 YMCA	734-3934	734-5336	이승정
서울 YWCA	449-2341-3	449-2340	최수경
우리동네기도회	599-3927	593-5474	두상달
여전도회전국연합회	763-7668	745-5416	(총무)
예수전도단	871-7351	871-7354	문희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766-2597	766-2599	정유경
전국직장선교연합회	736-6400	736-6410	김운섭
청소년교육선교회	276-1009	276-1070	손종국
청소년유해환경경고발센터	522-8111	522-8110	정익제
학생신앙운동	596-8491	537-9389	최갑주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747-0497	765-5026	박종술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764-2374	765-1416	박찬성
한국기독교신도연맹	734-3207	734-3207	김흥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741-2782	741-2786	정연택
한국기독교대학회	296-2153	296-2154	
한국기독교학생회	558-1726/733-9697	735-9924	장창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565-2952	295-2953	손명원
한국선명회	786-8543	782-4253	(홍보부)
한국청소년사랑회	448-2918	404-5550	전요한
한국에이즈연맹	747-4070	747-4073	양승혁
한국장로회총연합회	708-4505	708-4457	김범열
홍사단	743-2511	743-2515	이윤택
건강을위한시민의모임	743-4250	743-4251	김태수

(3) 비회원협력단체 연락처

비회원협력단체명	전 화	팩 스	담당자
한국여성단체연합	273-9535	273-9539	안현숙
교회여성연합회	708-4181	708-4186	유태희간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701-0098	718-2612	

4) 유해매체 감시활동

(1) 스포츠신문 감시활동

1990년

- 7. 1 신문윤리위원회에 만화심의 요청, 만화협회에 항의공문 발송
 - ☞ 7. 6 만화가협회 사과 회신
- 7. 7 스포츠신문 음란폭력성 조장에 대한 규탄시위(과고다 공원)
- 10. 5 스포츠 3사 음란만화 중지요청, 광고주에게 협조요청
 - ☞ 11.27 동서식품 등 15개 업체 광고중지 결정
- 11. 9 17개 단체 공대위구성(아세아연합신학원) 성명서 발표
- 11.24 규탄시위 1000만명 서명운동
- 12.20 공대위 실행위원과 스포츠 3사 사장단 연석회의 개최

1991년

- 2. 8 스포츠신문 모니터 개시
- 4.24 스포츠서울의 음란성문제 청와대, 공보처, 신문윤리위원회에 고발
- 7.13 스포츠 3사에 모니터 결과(음란성, 폭력성이 심한 내용물) 통보
- 8.31 스포츠 3사에 모니터 결과 통보 및 항의문 발송
 - ☞ 9. 4 스포츠조선 개선약속 통보
 - ☞ 9. 5 일간스포츠사 방문 개선약속 회신 받음
 - ☞ 10. 8 스포츠서울 내용 개선하겠다 회신
 - ☞ 11.22 스포츠신문 3사 사과 및 개선 약속

1992년

- 1.28 스포츠신문 음란폭력에 대한 항의 결의대회(YMCA)
- 3.22 스포츠 3사에 항의문 발송
- 10.20 스포츠 3사에 모니터 결과 통보 및 항의문 발송
 - ☞ 10.24 스포츠 3사 내용개선 회신

1993년

- 3.22 모니터 결과 통보 및 개선 촉구

☞ 5.22 스포츠서울 회신 ‘건전포맷으로 바꾸겠다’ 약속함

☞ 7. 5 스포츠조선 개선 약속

1994년

1.24 스포츠 3사에 모니터 결과 통보 및 내용개선 촉구

2. 8 스포츠서울 ‘장덕규 개그마당’ 지하철 내 성추행을 다룬 것에 항의

2.23 스포츠서울 근친상간 등 패륜적인 내용 기사화에 항의공문 발송

3.14 일간신문에 누드사진 광고 게재에 대한 항의 및 광고중단 요구

☞ 3.21/25 금성사, 에바스 등 광고회사의 사과 및 광고게재 중단 약속

3.18 스포츠서울 ‘장덕규 개그마당’ 지면에 사과문 게재 요청

☞ 3.24 스포츠서울 ‘장덕규 개그마당’지면에 사과문 게재

4.27 스포츠신문 3사의 OB씨그램 광고의 음란 도덕성 문제 항의

☞ 5.3 OB씨그램이 음대협사무실 방문하여 사과 및 게재중단 약속

스포츠 3사 사과공문 접수

5.10 조선일보에 누드광고 게재에 대한 항의문 발송

☞ 5.12 조선일보 사과공문 접수

☞ 5.13 스포츠신문 3사 지면을 통해 OB씨그램 사과문 게재함

7.25 펜트하우스 불매요청 - 전국 서점조합연합회, 서울시내 20개 대형서점,
편의점 업체에 공문 발송

7.26 펜트하우스 검찰고발

☞ 7.27 펜트하우스 판매않겠다는 회신 - 대형서점, 편의점

(2) 스포츠조선 만화 감시활동

1996년

4. 4 스포츠 조선의 가판 음란사진과 칼럼게재 포착 모니터 시작

4.30 모니터 결과 통지 및 스포츠조선에 음란사진 게재중단 요청

☞ 스포츠조선의 회신 - 입장차이 등 운운함

5.15 제차 음란물 게재 중단 요청 공문 발송

5.17 스포츠조선 음란사진 게재중단과 섹스 가정교사 제호 변경 통보

5.19 음란사진 게재 중단 안됨

☞ 5.21 음란사진 게재 중단, 섹스 가정교사 제목 바뀜

5.22 음대협 대표자회의 - 광고 불매운동, 항의전단 배포운동, 신문 심의제도 마련 등 결의

5.23 한겨레신문에 음대협 스포츠조선 항의 활동 소개기사 게재

5.23 시민·사회단체에 음대협 결의사항 통보

5.23 교회에 음대협 결의와 1차 실천지침 배포

5.25 스포츠조선의 주요 광고주 18개 회사에 광고불매 협조문 발송

5.25 공보처, 신문윤리위원회, 청와대, 광고주협회에 스포츠조선 협조공문 발송

5.27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스포츠조선 항의활동 인터뷰 녹음

5.27 조선일보논설위원,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및 광고주 관련 인사 24명에게 편지발송

5.29 한겨레신문에 음대협의 스포츠조선 항의활동 소개기사 게재

☞ 5.29 광고주협회 박효신 실무자 회신 -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로, 회원사에 협조문 보내주기로 함

5.30 1차 중간보고 보도자료 발송

5.30 시사뉴스, 뉴스포럼, 평화신문 등 음대협 활동 취재

5.30 스포츠조선 편집인과 음대협 공동대표 3인 간담회 제의전달

☞ 5.31 스포츠조선 1면에 심의기구 마련에 대한 사고 게재

☞ 5.31 스포츠조선 이용호 편집국장, 박용재 문화부차장 기윤실 방문

- 스포츠조선의 개선의지를 믿어달라고 함. 몇몇 실무자와 공동대표들의 논의를 기초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스포츠조선측은 회의하여 통지하겠다고 함

☞ 6.3 스포츠조선 회신 - 음대협에 평란 30회 게재하도록 결정했음을 통지

6.3 스포츠조선 사장과 음대협 대표자 회동 마무리

(3) 스포츠서울 음란만화 감시활동

- 6.5 스포츠서울의 음란만화 ‘밀크&커피’ 모니터(5.1-6.5), 청소년을 주인공으로한 약물흡입, 범죄, 성추행, 섹스행각, 동성변태적 행위들을 적나라하게 묘사
- 6.7 음란연재물의 즉각적인 게재중단 요청과 8가지 모니터 기준항목을 제시하는 문서를 보냄(6.11까지 회신요청)
- 6.11 문제의 만화가 중단되지 않고 회신도 없어 전화로 확인 후 공문회신 요청
 - ☞ 6.12 스포츠서울 회신-작가에게 주의를 주었으니 지켜보아 달라고함
- 6.12 1면에 전라의 여체 사진 게재
- 6.13 재차 항의문을 보내 여체사진 게재를 항의하고 15일까지 중단하지 않을 경우 22일 규탄대회를 통해 스포츠서울과 정부의 비도덕성을 알리겠다고 통보함
- 6.18 음대협 실무자회의를 서울 YMCA에서 갖고 22일 규탄집회를 개최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기로 결정함
- 6.20 기독교방송에서 스포츠서울 규탄관련 전화인터뷰
- 6.22 스포츠서울 규탄대회 개최-탑골공원과 프레스센터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밝은 문화 청년연대 발대와 함께 스포츠서울 규탄집회를 가짐. 음란성 연재만화들의 게재중단, 사과문 게재, 심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함
- 6.22 스포츠서울 규탄전단 4만장 제작 배포
- 6.26 44개 광고주와 광고주협회에 광고 불매 협조문 발송
 - ☞ 7.1 스포츠서울 광고국에서 불매운동에 대한 항의전화 받음
 - ☞ 7.2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사과의사 밝힘
 - ☞ 7.4 스포츠서울 1면 사과문 게재, 6일부터 ‘밀크&커피’ 게재 중단키로 함
- 7.5 스포츠서울 ‘콘돔광고’ 게재에 대한 항의 및 ‘영시의 굽소리’ 게재중단

요청

☞ 7.5 스포츠서울 음대협이 3가지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하겠으니 광고 불매운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

7.6 음대협에서 의견을 모아 7.7일부터 스포츠서울 광고 불매를 위한 모니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함

(4) 신문연재 음란소설 감시활동 : 중앙일보

1994년

7.15 김한길 연재소설에 대한 항의문 발송, 김한길 성장소설 '거기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네' 50~54회 분에 고교생이 음란비디오를 보면서 여자친구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게재중지 및 사과 요구함

☞ 중앙일보는 회신이 없었고 내용도 개선되지 않았음

12.21 한수산 연재소설의 음란성에 대한 항의문 발송, 공보처, 신문윤리위, 언론중재위에 음란 소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12.15-17, 19일자 신문의 연재소설 '해는 뜨고 해는 지고'의 내용과 삽화가 일간신문에 게재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외설적인 삽화와 장황한 외설적인 묘사들이 게재되고 있어 이의 중단과 사과를 요청함

☞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도 개선내용도 없었음

1995년

1.27 한수산 연재소설의 성폭행장면을 적나라한 묘사와 삽화에 대한 사과요청, 공보처, 신문윤리위, 언론중재위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

1.20-26 일자에 성고문 내용을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 보는이들로 역겹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를 크게 해칠 것을 우려하여 중앙일보의 편집의도를 묻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요청하였음

☞ 중앙일보는 이 때에도 아무런 회신도 없었고 내용개선도 없었음

2. 8 음대위 중앙일보 대책 실무회의 개최(여전도회관)

2.15 12시 중앙일보 앞 항의시위 결정

2.10 ‘달아 높이꿈 돌아사’ 소설의 음란성, 외설성에 대한 사과요청 · 항의문 발송

- 일간신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여성의 자위행위 묘사(1월 4일자)를 삽화와 함께 게재하였고 지난 2월 7일~8일자에서도 여성의 성기를 삽화로 그려놓고 여성의 성기를 장황하게 묘사하여 성인들이 읽어도 역겨운 이러한 소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사과 요청함

☞ 중앙일보는 여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항의시위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간 후에 회신이 옴

☞ 2.14 중앙일보 회신-작가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회신내용과 항의집회 철회요청함

2.15 중앙일보사 앞에서 2시간동안 항의집회 가짐-7개단체에서 50여명이 참석하였음(경사련, 경실련기청협, 기운실, 바른언론, 대한어머니회, SFC, 홍사단 참가함) 중앙일보 규탄 성명서 2000매 시민 배포, 편집국장과 면담(사과 불가 확인), 집회 후 지속적인 사과요청과 조건화에 맞추어 불매운동 하기로 결의함

2.16 항의집회 후 음대위의 유감과 사과문 게재 거듭 촉구

☞ 2.24 신문윤리위원회가 중앙일보의 연재소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2차례에 걸쳐 주의조치 하였음을 통보

☞ 2. 25 중앙일보로부터 사과 절대 불가 회신

3. 7 중앙일보 ‘달아높이꿈 돌아사’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저질스러운 묘사를 일삼고 있어 재차 게재 중단요청 및 사과요청함

☞ 3.13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중앙일보에 시정권고 조치에 대한 회신

☞ 4.12 중앙일보 편집인 금창태 전무 음대협 대표자회의에서 사과 및 전면소설 개정 약속

4.19 “신문연재소설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개최(음대협 주최)

(5) 신문광고 감시활동

1994년

3.14 에바스사, 금성사에 항의공문 발송

☞ 3.15 17일자 광고는 일정상 게재하고 18, 19일에 예정된 광고는 취소 약속함

3.15 동아일보에 누드광고를 실지 않도록 협조공문 발송

☞ 3.17 금성사가 예정된 광고를 게재하지 않음. 3월중순까지 광고를 모두 취소하기로 함, 조선일보에 협조공문 발송

3.17 12개 단체에 중간보고 및 금성사 결정 보도자료 제공

☞ 3.21 금성사 사과공문 접수

3.25 에바스사 사과공문 회신, 국민일보에 누드광고 게재중단 기사

4.22 스포츠조선 ‘씨크리트’ 항의공문 발송

4.27 조선일보 19면 ‘국제 아스트라’ 여성 누드광고 게재

☞ 4.29 스포츠조선 사과회신

4.30 조선일보와 광고주에게 항의 공문, 공대위 이름으로 발송

4.30 스포츠신문 3사와 오비씨그램에 항의공문 발송, 신문광고의 비윤리성에 대한 규탄 성명서

☞ 5. 3 스포츠 3사 사과회신

오비씨그램의 이사 마케팅팀장이 음대협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과 및 광고 약속

5. 6 오비씨그램 13일자 사과문에 대한 문안 검토

5. 9 공대위 일반언론 감시기구로 확대 개편안 공문 발송

5.10 조선일보에 회신 요청 2차 답변요구

5.11 10여개 단체에 가입요청 공문발송

☞ 5.12 조선일보 광고국 과장 내방 사과공문 전달

5.13 스포츠신문 3사에 오비씨그램 사과광고 게재됨

10.4 동아일보가 ‘나래텔’ 선정성 광고게재

10.7 동아, 조선, 스포츠신문, 나래텔에 사과요구 및 광고게재중단 요청 공문

발송

- 10.7-8 일간스포츠가 ‘지브이’ 청바지 광고로 포르노그래픽성의 광고 게재
- 10.11 ‘지브이’사와 일간스포츠에 항의 공문 발송
☞ 10.11 나래텔 및 광고기획사 방문내용 시정 약속, 사과회신 공문
- 10.14 ‘지브이’사, 일간스포츠 재차요청,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에도 항의문
☞ 10.21 스포츠조선 회신, 일간스포츠 회신
- 10.21 ‘서로컴퓨터’에 한겨레신문 누드광고 철회 요청
- 10.28 공보처, 문체부, 총리실, 11개 언론사, 기업협회, 광고관련협회 등 25개 기관에 음란저질광고 규제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서한 발송
☞ 10.31 ‘지브이’사 사과 회신
- 11.3-5 한국무선호출협의회(015빼빼 사업사회)가 여성의 바지를 내린 선정광고 게재
- 11.11 광고주, 기획사(웰콤), 매체신문사에 항의문 및 사과문 요청
☞ 11.12 일간스포츠 광고 사과 회신
- 11.15 광고주, 기획사 책임자 방문사과, 신문사 사과광고 요청
불매운동 결의 및 서울지역 회원들 4,000여장 배포 항의요청
☞ 11.18 사과광고 게재 약속 및 사과문 포함 내용 전송
- 11.27-28 스포츠 신문에 사과광고 게재 및 언론에 내용 보도됨
- 1995년
- 2.24-25 레스모아 선정광고 광고주 신문사(동아, 조선, 한겨레 일간스포츠)에 항의문 발송
3. 3 (주) 태창 여성의 선정적인 속옷광고 항의문 발송
3. 3 ‘하우스콜’의 불법 음란 영화광고에 대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항의 공문 발송
문체부와 공보처에 시정요청 공문 발송
☞ 3. 7 태창 광고기획사 코페트의 국장이 음대협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과 및 선정광고 기획하지 않겠다고 약속
- 3.14 (주) 토피아 ‘옵티마브이’컴퓨터광고 광고주와 동아일보에 항의문 발송

3.15 (주) 엘림엔지니어링 사과회신에 게재중단 약속

3.16 경향신문 광고국장 사과회신 전화

스포츠조선 1996. 5. 30 목요일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스포츠조선은 음란폭력성 조장대책 시민협의회가 그동안 본지에 게재된 일부 사진 및 기사의 음란성 문제를 제기, 본지는 이를 수용해 지난 5월 21일자로 내용 수정 및 게재중단을 단행했습니다.

스포츠조선은 최근 게재된 '비디오광고 특집' 중 일부 광고 사진의 여배우 노출정도가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독자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앞으로 자체 심의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음란과 폭력을 조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는 사진, 기사, 광고는 게재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포츠조선은 재미있고 유익한 스포츠, 연예, 생활, 레저 신문으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포츠조선 1996. 5. 31 금요일

밝고 건전한 신문 제작 심의위
설치

스포츠조선은 밝고 건전한 신문제작을 위해 6월 1일자로 편집국내에 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본지는 스포츠신문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기구를 통해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외부사진 및 기사, 광고 등을 게재하지 않도록 사전심의를 합니다.

특별심의위원회 명단

▲ 이건설 편집부국장 대우기획위원 (간사), ▲ 이계훈 편집부국장 대우 종합편집부장, ▲ 최영호판매국 부국장, ▲ 정영규 광고국 부국장, ▲ 백일진 편집2부장, ▲ 박용재 문화부 차장 대우(실무)

1996년 7월



목요일

<55판>★

불건전 일부연재물에 사과드립니다

지면건전화 자체심의 강화

스포츠조선은 음란폭력성 조장대책 시민협의회와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12일자부터 음란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사진 게재를 중단하고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고 판단된 만화의 기동줄기를 바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신문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극화의 광고 등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만화 '밀크&커피'를 비롯 일부 연재물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비록 광고일지라도 게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편집국 내에 자체 감시기구인 심의위원회를 설치, 정화기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동업자간의 과당경쟁에 휘말려 청소년에게 해로운 사진과 만화, 광고를 내보내데 대해 독자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실기일전해 재미있으면 서도 모두에게 유익한 신문으로 거듭 날 것을 다짐합니다.

2.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²⁾

동 감시단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가 주관하고 문화체육부와 인천광역시가 후원하여 1995년 4월에 발족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이다.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에서는 1995년도부터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6개 청소년단체³⁾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지역사회내 청소년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진이 문화체육부의 후원을 받는 전국의 6개 민간감시단이 발간한 1995년도 활동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 중에서 인천광역시 감시단의 활동내용이 비교적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동 감시단의 활동내용과 방향을 심층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의 방향 및 정책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그외 5개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현황은 인천광역시 감시단의 활동과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1) 감시단의 조직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개 고발센터와 4개의 매체·업소 모니터 활동반이 구성되었다. 각 모니터활동반의 회원들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활동지도자는 연구지도위원 1명, 연구보조간사 1명이 참여한다. 연구지도위원은 관련분야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 중에서 위촉된다. 운영위원은 학계, 교육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 유해환경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전문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데, 본 감시단에서는 20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분야별 운영위원 참여현황은 <표 3>과 같다.

2)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발간한 1995년도 활동보고서 중에서 일부내용을 발췌, 수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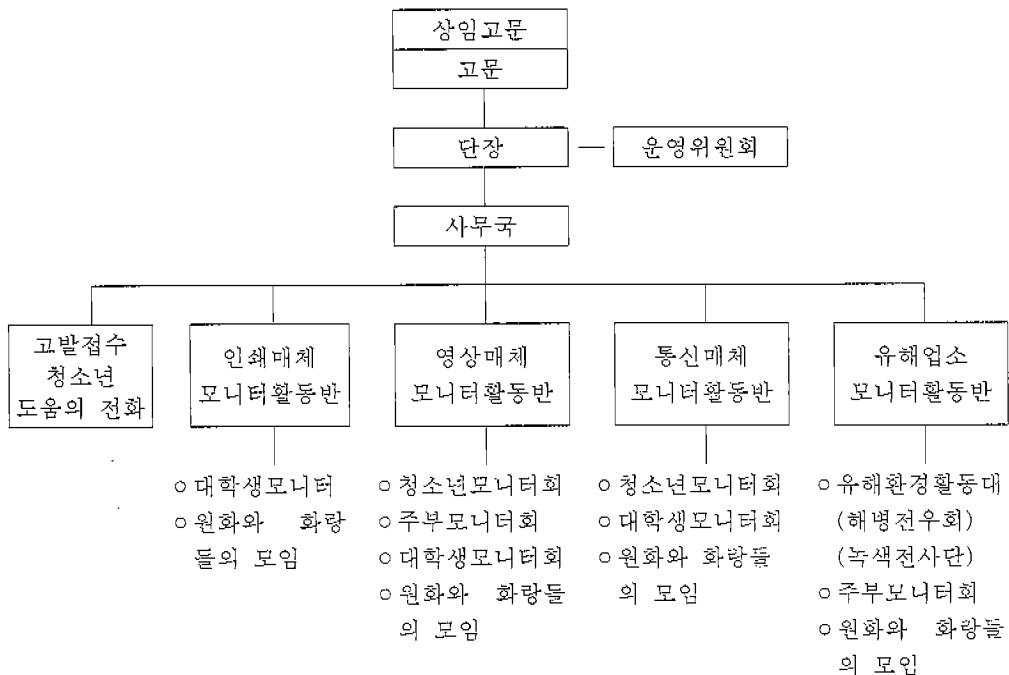
3) 문화체육부에서 후원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주관하는 단체는, 서울YWCA연맹(서울), 부산YWCA연맹(부산), 대구YWCA연맹(대구), 광주YMCA연맹(광주),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인천), 한국청소년마을(대전) 등 6개이다.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주요 협의사항은, 각종 행사에 대한 논의, 매월 각 매체별 모니터활동보고, 활동사항 보고와 함께 미비점 보완, 모범업소 업주 추천, 모니터 요원 및 연구지도위원 활동사항 보고 및 지도감독, 고발접수사항 처리방안 모색 등이다.

본 감시단의 활동회원들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는데, 주로 불교관련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예컨대, 「원화와 화랑들의 모임」 청소년회원 및 지도교사, 불자교사연합회 지도교사, 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자원봉사센터, 각 사찰신도회, 각 사찰청년회, 각사찰 거사림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외에도 특이한 점은, 유해업소 현장지도를 위해서는 ‘유해환경활동대’를 조직하여 해병전우회와 녹색전사단 회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활동대의 지역별 조직으로는 남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중구, 동구 등 7개 지역별로 지회를 조직하여 각 15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림 3〉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기구표4)

〈표 3〉 운영위원 구성현황

소 속	학 계	관련공무원	교육계	사회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법조계	전문직	계
위원수	5	5	3	3	1	1	1	1	20

2) 감시단 활동의 기본방침

(1) 유해환경의 개념

감시대상인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다.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 술집, 유흥가, 전자오락실, 당구장, 디스코장, 공원, 다방, 만화가게,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성인용 영화상영극장 등
- 유해 물품 :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불량식품, 마약, 대마초, 환각제, 각성제 등
- 영상·통신매체 : TV, 비디오, 영화, 유선방송, 음성정보, 컴퓨터통신, 컴퓨터프로그램 등
- 인쇄매체 : 만화, 소설, 잡지, 신문, 포스터, 사진첩, 광고전단 등

(2) 조직 및 운영

- 각 매체별 연구지도위원은 관련 학과 교수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유해성에 대한 연구와 정확한 대책방안을 모색한다.
- 본 단체 산하 청소년단체인 ‘원화와 화랑들의 모임’ 지도교사인 각급 중·고등학교 지도교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시민단체인 해병전우회와 녹색전사단, 한국부인회 등으로 구성된 감시단 활동대를 구성하여 유해환경이 밀집된 지역에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을 선도한다.
- 지역내 관계기관(언론, 경찰, 각 사찰 신도회)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내

-
- 4) 상임고문 : 박현성 (원화와 화랑들의 모임 총재)
 고 문 : 조영장 (국회의원, 인천서구)
 단 장 : 김선일 (청소년불교교화연합회 인천지부장)

실있게 운영한다.

(3) 홍보 및 교육

- 가두캠페인, 홍보캠페인,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생·학부모·학교 지도교사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 창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 유해환경 감시단의 기능과 각 매체별 유해부분에 대한 고발 접수 방법에 대해 홍보용 카드와 책받침을 제작, 배포한다.
- 초, 중, 고등학교 어머니회를 통한 유해환경실태보고 및 가정에서의 올바른 매체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 순회교육 및 각 지회 순회교육을 통해 유해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청소년과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다.
- 행사참여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4) 자율정화 유도

- 모범업소 표창으로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유해업소의 자율정화를 촉구하는 시정공문을 발송하여 업주들의 자발적인 환경정화를 유도한다.
- 인천광역시내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지역으로서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3곳을 유해환경 없는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청소년 선도구역 지정 및 출입금지 협조에 대한 현판을 설치한다.
-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조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한다.

3) 유해환경 시정실적

(1) 상설고발창구 처리현황

유해환경에 대한 상설고발창구에 1995년 4월~12월 (9개월) 기간동안 접수된 건수는 총 187건이고 고발방법은 대다수가 전화를 사용하였다.

고발접수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는 시정권고 11건, 시정협조요청 138건, 시정고발 7건, 기타 31건(주소불명 등)으로 처리되었다.

〈표 4〉 고발사례 처리현황

구 분	고발접수	처 리 내 용			
		시정권고	시정협조요청	고 발	기 타
누 계	187	11	138	7	31

(2) 자체 모니터결과 처리 현황

동 감시단에서 모니터한 유해환경은 유해업소, 청소년비행, 유해인쇄매체, 유해영상매체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회원들의 모니터활동을 통하여 1995년에 적발된 유해환경은 총 876건으로 이 중에서 유해업소 관련 건수는 101건, 청소년 비행관련은 18건, 유해영상매체는 45건, 유해인쇄매체는 712건을 차지하였다.

문제사례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정주의 및 협조요청이 797건으로 가장 많고, 관계기관 이첩 22건, 상담 12건 등으로 보고되었다.

영상매체 부문에서 모니터된 문제사례는 45건으로 이 중에서 비디오물 13건과 TV프로그램 32건에 대하여 시정협조를 요청한 결과, 방송사로부터 2회의 회신이 있었다.

인쇄매체 부문에서는 총 108건에 대하여 시정주의를 촉구하였는데, 그 중에서 스포츠신문 80건, 단행본만화 18건, 잡지 10건을 차지하였다.

유해업소 및 청소년비행의 선도실적은 총 119건으로 이 중에서 11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다. 시정요구한 대상업소는 비디오방·만화방 15건, 노래방 31건, 호프·소주방 18건 등이며 비행청소년을 귀가조치한 실적은 48건이었다.

계	접 수				처 리			
	유해 업소	청소년비행	유해영상	유해 인쇄	상담	시정주의 · 협조	관계기관 이 첩	기 타
876	101	18	45	712	12	797	22	45

인천광역시 감시단에서는 유해환경없는 시범지역을 조성하여 유해업소 활동대
원들이 모니터요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활동을 하여
주민들에게 유해환경감시단을 홍보하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5)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증

신 분 증 성 명 : _____ 소 속 : _____ 직 위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제 호 이 름 : _____ 인 천 광 역 시
---	--

(4) 자율정화 유도

인천광역시 감시단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내의 청소년유해환경의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69개)과 상대정화구역(775개)내에는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룸싸롱 등 884개 유해업소가 산재해 있다. 이 중에서도 집중조사할 지역 4군데를 선정해서 조사원 50여명이 4회에 걸쳐 업소를 방문조사한 바 있다. 현장조사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된 업종은 술집, 단란주점, 전자오락실, 디스코장, 다방, 만화가게, 비디오방, 노래방 등으로서 조사항목은 업소의 위치, 상호 유해성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예로서, 인천백화점 건너편 신포시장 주변의 유해업소 중에서 22개의 커피숍과 레스토랑을 조사한 보고서가 <표 6>에 예시되어 있다.

<표 6> 업소 방문조사 보고서 예시

구 분	업 소	관 찰 내 용
청소년출입금지 스티커 부착	· Boston · 데미안 · 산타페	세 업소는 출입구 앞에 “고등학생의 출입을 절대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시켰으며, 실제로 청소년의 출입이 없었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부착	· 릿츠 · 겨울이야기 · 토마토	세 업소는 각각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출입구에 부착하고 있었다. 조사기간 동안 실제로 릿츠와 토마토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없었으나, “겨울이야기”의 경우 조사자가 들어갔을 때부터 청소년들이 있었다. 관찰하는 동안 다시 4명의 남학생들이 케익을 들고 들어왔다. 처음에 있던 학생들은 남녀가 같이 세 곳의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청소년의 출입 및 술·담배 허용업소	· 겨울이야기 · 몽크 · 플라타너스	세 업소는 각각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었으며 특히 “몽크”에서는 청소년만을 위한 장소인 것처럼 네 자리가 청소년에 의해 점유되어 조사자가 앉아있기에도 힘들 정도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이 목격되었으며, “겨울나그네”에서는 흡연과 음주가 관찰되었다.

이외에도 업소의 자율적 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해환경없는 시범지역을 3군데 조성했으며 6개 모범업소(단란주점 3, 노래방 2, 갈비집 1)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운영위원들과 업주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5) 홍보 및 교육

인천광역시감시단의 취지 및 활동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고 활동회원 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 및 전문적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각종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캠페인 전개, 활동대 발대식, 청소년선도 시범지역 현판식, 청소년문제 세미나, 청소년발언대, 지역 순회교육, 매체모니터요원 교육 등이 있다.

유해환경추방을 위한 캠페인은 총 9회 실시했으며 운영위원, 연구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대원, 각 구청, 청소년 등 연인원 1,150명이 참가하였다. 캠페인내용은 청소년유해환경 추방캠페인, 가두캠페인, 전단지 배포, 차량스티커 배포, 배회 청소년 선도, 귀가 조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홍보스티커 부착 등이다.

활동대 발대식에는 운영위원, 해병전우회, 녹색전사단, 관련단체장, 청소년단체장, 「원화와 화랑들의 모임」 지도교사, 대학생 모니터 요원, 자원봉사자, 매체별 모니터 요원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에서 전파한 메시지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목적 및 기능에 대한 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자율정화 유도 등이다.

청소년선도 시범지역 현판식은 중구 인형극장 및 부평구 부평시장 부근이 시범지역임을 알리는 현판⁶⁾을 설치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문제 세미나는 2회 실시하였다. 첫번째 주제는 「'95 청소년문제 세미나」로서 주요 내용은 청소년범죄와 유해환경, 컴퓨터와 유해환경, 학교에서 본 청소년 실태, 청소년 범죄와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토론 등이다. 두 번째 주제는 「청소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서 주요 내용은 종합보고회, 컴퓨터와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대책,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의 역할 등이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청소년발언대'를 2회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주장한 내용은 청소년문화와 유해업소 출입실태, 청소년의 주변환경(탈선 원인),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 기성세대에게 바라는 말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부모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및 지회 순회교육을 4회 실시하여 연인원 800명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주제강연의 내용은 유해환경의 정의와 종류, 청소년기의 호기심과 지혜로운 대책방안 등이며, 교육자들과 함께 한 주제토론의 주제는 ‘함께 여는 우리의 푸른 꿈, 우리의 밝은 사회’이었다.

유해영상매체와 유해인쇄매체를 감시하는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교육내용은 청소년과 유해환경의 정의, 모니터 방법론, 각 매체별 유해환경의 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4) 유해인쇄매체 모니터결과

동 감시단 모니터활동반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것과 성인용 인쇄매체로 출판이 되었더라도 청소년이 자주 접하고 있어 심각하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용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6) 현판 내용

청소년 선도 보호 시범지역 시민 여러분! 이곳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범지역입니다 청소년들이 출입금지업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888-3228)으로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

* 규격 : 70 cm x 180 cm

* 제질 : 철판, 특수코팅(야광글씨, 차량용 특수 도색)

(1) 스포츠신문 만화

스포츠신문(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의 경우 지하철가 입구에 있는 간이매점이나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이나 국철, 전철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전철 안에서 많은 성인들이 읽고 난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가장 접촉하기 쉬운 매체중 하나이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 기사는 처음 한 두장에 걸친 프로야구 소식 정도이고 절반정도가 연예인들에 관한 내용이며 만화도 많이 실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장면묘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었다.

95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3대 스포츠신문(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에 연재되고 있는 만화를 분석하였다. 스포츠신문들은 대부분이 판매부수증가를 위해서 스포츠 기사에 관한 지면 보다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만화나 국내외 연예인에 대한 사생활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오늘의 운세, 성건강 정보 또는 소비자에게 유익하지 못한 정보 등의 제공으로 지면을 메우고 있다.

스포츠신문의 내용이 음란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 스포츠신문에 게재된 연재만화의 내용중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와 선정적인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거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사를 기술한 장면을 뽑아 그림과 대사로 분류하였다.

(2) 단행본 만화

단행본만화나 시리즈물만화의 경우 만화방에 직접 가서 읽거나 도서대여점에서 대여하여 읽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인천광역시에서 인문계 학교가 밀집하여 있는 동인천 주변의 만화방과 도서대여점을 조사한 결과, 5~6군데의 만화방이 주로 환경이 좋지않은 지하에 있었고, 3군데 정도의 도서대여점이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 전용의 순정만화방이 카페형식으로 차려져 있고 그 규모도 컸다. 지하철가에는 만화전문 대여점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일본만화였다. 배다리 근처에는 중고책방이나 만화직판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불법 유통되고 있는 만화들이 이 곳을 거쳐 각 만화방과 도서대여점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이 더 크다고 사려되는 불법유통 만화들은 대부분이

〈표 7〉 스포츠신문만화의 분석 결과

유해성 제목	A. 폭력성						B. 선정성				C. 언어문제			D. 도박			E	F	계
	a1	a2	a3	a4	a5	a6	b1	b2	b3	b4	c1	c2	c3	d1	d2	d3			
일간스포츠																			
광사풍 (5-8월)		3		2	1	4											4		14
화초의 반격 (5월)									3	1	3		2						9
민초야 (5-11월)		11	2	8	10	18	23	9	6	10	4		3				4		108
예씨 캡틴 (5-8월)			4	2	1	3	3				3	1	1	4	1				23
대란 (5-11월)		4	2	1	4	5	11	13		1	4		5				1		51
밤사쿠라 (6-11월)			1				8	7	9	5	19	1	1	2	1		1		55
엑스캡 (8-10월)	1	3	2		2	19	8	2			1								38
신이라 (10월)			1			2	17	2			2								24
스포츠조선																			
시티캡 (5-10월)		22	29	12	17	39	62	16	11	7	11	6	12		1			1	232
닭목을... (5-10월)					2	2	19	17	8	3	6								57
덩크뱅크 (5-10월)				1		2	42	9	4	1	12		2						73
신검무정 (7-9월)		2	1			4	9	8	10										34
임격정 (6월)							2	4											6
스포츠서울																			
보디가드 (5-10월)			1		2	4	61	41	34	1	17								161
바람의 아들 (5-9월)		11	16		12	9	7	7	3		3		3						71
허리케인큐 (5-10월)				2	2		40	42	15	6	7		1				1		116
혈맥 (5월)							2												2
발해의 혼 (6-10월)		3				2	44	29	13	3	1								95
서울의 악녀 (10월)							7				2								9

일본만화 복제물이었다. 특히 인문계학교 주변의 만화방 입구에는 그곳에서 구입해서는 안되는 만화의 리스트가 게재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화들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었다.

잡지의 경우 서점이나 가판대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주로 구입되고 있었는데, 성인용과 청소년용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고, 성인오락 잡지의 경우 선정적이고 성에 관련된 화보와 기사가 많음에도 가판대에서 저렴한 가격이면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유해 간행물들은 검인이 된 것인지, 일본만화인지 우리나라 만화인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표시가 불분명했다. 대상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판매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는 실정이다.

도서대여점이 생기게 되어 이전에는 값이 비싸 청소년들이 서점에서 구입하지 못하던 책들을 손쉽게 대여하고 심지어는 학교주변의 대여점에서 대여한 것들을 교실내에서도 돌려가며 보고 있다.

동 감시단의 모니터활동반에서는 단행본만화는 95년 5월부터 중·고등학교 주변의 만화방, 도서대여점 등을 조사하여 청소년에게 인기가 있는 것 중 음란, 폭력물인 만화 32편을 선택하여 구입, 분석하였다. 시리즈물인 경우는 그 중에 1~2권을 선정하였다. 잡지는 1995년 발행된 잡지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잡지 31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의 잡지 구입경로는 서점이나 도서대여점 등에서 주로 구입하며, 성인용 대중 오락잡지의 경우는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의 가판대이다.

동 감시단에서 분석한 단행본 만화의 분석결과, 어쩐지 좋은..., 시티메신저, 판타스틱게임, 복두신권, 슬램덩크와 같은 만화가 가장 유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특히 시티메신저 13권과 슬램덩크 23권과 같은 만화는 징그럽고 살기편 잔인한 표정, 무기사용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조사된 청소년 인기만화의 분석결과이다. 이 중에서 청소년에게 인기있는 불법유통 만화 6권(오! 나의 여신여어, 그린우드, 레인보우스토리, DNA, EATER, 카멜레온2)을 선정·분석하였다.

〈표 8〉 단행본만화 분석 결과

제목 \ 유해성	A						B				C			D			E	계
	a1	a2	a3	a4	a5	a6	b1	b2	b3	b4	c1	c2	c3	d1	d2	d3		
DNA 1권							13	2										15
DNA 2권			2				11		2	8							9	32
EATER 1권		2		2		6											1	11
그림우드 1권						1			2	5	2		2				4	16
레인보우스토리 1권		1	6	7		7								7			9	37
레인보우스토리 10권			11	3		7	9				2		1				4	37
오!나의여신이여 10권							12	1	3		1		2				1	20
판타스틱 게임 14권		6		9	45	41	7	4		1		3				1	3	120
슬램덩크 23권				1	11	50			1		24		10					97
슬램덩크 24권			1			1					1	9				2	3	17
드래곤볼 40권		1	1	8	3	2					1		3					19
타이의 대모험 16권		8		1	6	38					4		4					61
금빛열대어 7권			6			1	1			1							5	14
시티메신저 13권		4	3	22	34	69	26	24	21	2	24						4	233
여장남자			2		2	4	10	1			13	1						33
GOOD-BOY					2	5	13				8						3	31
steel love 2권				2			18	4	4		17	1					2	48
진짜 사나이			19			10	1				2							32
adult baby				1		4	12	5	3		8	2	1	11	1		7	55
북두신권		20	19	9	17	37	1				22	5	2		1			133
중후 보이 친미				2	11						2							15
지옥들파		2	2	5	8						2		1					20
백록화		1	1		7	7					3	1	2				4	26
다크엔젤		2		2	1	17	15				1		3				1	42
아마게돈 14권		1		1	3	3	12				1		1				2	24
내사랑 구피 1권					3	2	8				1						1	15
짱구는 못말려						1	16		13	1	1		1	6			3	42
어쩐지 좋은...1권			14	70	39	42	44						18	2	5			234

(3) 잡지

잡지는 크게 만화잡지, 여성잡지, 성인용 대중오락지, 연예잡지, 스포츠잡지로 구분된다. 잡지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공공장소나 거리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새로 유행하고 있는 도서대여점에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잡지는 오히려 만화보다는 어떤 제재의 기준의 부족하고 명목상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들도 많으며, 성인용잡지의 경우도 가판대나 번두리 서점에서 저렴한 값으로 살 수 있는 실정이었다.

〈표 9〉 만화잡지 분석 결과

제목 \ 유해성	A						B				C			D			E	F	계
	a1	a2	a3	a4	a5	a6	b1	b2	b3	b4	c1	c2	c3	d1	d2	d3			
영 챔프 15호	2	22	10	6	3	4	9	2			3		10	8				2	81
영 챔프 17호		18	5	28	5	22	57	9	20	1		4	12					5	186
영 챔프 23호		3	33		1	2	29	7	18	2	11	3	12	6		4	20	1	152
영 점프 15호			1			1	3		12	1	1		2						21
탱기 11월1일	1		1		2	2	8		6	2	5	1	1		1		3		33
터치 1월		1	13	3	1	14	21	3	4	1	9	1	3	1			3		78
소년매거진찬스9호		2	6			12	28	7		1	11						1		68
빅점프 19호		2			4	11	19	4			14	1	1					4	60
아이큐 점프 44호				2	6	1	1			3									13
윙크 2월1일		2	2	7	21	3	5		2		6	1	4				1		54

- 여성잡지 :

패션, 요리, 다이어트, 화장법, 고급상품의 광고, 연예인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는데, 패션광고의 경우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주종을 이루며, 국적불명의 외래어를 남용하고, 고급상품을 과대광고하여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광고가 잡지의 40%를 차지하고 외국모델의 기용이 너무 심하고 신체노출도 필요이상이었다.

- 연예잡지 :

인기연예인의 사생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스타에 대한 동경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기사와 화보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지였다.

- 스포츠잡지 :

외국 스타 특히 미국 NBA 농구 선수들에 관한 모든 것을 싣고 있다. 외국선수들의 화려하고 반사회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생활을 다루고 있으며 그들의 의상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을 모방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칼라화면의 화보위주 잡지가 대부분이었다.

- 성인용 대중 오락잡지 :

화보와 기사내용으로 분류하였는데, 화보는 젊은 여성들이 전나, 반나 차림의 노출도가 심한 수영복이나 속옷차림이 거의 전부였고, 성기나 가슴부근을 클로즈업하였거나, 남녀의 정사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기사는 대다수가 성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성기법이나 매춘행위 등 건강정보라는 이름하에 왜곡된 성에 관한 기사를 실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어 심각하며, 구입경로에 대한 제한이 약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동 감시단의 분석결과, 「포토스타」 또는 「남과 여」와 같이 가격도 저렴하고 가판대에서 쉽게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는 책자에서 상반신이나 하반신노출, 수영복이나 속옷차림의 반나 사진이라든지 성적충동을 자극하는 얼굴표정이나 몸짓 등을 묘사하는 과도한 선정적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들의 사진이 많이 게재되어 있었다.

- 만화잡지 :

주로 국내의 신인만화가들의 작품과 일본만화 중 선정성이 심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행위, 성인모방 범죄 등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캐릭터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내용의 것들이었다.

또한 잡지의 앞 뒷면에는 판매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인기스타의 화보나 사생활정보를 담고 있었다.

〈표 10〉 잡지 분석결과

유 해 성 제 목	화 보						내 용								계
	A						B		A		B	C	D	E	
	a1	a2		a3			b1	b2	a1	a2					
		a21	a22	a31	a32	a33									
포인트 9월	3	3		5			1								12
엘르 11월		1	15	4	4	5	8		2			8	2		49
스타채널 8월 4주			4			4								1	9
부부	3	10	5	4	8		7	13							50
월간걸 8월			22		15	7			8	10					62
월간걸 11월			15	1	5	8			1	3			1	5	39
피가로 8월		1	3	4	1	2									11
피가로 9월		5		1	1										7
피가로 10월			3	1	2	3	2	3			1	6			21
엑설런트 11월		2	14	2	11	3			1	1			3		37
나그네 12월			23	1	23	8			11	21					87
쉬크 9월			5	1	2	3	3	4		2	1	4			25
쉬크 10월		2	6	2	5	3	3		2			13			36
레즈 11월		2	10		7	7		1	2		1	17		9	56
포토스타 11월		2	55	1	28	27		1						1	115
토크 라이프 11월		2	15	2	8	9						1	1		38
충격비화 11월	1	2	18	4	11	7			4	9	1	1		1	59
월간사건메거진 12월	3	3	15	4	5	2			4	1				1	38
남과여			18	5	4	5			5	7		5	1		50
딩크샷 9월							1					1	1		3
루키 9월		4			4	1					1	8	3		21

동 감시단에서 청소년용 잡지를 분석한 결과 영챔프 15호, 17호, 23호의 내용이 다른 청소년 잡지에서 보다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대상 만화잡지인데도 몸을 더듬는 장면, 키스, 여성의 신체노출장면, 성기부분의 사실적 묘사 및 확대, 여자의 유혹장면과 같은 선정성이 심화되어 있는 장면들이 전반

적으로 청소년대상 만화에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영챔프 17호에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있었다. 또한 영챔프 23호에는 가치관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면을 묘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다.

(4) 음란·폭력물 내용 분석기준

음란·폭력물에 대한 선행연구(YMCA의 분석,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모니터요원들의 각 분야(스포츠신문만화, 만화, 잡지)에 대한 기준을 간행물 종류별로 정하였다.

우선 유해성 항목을 세분화한 다음, 유해항목에 대한 유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용분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해성 항목을 스포츠만화와 단행본 만화를 동일하게 했으며, 잡지는 유해성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잡지는 화보와 기사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음란·폭력적인 내용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스포츠신문만화와 단행본만화는 동일한 분석기준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신문만화와 단행본만화의 분석기준

A. 강한 폭력성

a1. 자살

a2. 살해/연쇄살인 : 칼로 사람을 찌름, 눈을 관통해 죽음, 철사로 목을 졸라 죽음, 머리가 분리되어 하늘로 치솟음, 피가 튀는 장면,

a3. 범죄와 관련된 내용 : 마피아를 소재로 폭력적인 장면, 살인청부업자의 의리를 중요시하는 내용, 격투기를 이용한 살상,

a4. 생명경시 : 재생캡슐로 죽은 사람을 간단히 재생,

a5. 파손 : 공격후 인체의 손상/피의 묘사, 기물파손,

a6. 음산한 분위기/무기 : 징그럽고 살기 띤 잔인한 표정, 괴물의 얼굴, 인체 근육강조, 무기화된 인체/의성어·의태어 크기 묘사/에너지피, 칼, 쇠파대, 총

B. 선정성의 심화

- b1. 선정적 장면 : 몸을 더듬는 장면, 키스, 여자의 신체 노출장면, 성기 부분의 사실적 묘사, 여자의 유혹장면
- b2. 노골적인 성의 표현 : 성기가 발기되도록 하는 장면, 남녀의 성행위 장면, 자위행위묘사
- b3. 내용의 선정성 : 성도착증환자, 일회적이고 감각적인 사랑, 성폭행
- b4. 왜곡된 성의 표현 : 동성애의 미화, 불륜·변태적 관계 묘사, 근친상간
- C. 언어상의 문제
 - c1. 비어·온어 : 비속어, 저속하고 불건전한 대사 남용
 - c2. 외래어의 남용 : 만화잡지명, 주인공의 이름
 - c3. 욕설 : 개, XX 야, 쌍
- D. 모방
 - d1. 일본문화모방 : 일본 거리와 술집의 배경, 일본의 의상과 머리 모양
 - d2. 문화사대주의 표현
 - d3. 일본만화모방
- E. 비현실적인 면 : 가치관 왜곡
- F. 기타 : 사행심 조장, 퇴폐적 의상, 신세대의 피상적 묘사, 고증과 자료 부족

잡지 분석기준

* 화보

A. 선정성/퇴폐성

- a1. 비정상적인 성
- a2. 신체노출
 - a2.1. 전나 : 완전전나, 투명한 천으로 전나를 두름
- a3. 포즈 형태
 - a3.1. 적접적인 선정적 포즈 : 성행위 장면의 사실적 묘사.
 - a3.2. 과도한 선정적 포즈 :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 등을 묘사.

a3.3. 미미한 선정적 포즈 : 단순한 속옷이나 수영복차림의 일상적인 포즈

B. 모방

b1. 외국문화 : 배경, 머리모양, 의상

b2. 문화사대주의 : 외래어 남용.

* 기사

A. 선정성

a1. 비정상적인 성에 관한 기사

a2. 노골적인 성을 묘사한 기사

B. 외국문화 모방을 조장하는 기사

C.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기사

D. 기타

(5) 모니터 결론

모니터요원들이 만화방을 방문하여 전시해 놓은 만화를 살펴본 결과 전시된 만화들은 모두 심의위원회의 검인을 거친 국내작가 만화들이었다. 국내작가 만화의 경우 도서대여점에 배치되어 있는 만화들은 대부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필을 마친 것이었으나 일본작가의 만화는 심의필을 마친 것이 없었고 대부분이 무단복제된 일본만화들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이 더 높은 일본만화복제물을 수집하기 위해, 업주들에게 “재미있는 만화가 여기 전시된 것 이외에도 뭐 없냐”는 식으로 물어보아도 불법유통되고 있는 만화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학생 3명씩을 선정하여 만화방 방문을 시도하여 불법유통만화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했으나 어려움이 많았다.

불법 복제된 일본만화의 경우 무등록 출판사들이 적당히 원본을 수정하여 책을 찍어내며 인쇄하는 곳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찍고 있어 어떻게 유통되는지 잘 알 수 없다. 서점주인들은 이들을 ‘도깨비’라고 부른다. 이들은 종종 단속에 걸려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그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그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계속한다고 한다.

많은 수의 인쇄물들이 비정상적인 성에 관한 기사나 노골적인 성을 묘사하는 기사, 또는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기사를 많이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뜩이나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책자들이 엄격하게 비닐로 봉인이 되어서 판매되거나 엄격한 연령제한 판매를 실시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된다.

5) 유해인쇄매체에 대한 시정요구

위에서 분석한 인쇄매체의 유해정도에 따라 해당기관에 시정건의를 요청하였다. 스포츠신문 중에서는 스포츠서울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스포츠가 52건, 스포츠조선이 47건 이었다. 만화제목별로 살펴보면 ‘보디가드’와 ‘허리케인Q’, ‘시티캡’, ‘민초야’가 가장 많은 시정건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본 감시단이 보낸 시정건의에 서신을 보내온 작가나 신문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만화/잡지 시정건의 횟수>

시티메신저 13권	: 28건
판타스틱 게임 14권	: 24건
그린우드 1권	: 18건
슬램덩크 23권	: 15건
레인보우 스토리 1권	: 15건
오! 나의 여신여	: 14건
북두신권 2부	: 11건
레인보우 스토리 10권	: 11건
드레곤 볼 39권	: 9건
슬램덩크 24권	: 9건
월간 영상 포인트 9월	: 7건

스타 채널 8월 4주 : 2건

〈표 11〉 스포츠신문 만화 시정건의

전 의 제 목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
스포츠서울 (86건)							
보디가드	5	8	5	7	3	1	29
바람의 아들	2	4		2	7		15
허리케인 큐	1	7	1	8	3	5	25
발해의 혼	4			3	2	1	10
혈맥		2					2
만화광고		1					1
미스터 채널		1					1
서울의 악녀들						3	3
스포츠조선 (47건)							
시티캡	3	7	17	3			30
덩크탱크	1	1	6	5			13
신검무정	2	1	1				4
일간스포츠 (52)							
광사풍	2	6					8
민초야, 민초야	4	3	6	5			18
대란	2		2	3			7
예썬캡틴	1						1
엑스캡	1		2	6			9
밤사쿠라		2	2	3			7
신이랴...				2			2

제 3 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법적 규제

영상물과 인쇄물이 법적으로는 확연히 분리되어 있고, 정부 부처별 관할권도 세분되어 집행되고 있다. 또한 만화영화와 같은 영상물과 함께 영화산업 자체를 진흥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외국의 수입물에 대응하기 위한 다분히 산업적 측면의 영상진흥기본법도 존재하는 반면,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처럼 개별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률도 존재하는 등 실정법 자체가 동일한 매체에 대한 접근방식에서도 상이한 성격으로 혼재된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이라는 특정 수용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사회적 필요성에서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기술과 자본력으로 외국의 음란물·폭력물에 대한 대체적 의미의 영상물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 선택을 통해 보호하는 산업적 측면의 장려적 성격도 같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1. 매체물관련 현행법률 개요

청소년유해환경 관련법률은 모두 7개부처에서 관장하는 20개법률이다. 이 중에서 매체물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국내법률은 5개부처에서 관장하는 13개로서 매체유형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 구분되어 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주로 영상물, 공연물, 간행물(비정기)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장하는 관련법률은 5개이다. 구체적으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음반 및 비디오물), 영화진흥법(영화), 공연법(공연물),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등에관한법률(간행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외국수입간행물) 등이 이에 속한다.

〈표 12〉 매체물 관련 법률현황과 규제영역

소관부처	관 련 법 률	규제영역	법률상 세부분류
문화체육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 률	음반, 비디오	○ 음반, 비디오테잎, 새영상물(영화·음악·PC게임)등
	영화진흥법	영 화	○ 극장용 영화
	공연법	공 연	○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또는 오락적 관람물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 관한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법률	간행물(비정기)	○ 만화, 사진첩, 화보 등 도서류, 새영상물(전자출판물)
공 보 처	방송법	방송(공중파)	○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광고방 송·특수방송(교육·음악·오락·연예 물에 한함)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	○ 종합유선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 한법률	정기간행물	○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잡 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PC통신 등 각종정보통신물	○ 음성통신정보물, 비음성통신정 보물(영상정보물, 문자정보물)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	전자유기기구기관 (오락실컴퓨터게임)	○ 유기장용 전자유기기구기관
내무부 (시·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	○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이 와 유사한것
내무부 (경찰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 률	각종 음란물	○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 공연물, 기타 음란한 물건
	미성년자보호법	각종음란물, 불량만화 등	○ 불량만화 및 도서, 도화, 음반, 비 디오, 기타 음란한 물건

공보처는 매체물 중 방송과 정기간행물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여기에서 관장하는 법률은 3개이다. 방송법(공중파방송), 종합유선방송법(종합유선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기간행물) 등이 이에 속한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 인터넷 등 각종 정보통신물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정보통신물의 내용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이다.

그외, 관련부처로는 보건복지부와 내무부가 있다. 이 부처들은 매체물의 내용에 관한 감독 및 관리보다는 매체물을 유통시키는 업소의 운영에 대한 행정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그런 기능들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으로 여기에서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기관(software)의 검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에서는 매체물유통과 관련하여 3개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이 그것이다. 특히, 경찰청이 직접 관장하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과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전자유기장, 만화대여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대여점, 비디오감상실, 소극장 등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직접 유통시키는 각종업소의 규제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영상물 관련법률

1)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주관 : 문화체육부)

☐ 평가

청소년보호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매체물 관련 법률중에서 가장 잘 정비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를 위해 제작, 판매, 배포, 대여 등 전 유통과정에서의 단속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통업자 등록 및 수거폐기권 등을 부여하였다.

☐ 주요내용

○ 심의미필 비디오물, 무등록음반, 수입·추천미필 음반·비디오물, 불법복제

비디오물을 위법한 음반·비디오물로 간주하여 원천적으로 유통을 금지하며, 위법음반·비디오물을 유통시킨 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유통행위금지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장치를 마련

- 시청등급표시(성인용·청소년용 구분) 및 연소자별 시청등급을 세분화하며 연소자관람가·중학생이상관람가·고등학생이상관람가·연소자관람불가 등 4등급으로 구분
- 외국 음반·비디오물 수입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추천
-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비디오물의 연소자 관람불가 결정
 - 연소자 시청 불가사항 : 연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저해, 연소자에게 사행심 유발, 연소자에게 성적충동 유발, 연소자에게 포악성·잔인성 기타 범죄행위조장 등
- 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방)에 대한 18세미만자의 출입금지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 벌칙내용

-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제13조)
 - 음반·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등록하거나 기타 준수사항(시설기준 등)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몰수 및 가액 추징(제25조)
 -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음반 또는 비디오물 제작
 - 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 음반 또는 외국 비디오물을 반입 또는 제조
 - 심의를 받지 않고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 등과 시청등급위반하여 연소자에게 판매·배포·대여·시청 제공 행위 등
 -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 제공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26조)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음반·비디오물을 판매·배포 또는 시청 제공

○ 300만원이하의 벌금(제27조)

-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
- 공윤의 심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
-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게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한 음반·비디오물, 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제조·반입된 비디오물 또는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는자가 제조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상영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29조)

- 표시의무, 신고, 납본 불이행
- 추천을 받지 않고 음반·비디오물 반입
- 허위 보고 등

음반·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현행의 법적규제 내용을 성립요건, 유통관리, 내용심의 등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3〉 비디오물의 법적규제내용

적용법률	적용범위	성립요건 (인·허가등)	유통관리 및 규제내용	심 의	심의 기구
○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법률 (음비법)	○ “음반”은 음 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 생될 수 있도 록 제작된 물 체 (음비법 2조) ○ “비디오물”은 영상이 유형 물에 고정되 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 된 물체로서, 테이프 형태 의 것과 디스 크 기타 신소 재 형태의것 (“새영상물”) (음비법 2조) ○ “음반·비디 오물 유통관 련업자”는 음 반판매업, 비 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 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음비법 2조)	○ 음반제작업자 또 는 비디오물제작 업자는 문화체육 부장관에게 등록 (음비법4조) ○ 음반·비디오물유 통개발업자는 시 장·군수·구청장 에게 등록 (음비법7조) ○ 등록청은 등록취 소, 영업정지 명 령 (음비법12조) -유통업자가 건전 한 영업질서 유지 위한 준수사항위 반한 때 -위법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판매 · 배포·대여·진 열·보관·상영 한 때 · 심의미필 비디 오물 · 무등록 음반· 비디오물 · 수입추천 미필 외국 음반·비 디오물 · 불법 복제 음반 · 비디오물	○ 음반·비디오물 마다 시청등급 표시 (음비법6조) ○ 문체부장관, 시 ·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은 위법비디오 물을 폐기, 판매 · 배포·대여· 시청제공 등 금 지 (음비법22조) -심의미필 비디 오물 -무등록 음반·비 디오물 -수입추천 미필 음반·비디오 물 ○ 외국비디오물 수입시, 공윤의 추천 (음비법15조) ○ 외국 음반·비 디오물 반입시, 공윤추천 (음비법16조) ○ 음반·비디오물 제조·수입시, 1 개를 문화체육 부장관에 납본 (음비법20조)	○ 비디오물 제작, 수입 시 미리 공윤의 심 의(음비법 17조) ○ 음반은 사전심의제 폐지 (음비법17조) ○ 심의미필, 심의위반 비디오물의 판매· 배포·대여·시청제 공·진열·보관·상 영 금지 시청등급 위반하여 연소자에 게 판매·배포·대 여·시청 금지 (음비법17조) ○ 공윤의 심의불가사항 -미풍양속을 해치거 나 사회질서를 문 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공윤은 비디오물의 연소자 시청불가 결 정 -연소자시청가 비디 오물은 시청등급을 다시 세분 (음비법18조) ○ 연소자시청불가사항 -연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 저해 -연소자에게 사행심 을 유발 -연소자에게 성적충 동을 유발 -연소자에게 포악성 · 잔인성 기타 범 죄행위를 조장	공연 윤리 위원회

2) 공중위생법 (주관 : 보건복지부)

☐ 평가

전자유기장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비하고 그 내용을 심의할 법정기구가 없다. 이 문제는 공중위생적 측면보다 청소년보호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이 긴히 요청되고 있다.

☐ 주요내용

- 전자유기장업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성립요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 청소년의 건전한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 등에서는 전자유기장업 허가를 제한
- 시·도지사는 18세미만의 자에게 전자유기장의 이용시간을 제한

3) 영화진흥법 (주관 : 문화체육부)

☐ 평가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전용상영관 등에 대한 지원규정은 타 매체관련법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청소년 영화 등 우수 영화의 상영을 지원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접근법은 타매체관련 법률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와 병행하여 성인용영화만 상영가능한 지역·구역 설정문제가 향후 동법률 혹은 관련법률에 입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내용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가능
- 공윤에 의한 사전심의에 합격하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금지
- 연소자(18세미만자)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로서 해당부분을 제한하거나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해서는 그부분을 제한하

거나 삭제하고 심의에 합격한 것으로 결정

- 사전심의에 있어서 연소자관람가 영화의 경우 영화에 대한 제한이나 삭제를 하지 아니하고 등급만 결정

□ 별첨내용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33조)

- 등록을 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
-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영화를 수입
-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에 불합격한 영화 상영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34조)

-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 불이행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35조)

- 신고를 하지 않고 영화제작
- 수입추천을 받지 않은 외국영화의 선전물을 제작 배포
- 영화필름 및 대본의 제출의무 불이행
- 동시상영 의무 불이행

〈표 14〉 영화의 법적규제내용

적용 법률	적용 범위	성립요건 (인·허가등)	유통관리 및 규제내용	심 의	심의 기구
○ 영화 진흥 법	없음	없음	○ 문제부장관의 영화상영 금지 (영화진흥법18조) - 허위로 심의시 - 심의기준에 위반시 ○ 외국영화 수입은 문제부장관(공운)의 수입 추천 (영화진흥법10조)	○ 영화(예고편 포함)는 공운의 사전심의(영화진흥법12조) ○ 상영불가 영화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 -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확립에 해가될 우려가 있을 때 ○ 연소자관람불가 영화는 일부 삭제 후 심의합격 결정가능 (영화진흥법13조) ○ 연소자관람가 영화는 삭제결정은 할수 없고, 등급만 결정가능	공연 윤리 위원회

3. 공연물 관련법률

1) 공연법 (주관 : 문화체육부)

☐ 평가

각본심의합격증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정이 대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다. 심의기준의 구체화, 연소자 관람 가부 표시의무, 심의위반 공연물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연중지 명령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으로는,

첫째, 성인물에 대한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켰을 때, 업자에 대해 2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로 타법률에 비해 처벌내용이 가볍다.

둘째, 청소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연물인 영화에 대해서 공연법에서 보다 구체화된 청소년보호 기준 제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외국공연물에 대한 금지기준에도 청소년보호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풍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이 기준이다.

셋째, 규제대상 영역중 성인용 음악·무용·연극 공연물이 각본심의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용공연물이 아예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벌칙내용

○200만원이하의 벌금(제27조)

- 공연자의 등록의무, 공연장설치허가, 각본 등 심사,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선전물게시 금지, 외국인의 국내공연 허가 규정 등 위반
-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정액외 요금청구 금지 및 18세미만자 관람금지 공연물에 대한 해당자 관람 금지
- 외국인의 국내공연시 허가내용과 다르게 공연

○ 100만원이하의 벌금(제28조)

- 공연장의 타목적 사용제한 위반
- 정원초과 입장 금지, 장내금연, 비상구 규정 등 준수사항 위반
-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

○ 50만원이하의 과태료(제29조)

- 폐업 등 신고, 재해예방조치, 공연신고, 공연장의 청결, 관람료 등의 표시 의무 위반

〈표 15〉 공연물의 법적규제내용

적용 법률	적용 범위	성립요건 (인·허가등)	유통관리 및 규제내용	심 의	심의 기구
○ 공연법 ○ 미성년자보호법	○ 공연은 영화·연극·음악·무용·연예 (공연법2조)	○ 공연장 경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공연법7조) ○ 공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 (공연법14조) ○ 공연신고시에 관람료액, 연소자 관람가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공연법 시행령 15조) ○ 문체부장관·허가청은 장부·서류를 검열, 풍속유지 위하여는 관할경찰서장이 집행토록 함 (공연법 24조) ○ 공연허가 주무관청이 미성년자 관람가 공연물을 허가·승인시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청취해야 함 (미성년자법 시행령 3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정지·중지 명령 (공연법17조) -심의내용과 상이한 공연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때 ○ 연소자관람금지 공연물에 연소자관람금지 (공연법22조) ○ 외국인공연은 문체부장관의 허가 (공연법19조) -허가시, 각본심의 및 실연심사(필요시) (공연법시행령19조) ○ 외국공연물 금지사항 (공연법 19조의 2)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공연물은 미리 각본·대본심의 -각본심의합격증에 연소자관람 가부를 표시 (공연법 14조의2, 공연법 14조의3) -각본심의를 공운(특별시)·시장·도지사(직할시·도)에게 위탁 (공연법시행령23조) ○ 연극·음악·무용 공연은 각본·대본심사 면제 -연소자관람허용 공연물은 공운(특별시)·시장·도지사(기타지역)의 의견에 따라 관람허용결정(공연법 시행령 18조의2) ○ 각본심의에서 삭제 권고사항(공연법시행령16조, 시행규칙 11조) -국민감정 저해 -공서양속 저해·사회질서물란 ·자살행위 권장 ·준비속학대·고문·상해·폭행·강간·범죄행위를 정당화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 섬세하게 묘사 ·저속, 외설적 언어사용, 동작묘사 ·공연물의 제명이 저속, 공연물의 내용상이	공연윤리위원회

4. 방송물 관련법률

1) 방송법 (주관 : 공보처)

☐ 평가

매체물관련법률중 “공공성” 견지를 법의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청소년보호정신이 강하다. 방송위원회가 필요한 권한(사과명령, 정정·해명 또는 취소명령, 출연·연출정지 등)을 충분히 보유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시간대별 방송내용)의 적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유선방송의 경우에는 영화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 주요내용

○ 방송의 공적책임 강조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견지

-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 외국방송프로그램의 수입추천불가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 외부에서 제작한 일부방송물(영화, 만화, 광고, 외국프로)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 청소년보호를 위한 심의기준을 “법”에 규정

-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의 제한 (100분의 20)

☐ 벌칙내용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43조)

-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규제나 간섭
- 심의결정의 명령 위반

-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45조)
- 심의 결정사항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음

2) 종합유선방송법 (주관: 공보처)

☐ 평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방송위원회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 경고·해명·사과명령·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영화에 한해 등급을 부여하고 성인용 영화에 대하여는 방송시간을 제한한다. 향후 개정방향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영화이외의 방송프로그램에도 등급부여 및 방송제한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음란·퇴폐·폭력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하는 외국방송 프로그램의 수입금지
- 외부제작 국영화·만화영화·광고·외국프로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사전심의
- 심의미필방송물과 심의결과와 상이한 방송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 영화의 등급부여, 방송시간의 제한
-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의 제한(100분의 30)

☐ 벌칙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54조)
 -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방송을 중계 또는 외국의 프로그램 제작업자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 종합유선방송의 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
 -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공서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음란물을 편성 송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56조)

- 편성비율을 초과하여 외국 수입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표 16〉 방송물의 법적규제내용

적용 법률	적용 범위	성립요건 (인·허가등)	유통관리 및 규제내용	심 의	심의 기구
○ 방송법 ○ 종합 유선 방송법	○ “방송” 은 방 송국이 행하는 무선통 신의 송신 (방송 법2조) ○ “유선 방송” 은 영상, 음성, 음향을 유선전 기통신 시설을 이용하 여 송 신하는 다채널 방송 (종합 유선방 송법 2 조)	○ 종합유선방 송국은 역무 제공에 관하 여 공보처장 관에게 신고, 종합유선방 송위원회에 통보(유선방 송법29조)	○ 외국방송국의 지사설치 는 공보처장관의 허가 (방송법40조) ○ 외국방송프로의 수입은 공보처장관의 수입추천 (방송법40조의 2) ○ 외국방송프로 수입은 공보처장관의 승인 (유선방송법 16조) ○ 수입추천 불가 방송프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방송법 시행 령 38조의 2) ○ 외국방송프로 수입 금 지사항 -음란·퇴폐·폭력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유선 방송법 시행령 14조) ○ 외국수입텔레비전프로 편성은 100분의 20이내 (방송법 시행령29조) ○ 외국방송프로 편성은 100분의 30이내 (유선 방송법 24조)	○ 방송의 공적책임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방송법4조) ○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 여야 하며,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 다.(방송법5조) ○ 자체심의 -방송국내에 심의기구 설치하여 사전심의(방송법 30조의2) ○ 사전심의 대상 -외부제작 극영화와 만화영화 -외국수입프로 -방송광고물 (방송법17조, 유선방송법 38조) ○ 심의규정 : 방송위원회·종합유 선방송위원회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음란·퇴폐·폭력을 배제하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방송법20조, 유선방송법 41조) ○ 시정·제재 : 방송위원회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내용의 정정·해명 또는 취소 -책임자 징계, 출연정지, 연출정 지(방송법21조)	○ 방송 위원 회 ○ 종합 유선 방송 위원 회

(계속)

(표 16 계속)

적용 법률	적용 범위	성립요건 (인·허가등)	유통관리 및 규제내용	심 의	심의 기구
○ 방송법 ○ 종합유 선 방송법				○ 시정·제재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심의결과 규정위반시, 경고·해명·사과 · 정정·방송프로그램의 중단명령 - 수신자, 관련단체로부터 구체적 사실적시 한 불만제기있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경미한 사안일 때 일반적인 권고 -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법정 벌칙에 처 하도록 고발 - 영화는 등급부여, 방송시간 제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함) (유선방송법 98조, 99조) ○ 심의미필물의 방송 - 사전심의 미필 방송물, 심의결과와 상이 한 방송물에 시정조치 명령 (유선방송법 96조) ○ 심의의결 - “사후심의”를 원칙 - 법에 정한 일부내용만 사전 심의 - 사전심의는 방송가·불가를 결정 - 수정조건부 방송가 결정 가능 (유선방송법 92조)	○ 방송 위원회 ○ 종합 유선 방송 위원회

5. 간행물 관련법률

1)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주관 : 공보처)

☐ 평가

정기간행물 내용의 건전성 도모가 동법의 입법취지가 아니라 등록과 관련한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와 직접 관련된 조항이 없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잡지·주간지·월간지·스

포츠신문 등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 및 심의조항이 전무하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는 청소년의 접촉가능성이 높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발행목적, 발행내용에 청소년 보호관련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할 때 공보처장관의 발행정지명령 또는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공보처장관에게 즉시 납본하여야 한다.

☐ 벌칙내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제22조)

- 겸업금지 및 외국자금의 출연금지를 위반
- 등록을 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을 발행
-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설치 등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23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
- 납본, 자료제출요구, 지사 또는 지국 설치 신고불이행등

2)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주관 : 문화체육부)

☐ 평가

동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등록절차 등을 규정한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출판물에 대한 추적관리 처벌조항이 미흡하다.

둘째, 등록취소후의 재등록 제한규정이 없고 처벌내용의 미약으로 법률의 실효성이 미흡함으로 인해 음란·폭력물을 발행한 출판사를 등록취소해도 등록청(구청)을 바꾸어 손쉽게 재등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게 유해한 만화 등을 심의할 법정

기구가 없어 심의에 의한 제재효과가 미약하다.

☐ 주요내용

-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등 출판을 금지
- 위반시 출판사·인쇄소의 등록을 취소
- 등록된 출판사는 출판물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본

☐ 벌칙내용

- 등록취소(제5조의 2)
 - 음란 또는 저속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
-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6조)
 - 등록을 하지 않고 출판사 또는 인쇄소를 경영하거나, 등록사항 부실 기재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7조)
 - 납본의무, 폐업신고 의무 불이행

3) 외국간행물의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주관 : 문화체육부)

☐ 평가

외국에서 발행한 간행물의 수입·배포절차 등을 규정한 절차법으로 이법에서 수입 및 배포를 제한하고 있는 풍속저해 외국간행물의 개념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풍속저해 외국간행물을 심의할 전문기구 또한 부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주요내용

- 외국에서 발행한 수입간행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체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 외국간행물의 수입시, 필요하다면 배포전에 문체부장관에게 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풍양속 또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풍속저해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수입추천을 하지 않거나,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

□ 벌칙내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과 당해간행물 몰수(제16조)

-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간행물 수입업 및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간행물 수입, 견본제출 명령 불이행
- 미풍양속 또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풍속저해외국간행물”에 대하여 수입 추천을 하지 않거나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삭제 명령 위반

〈표 17〉 간행물의 법적규제내용

적용 법률	적용범위	성립요건 (인·허가등)	유통관리 및 규제내용	심의	심의 기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은 동일한 제호로 년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 (정간물등록법 2조) -일반주간신문, 특별주간신문, 잡지 ○“출판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외의 모든 간행물의 출판 (출판사등록법 2조) ○“외국간행물”이라 함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외국간행물법2조) ○“풍속저해외국간행물”이라 함은 미풍양속 또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간행물 (외국간행물법 2조)	○정기간행물발행자는 발행 목적과 발행내용을 공보처 장관에게 등록 (정간물등록법 7조) ○공보처장관은 3월~6월 이내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명령 또는,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 청구 (정간물등록법12조)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할 때 ○등록청은 출판사, 인쇄소의 등록 취소가능 (출판사등록법 시행령 5조의 2)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판사, 인쇄소 경영자는 서울시·부산시·도(“등록청”)에 등록 (출판사등록법3조) ○외국간행물 수입업은 문체부장관에 등록 (외국간행물법 3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설치는 공보처장관의 허가 (정간물등록법 15조) -허가 취소사항 : 국헌을 문란,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기사 게재 ○등록한 정기간행물 발행시, 2부를 즉시 공보처장관에 납본 (정간물등록법 10조) ○등록 출판사는 출판물 2부를 출판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 납본 (출판사등록법 4조) ○외국간행물수입업자는 문체부장관의 수입추천 (외국간행물법5조) -필요시 견본제출명령 ○풍속저해외국간행물·특정외국간행물에 수입추천불가, 배포의 중지·제한, 내용의 삭제명령 (외국간행물법 7조)	없음	없음

6. 정보통신물 관련법률

1) 전기통신사업법 (주관 : 정보통신부)

☐ 평가

동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주어진 권한이 미비하다.

셋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내용이 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어 있고, 폭력·음란성 정보의 유통규제 등 청소년보호 관련조항이 없다.

따라서 인터넷 등 신종정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널리 이용됨에 비추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온통신 금지
-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치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심의대상으로 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정명령

☐ 벌칙내용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제53조)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온통신금지
 - 불온통신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불이행

○1천만원 과징금(기간통신사업자), 500만원 과징금(부가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표 18〉 통신물의 법적규제내용

적용법률	적용범위	성립요건 (인·허가등)	유통관리 및 규제내용	심 의	심의기구
○전기통신 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3)	없음	없음	없음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7. 광고물 관련법률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주관 : 내무부)

☐ 평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의 내용을 사전에 심의할 장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옥외광고가 아닌 광고와, 각종 매체물의 광고에 대한 규제장치와 이를 심의할 전담기구를 관련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높다.

☐ 주요내용

○내용금지광고물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것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것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광고물 제거 명령

☐ 벌칙내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제10조)

- 시·도지사는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
-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경우
- 벌칙 : 300만원이하의 벌금(제18조)
-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

〈표 19〉 광고물의 법적규제내용

적용 법률	적용범위	성립요건 (인·허가등)	유통관리 및 규제내용	심 의	법정 심의 기구
○ 옥외 광고물 등관리 법	○ “옥외광고물”이라 함 은 공중이 자유로이 통 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 · 벽보· 전단등 (옥외광고물법 2조)	없음	○ 시도지사의 광고물제 거 명령 -미풍양속유지 저해 -공중에 대한 위해방 지	○ 내용금지광고물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 현 -음란· 퇴폐한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 를 저해 (옥외광고물법 5조)	없음

〈표 20〉 각종 매체물관련 벌칙 비교

	음반·비디오물 (음비법)	영 화 (영화진흥법)	공 연 물 (공연법)	광 고 물 (옥외광고물법)
무등록자 제작	3년이하·2천만원 (무등록자 제작) 1천만원 과징금 (허위등록)	2년이하·2천만원 (무등록자 제작·수입) 5백만원 과태료 (신고미필제작)	2백만원 벌금 (무등록공연자· 무허가공연장)	1년이하·5백만원 (신고미필업자)
무등록자 유통	2년이하·1천만원 (무등록유통업자)	무	무	무
무단복제	3년이하·2천만원	무	무	무
심의 위반물 유통	3년이하·2천만원 (심의미필물· 등급위반 유통) 3백만원 벌금 (심의미필광고물 배포)	2년이하·2천만원 (심의미필· 심의불합격) 1년이하·1천만원 (상영금지처분 불이행)	2백만원 벌금 (각본사전 심의미필연예물· 심의불합격광고· 연소자불가위반)	무
불법물 유통	3백만원 벌금 (무등록자제조· 무추천외국산· 무단복제물)	무	무	1년이하·5백만원 (무허가광고설치· 금지광고설치) 3백만원 벌금 (신고미필광고물 설치)
불법 외국산 수입	3년이하·2천만원 (추천미필물 수입·제조)	2년이하·2천만원 (추천미필 수입) 5백만원 과태료 (추천미필광고물 제작·배포)	2백만원 벌금 (무허가공연· 허가위반공연)	무
기 타	1백만원 과태료 (추천미필외국산 반입· 표시의무불이행· 신고 불이행· 납본 불이행)	5백만원 과태료 (납본 불이행)	50만원 과태료 (공연신고불이행· 표시의무위반)	무

(계속)

(표 20 계속)

	방 송 물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통 신 물 (전기통신사업법)	간 행 물 (정간물등록법· 출판사등록법· 외국간행물법)	영 업 소 (미성년자법· 풍속영업법)
무등록자제작	무	무	1년이하·5백만원 (무등록자 정간물 발행) 10만원 과태료 (무등록출판사)	<미성년자보호법> 2년이하·5백만원 (미성년자대상 음란물·불량만화 배포) 1년이하·3백만원 (미성년자업소출입· 미성년자대상풍기 문란영업행위)
무등록자유통	무	무	무	
무단복제	무	무	무	
심의위반물 제작·유통	1년이하·2천만원 (심의위반물 방송) 1년이하·1천만원 (심의위반물 방송· 유선)	2년이하·5백만원 (불온통신 금지· 불온통신취급제한 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음란저속간행물, 아동유해만화출판)	<풍속영업법> 3년이하·2천만원· 행정처분 (업소에서 유통 음란행위 알선· 음란물 배포) 2년이하·1천만원· 행정처분 (청소년업소출입)
불법물유통	무	무	무	
외국산 수입	1년이하·2천만원 (무허가외국 방송사 설치) 1년이하·1천만원 (미승인외국프로 수입제작·유선) 5백만원 과태료 (외국프로편성 비율초과·유선)	무	1년이하·5백만원 (무허가 외국경간 물 지사설치) 3년이하·3천만원 (무등록수입업자· 추천미필물 수입· 견본제출명령 불이행· 풍속저해간행물배 포중지 명령위반)	5백만원 과태료 (정간물 납본· 자료제출· 지사설치신고 불이행) 5백만원 과태료 (비정간물 납본· 폐업신고 불이행)
기 타	3백만원 과태료 (심의결정이행 결과보고 불이행)	1천만원 과징금 -기간통신사업자 5백만원 과징금 -부가통신사업자 (업무처리절차 시정명령 불이행)	1백만원 과태료 (정간물 납본· 자료제출· 지사설치신고 불이행) 5백만원 과태료 (비정간물 납본· 폐업신고 불이행)	

제 4 장 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법적규제

1. 일본의 청소년보호 법제현황

1) 청소년보호법규 개관¹⁾

(1) 규제대상의 개념분류

법규는 규제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들로부터 유해한 생활환경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은 어떤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유해환경은 성인의 행위에 의해 창출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청소년 자신들의 행위가 스스로의 건전한 육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유해행위도 유해환경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성인의 행위인 경우와 청소년의 행위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성인의 행위는 다양하지만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해한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포르노잡지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 즉 유해물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둘째,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풍속영업소에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영업자의 행위와 같이 유해시설을 매개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셋째, 청소년에게 매음을 하거나 약물을 주사하여 청소년의 심신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행위도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청소년의 행위를 포괄한다. 예를 들면 입장이 금지된 유해시설에의 출입행위나 매음·약물사용과 같은 자해행위이다.

1) 이광호 역(1992), 「청소년 유해환경과 규제의 정당성」(한국청소년 연구, 제9호)과 일본 청소년육성국민회의 편(1985), 「청소년 유해환경 -구미제국에 있어서 각종규제와 일본의 현상과 과제」 중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재편집 하였다.

(2) 조례의 특징

이상과 같이 규제대상이나 방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규정도 매우 방대하다. 이러한 갖가지 규정은 여러 가지 명칭의 ‘법률’속에 산재해 있어 모든 규정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규제대상·방법이 다양하므로 하나의 법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통일적·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국가의 법률은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제정하고 있는 ‘청소년조례’는 실제로 이러한 목적하에 통일적·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법규이다. 이 조례의 규제 범위는 광범위하여 유해도시의 판매규제, 각종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규제, 음행·심야외출의 규제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 자신의 행위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반법적인 기능을 하고 국가의 법률은 보조적·간접적인 기능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일본 청소년보호 법제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형 법

형법의 제 규정 중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와 관련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풍속범이라 불리우는 ‘외설죄’와 ‘도박죄’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관련이 깊은 것은 175조의 ‘외설문서 배포죄’와 182조의 ‘음행 권유죄’이다.

(4)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과 그 복지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부모의 감호나 보육이 결여된 ‘요보호 아동(비행아, 학대아 등)’에 대한 대인적 복지 서비스(양호시설이나 보육소의 입소, 양부모 가정에 위탁, 아동상담소의 상담사업 등)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아동보호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다음 두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 8조에 기초한 국가 및 都道府縣의 ‘아동복지심의회’의 추천·권고 활동이다

(‘아동복지심의회’는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예능, 출판물, 완구, 유희 등을 추천하고 또는 그것을 제작·홍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34조에는 아동에 관한 금지행위가 열거되어 있는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아동보호에 중요하다. 즉, 이 조항의 금지행위는 청소년조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야간의출금지, ㉡영업소의 출입제한, ㉢음행 등의 장소제공·주선의 금지 등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야간의 가두노동 금지를 규정한 동조 1항 4의 2호는 ‘야간의출금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풍속영업법의 규제인 풍속영업 및 풍속관련영업의 시설에 15세 미만의 아동을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동 4의 3호는 ‘영업소의 출입제한’의 기능을 수행한다. 더욱이 ‘아동에게 음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 6호나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금지한 동 9호 등은 앞의 ‘음행 등의 장소제공·주선의 금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제 34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처벌받는다(6호 위반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그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는 청소년조례의 금지행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자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청소년보호법제를 둘러싼 문제점의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조례에서도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는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된다.

(5) 풍속영업법

이 법은 원래 풍속법(특히 매음과 도박)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률(1948년)이었지만, 그후 13차례의 개정을 거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최근 시행된 개정법(1984년 8월 14일 공포, 1985년 2월 13일 시행)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은 규제대상의 확대, 규제방법의 강화, 법체계의 정비 등을 도모하였다. 그런데 개정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최근의 비행현상의 악화, 복지범 증가, 섹스산업의 범람 등 풍속환경의 악화현상이었으므로 개정법의 제 규정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신설된 목적규정(1조)이다. 이 법률은 선량한 풍속과 청정한 풍속환경을 보전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해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관련영업 등에 대해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을 제한하고 이러한 업소에 연소자의 출입을 규제하는 동시에 풍속영업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준수사항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청소년보호와 관계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 영업소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손님접대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단, 풍속영업과 심야음식점 영업에서 이 금지는 오후 10시~다음날 일출시까지로 한정된다(22조3호, 28조5항2호, 32조3항). 그런데 풍속영업의接客업무가 손님을 접대하거나 상대가 되어 춤추게 하는 것일 때에는 이 시간대 이외에도 금지된다(22조2호).
- ㉡ 18세미만의 자를 영업소에 손님으로 입장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단 풍속영업 중 댄스교습소 등에서는 오후 10시~다음날 일출을 제외한 시간, 심야음식점에서는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이 금지가 해제된다(22조4호, 28조5항4호, 32조3항).
- ㉢ 영업소에서 20세미만의 자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22조5호, 28조5항4호, 32조3항).
- ㉣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0시~일출시(즉, 심야)를 제외한 시간대로 제한된다(13조1항). 단 선량한 풍속 또는 청정한 풍속환경을 해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조례에 의해 지역을 정하여 엄격히 시간규제를 할 수 있다(13조2항). 풍속관련영업의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그 대부분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28조4항), 실제로는 모텔 등을 제외하고 동일한 시간규제를 받는다.
- ㉤ 풍속관련영업에 대해서는 학교, 도서관, 기타 환경정화와 청소년의 건전육성 관점에서 조례가 정하는 부지의 범위 200m구역 내에서 영업을 금지되어 있는 것외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때에는 조례에 의해 영업금지

구역을 규정할 수 있다(28조1,2항). 또한 심야음식점 중 ‘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도 조례에 의해 영업금지 지역을 정할 수 있다(33조4항).

- ㉔ 그밖에 풍속 및 풍속관련영업에 대해 ‘청정한 풍속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에 의한 광고·선전의 금지(16조 ; 26조6항),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의 의무화(18조 ; 28조6항)등이 규정되어 있다.

개정법은 규제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영업자가 법령(조례 포함)을 위반한 때에도 바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행정처분에 의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으로서 공안위원회에 의한 지시,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의 폐지 등이 있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나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규정이 추상적이며(예컨대 25조 - 환경정화·청소년의 전전육성), 공안위원회가 갖는 재량의 폭이 너무 크다. 더욱이 공안위원회는 영업자에 대해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직원이 영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37조).

풍속영업법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동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서 ‘소년지도위원’과 ‘풍속환경정화협회’제도가 신설되었다. 현재 경찰서나 보도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소년 보도활동에 대해 그 근거규정이 문제시되고 있지만, 개정법에 의해 ‘보도’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법률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향후의 과제로서 ㉑현재 소년보도원 제도가 전국에 정착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소년보도원’과 ‘소년지도위원’의 협업·분업의 관계를 어떻게 분명히 할 수 있는가 ㉒청소년조례의 대부분은 심의회제도를 두어 보호육성·환경정화를 위해 지사 등으로부터 행정조치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동 심의회와 풍속환경정화협회 간에 직무상의 연락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법률에 근거를 둔 이 협회의 활동이 조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의 실태

(1) 의의와 연혁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조례를 정비하고 청소년 육성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長野縣을 제외한 46개 都道府縣에 이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1955년 전후를 소위 청소년조례 정비확충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기의 조례들은 지금과 같이 유해환경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975년부터 많은 조례가 개정되고 또한 여러 현에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2) 유해환경 규제방식

조례에 의한 규제는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규제와 청소년 자신에 대한 유해행위의 규제로 대별되는데, 현재의 모든 조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 시작시기를 ‘6세이상’, ‘국민학교 취학’으로 규정하거나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끝나는 시기는 모두 ‘18세미만’으로 하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성적 감정의 자극’, ‘폭력성 조장’, ‘잔학성 조장’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판매규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도서류의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규제방법으로는 지사가 지정한 유해도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통상 3만엔 이하의 벌금). 한편 자율규제 조항을 두어 업자의 양심적인 자율규제를 조장하거나(京都・大阪・廣島), 벌칙 대신 공표 조치를 취하는 縣(青森・岩手)도 있다.

유해지정의 절차를 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고유의 심의회의 자문을 거치며, 긴급한 경우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긴급 지정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서는 지사가 개별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규칙 등에서 정한 사진・그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유해도서가 되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판매기 규제

1978년 전후로 개정된 많은 조례는 자동판매기에 대한 유해도서류 등의 수납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유해도서류 등의 자동판매기 수납규제는 42개 縣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규제방법은 유해도서류를 수납한 경우와 유해지정후 해당도서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 3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부분에서도 京都와 廣島에서는 자율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밖에 절반 이상의 조례가 유해완구류의 자판기 수납을 규제하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위생용품 또는 피임기구의 자동판매기 수납규제이다. 12개 縣의 조례가 이런 종류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京都(京都)에서는 업자로 하여금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주변 이외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랑(奈良), 강산(岡山) 등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사의 명령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출입제한

성인영화 상영관의 청소년 입장은 모든 조례가 규제하고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폭력성·잔학성을 조장하는 연극, 연예, 전시물 등도 유해행위로 청소년 출입이 규제된다. 규제방법은 유해도서류와 유사하다. 업자에게는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청소년 관람금지’의 게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보통 1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서는 유해시설(특수목욕탕, 모텔 등)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을 규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해시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5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縣도 있다. 기타 사행심을 유발하는 유기장의 출입규제도 몇몇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해광고물 정화

유해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모든 조례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사가 유해광고물

을 지정하고 그 철거를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 3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제형태이지만, 자율규제만으로 된 곳도 있다(京都・廣島・鳥取).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의 규제

㉠ 음행규제 : 1975년 전후의 조례개정의 또 다른 목적은 여성 성비행의 증가에 관련하여 나이어린 여성과 성인사이의 불순한 성관계를 억제하는 데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성적 쾌락만을 목적으로 한 남녀의 성교섭을 ‘음란한 성행위’로 칭하고 이를 규제한 곳이 43개 자치단체에 이른다. 청소년과 음란한 성관계를 가진 자에게 최고 2년의 징역을 가하도록 규정한 곳도 있지만(福岡・長崎・沖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문신(文身)의 규제 :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청소년에게 문신을 새기거나 권유 또는 주선하는 것도 규제대상이 된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곳도 있다.

㉢ 심야외출 규제 : 東京・大阪・島根을 제외한 43개 자치단체에서 심야(일반적으로 오후 11시-오전4시)에 정당한 이유없는 청소년의 외출금지를 보호자에게 명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허가없이 심야에 청소년을 데리고 나가거나 동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 절반 정도가 이를 위반한 경우 1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기타 : 비행집단의 조직, 음주・흡연의 권유, 심야 흥행장 등의 출입을 규제하거나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물매수, 전당행위, 금전대부 등에 대한 규제도 찾아볼 수 있다.

(3) 조례 운용상 문제점

조례와 법률의 관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제정되어야 한다. 음행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규제가 지방자

치법 2조3항1호 및 7호에 근거한 것이지만, 형법이나 매춘방지법 또는 아동복지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과연 현행 법령의 의도와 모순없이 존립 가능한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법제에서는 청소년과의 성교섭을 처벌대상으로 규제해 오지 않았으나, 오히려 하위법인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에서는 이를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판례에 따르면, 조례에 의한 음행규제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형법이나 매춘방지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 앞의 평등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각 縣마다 각양각색의 규제양태를 띠고 있다. 동일 행위에 대해서 어떤 縣에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는데 다른 縣에서는 형벌(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로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이 있고 일정한도 내에서 형벌조항을 설치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동일 행위에 대한 규제가 縣마다 각양각색인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며 결코 법 앞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출판활동은 판매활동과 함께 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며, 그것이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판매활동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된다. 따라서 이 규제가 정당화되려면 나름대로의 원리가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이 규제를 정당화하는 원리가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할 근본적 문제이다. 또한 정당화하려는 경우 유해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규제의 정도나 양태와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청소년의 기본 인권에 대한 제약

유해도서나 유해행위의 규제는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알 권리’에 대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규제원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음행규제도 청소년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이 정말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가 음미되어야 하며 특히 ‘음란한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조례는 청소년을 형사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규제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갖추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 이상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운용문제에서 언급하였듯이, 예컨대 음행조항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행위자이며 상대방이 되고 또한 성비행을 저지른 자로 보도되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될 우려가 있다. 요컨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오히려 청소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그 운용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3) 동경도 청소년보호육성조례 해설²⁾

(1) 조례제정 경위

조례제정시에 1963년 10월 11일 臺東區중학교 PTA연합회회장 외 10명의 연명으로 동경도 의회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육성의 조례설치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다.

이 내용은 청소년의 성적 범죄 등의 사회악을 조장하는 영화와 그밖의 오락시설의 불건전한 선전문, 간판 등이 공공연히 사회에서 어떤 규제나 질서없이 범람하고 있는 현재, 불가피하게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전국적으로 20여 府縣에서 청소년보호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도내의

2) 일본 동경도(1995)에서 발간한 「동경도 청소년 보호육성조례 해설서」 원본을 번역하여 일부내용을 재편집하였다.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의 제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한다는 취지였다.

이것을 접수한 도의회에서는 곧 總務首都整備委員會에서 심의한 결과 전원일치로 채택을 결정하고 12월 21일 본회의에서도 채택을 결정했다.

의회에서는 연 10회에 걸쳐서 심의하고 그 기간동안 청문회를 열어서 참고인들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에 참고하였다. 그리하여 동조례는 1964년 8월 1일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1일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최근의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나날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보나 오락물 등도 다수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단행본만하는 그 체재, 내용, 판매상황의 면에서 청소년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건전육성관계자들을 비롯한 관계자 사이에서 논의가 행해져서 사회적 대응이 요청되어졌다.

동경도에서도 주민단체, 청소년육성단체 등으로부터 속히 대응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망서와 청원서가 답지하였다. 그 내용은 “건전육성조례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는데, 그 뒤 이와는 반대로 “만화 작가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요망도 제출되었다.

한편, 1975년대 이후의 급속한 비디오기기의 발달·보급과 비디오소프트의 일반화와 더불어 이제까지의 영화·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했던 영상문화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특히 비디오에 관해서는 근년의 급속한 비디오기기의 보급, 비디오소프트의 대량제작·판매, 비디오대여점의 급증 등에 따라 청소년의 비디오 접촉이 심화되면서 노골적인 성표사를 중심으로 한 비디오소프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 발생한 연속적인 여자유아 유괴살인사건을 계기로 비디오소프트가 주목을 받아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동경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동경도 청소년문제협의회로부터의 “청소년

년과 관련된 비디오소프트 대책에 관해서”(1992년 1월 24일부)의 답신과 “이론 바 포르노 만화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1992년 1월 24일부)의 의견상신, 또한 도민의 요망등을 토대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응을 신중히 검토해 왔다.

동경도의회는 1991년 7월 11일 만장일치로 “불건전(유해) 도서류의 규제에 관한 결의”를 행함과 아울러 8월의 총무생활문화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행해져 “이전의 의회에서 행한 결의의 취지 및 청소년 건전육성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속히 대응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부의되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를 통해서 1992년 제1회 의회정례회에서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3월 27일 가결, 3월 31일부로 공포되었다. 개정된 조항으로는 “도민으로부터의 신고”, “소위원회제도”, “벌칙등에 관한 사항”, “비디오의 지정사항” 등이 추가되었다.

□ 불건전(유해) 도서류의 규제에 관한 결의 (동경도 의회)

21세기를 담당할 청소년들이 세계를 향해서 활력과 창조에 충만하고 심신 모두 건전하게 자라는 것은 도민 공통의 강한 바람이다.

한편, 최근의 출판계는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유통기구등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근년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청소년대상의 불건전도서류가 범람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 커다란 저해요인의 하나로서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을 우려하는 부모를 비롯한 도민들로부터 불건전한 도서류에 대한 시의적절한 규제를 요망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의 복지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유의하면서 불건전도서류의 청소년대상 판매등에 대한 신속한 규제조치가 행해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에 동경도의회는 업계에 의한 자주규제에 관한 행정지도의 강화를 비롯하여 불건전도서류의 판매등에 관한 규제가 신속·적절하게 행해지도록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의 검토를 포함하여 조속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망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위와 같이 결의한다.

1991년 7월 11일

동경도의회

(2) 조례의 총론

조례의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정비를 조장함과 아울러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 설

이 조례의 목적은 조문에 나타나 있듯이 “청소년의 환경의 정비를 조장”하는 것과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수단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에 제시된 바람직한 청소년상에 반하는 청소년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 제한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인의 책무로서 청소년의 환경의 정비를 조장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목적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환경의 정비”는 전문에서 지적된 “좋은 환경 속에서”를 이어받은 것으로서, 물질적, 정신적 측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4조의 도의 책무, 제5조의 우량도서류등의 추천, 제6조의 표창 및 제7조의 도서류등의 판매 등 및 흥행의 자주규제의 규정이다.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청소년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8조의 불건전한 도서류등의 지정, 제9조의 지정도서류의 판매등의 제한, 제10조의 지정영화의 관람의 제한, 제11조의 지정연극등의 제한, 제14조의 유희광고물에 대한 조치 및 제16조의 심야 흥행장등에의 입장제한등이다.

개념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된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1. 청소년 :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도서류 : 판매 혹은 배포 또는 열람 혹은 관람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서적, 잡지, 문서, 도화, 사진, 비디오테이프 및 비디오디스크, 영상용의 영화 필름 및 슬라이드 필름을 말한다.
3. 광고물 : 옥내 또는 옥외에서 공중에 표시되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벽지 및 벽보와 아울러 광고탑, 광고판, 건물과 그밖의 공작물에 게시 또는 표시된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해 설

본 조 제2호 중, “비디오테이프 및 비디오디스크”에 관해서는 1992년의 조례 개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제1호에서 청소년을 18세미만의 자로 규정한 것은 아동복지법 및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이하 “풍영법”이라 한다.) 등에서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이에 미달된 자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를 부과하는 것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인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서 정한 기준이다.

제2호의 도서류 중 문서에 관해서는 신문과 같이 매일 발생하는 것은 발행후 지정한다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제5조(우량도서류등의 추천) 및 제8조(불건전한 도서류등의 지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문은 사실상 추천 또는 지정하지 않는다.

제3호의 광고물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외에 옥내에서 공중에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 참고 법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청소년”과 유사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민법 제3조 [성년기] :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
- 소년법 제2조제1항 : 이 법률에서 “소년”이란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하고, “성인”이란 만 2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 [아동] : 이 법률에서 아동이란 만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

를 말하고, 아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乳兒 만1세에 달하지 않은 자
 2. 幼兒 만1세에서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 까지의 자
 3. 少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서 만18세에 달하기 까지의 자
- 모자및과부복지법 제5조제2항 이 법률에서 “아동”이란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제22조 :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에 제시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영업소에서 18세미만의 자에게 객의 접대를 시키거나 객의 상대가 되어 댄스를 시키는 것.
 3. 영업소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의 시간에 18세미만의 자를 객을 접대하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
 4. 18세미만의 자를 영업소에 객으로 입장시키는 것. (이하 생략)

민간의 감시·신고

제4조의2(도민의 신고) 도민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것 또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해 설

본 조는 1992년의 조례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도민이 지사에 대해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유익하거나 역으로 건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전문에 있어서의 도민의 책무의 규정, 즉 “우리 도민은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자각하고”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등에 관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의 시각에서 널리 도민이 의견이나 정보제안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청소년도 사회의 성원이라는 전문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으로부터의 신고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이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청소년을 건전육성함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란 신고자가 제5조에 규정된 도서류, 영화등, 완구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란 신고자가 제8조에 규정된 도서류, 영화등, 완구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 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고 전화, 구두, 문서(봉서, 엽서를 포함)중 어느 것도 무방하다.

신고된 내용에 관해서 도는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민으로부터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또는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류, 영화등 혹은 완구류의 신고가 있었을 경우, 신고를 접수한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지 또는 현물을 조사,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에 자문하는등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본 조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반해서 특정한 출판사나 출판물등이 부당한 공격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만 한다. 또한 신고하는 도민도 동일한 자세가 요청된다. 따라서 신고의 상황을 적절히 심의회에 보고하는 등 운용의 공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또는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의 신고에 관해서도 본 조례의 취지에 적합한 것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업계의 자율규제

제7조(도서류등의 판매등 및 흥행의 자주규제) 도서류의 발행, 판매 또는 대여를 업으로 하는자 및 영화등을 주최하는 자 및 흥행장(흥행장법 (1948년 법률 제137호) 제1조의 흥행장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경영하는 자는 도서류 또는 영화등의 내용이 청소년에 대해서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또는 잔학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상호 협력하여 긴밀한 연락에 당해 도서류 또는 영화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배포, 대여, 또는 관람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해 설

본 조는 1992년 조례개정에서 도서류의 정의 중에 비디오테이프 및 비디오디스크(이하 “비디오소프트”라 한다)가 추가됨에 따라 “출판을 업으로 하는 자, 도서류의 판매 또는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의 문구를 “도서류의 발행, 판매 또는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로 고쳤다.

“발행”이란 제2조에 열거한 서적, 잡지 외에 비디오소프트, 영화 필름등을 인쇄 또는 제작하여 세상에 내놓은 것을 말한다.

“판매”란 불특정의 개인 또는 다수인에 대한 유상의 양도행위를 말하고, “배포”란 널리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불특정다수의 자에 대해서 행하는 무상의 배포행위를 말한다.

“...를 업으로 하는”이란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도서류의 발행, 판매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의 것임을 말한다.

“도서류의 대여”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도서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열람 혹은 관람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등을 주최하는 자”란 영리목적의 유무를 떠나서 영화, 연극, 연예 및 공연물을 관람시키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관람시키는 행위의 반복계속성은 필요치 않다.

“홍행장을 경영하는 자”란 홍행장법 제2조에 규정된 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영자를 말한다.

“...우려가 있는”이란 그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잔학성을 조장하는 도서류등이 청소년과 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완성인 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와 같은 위험을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이것을 포착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조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동 조에는 완구류업자와 광고업자에 관해서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동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자주규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 참고 법령

홍행장법 제1조, 제2조

저작권법 제2조제20호

(4) 유해매체물의 심의·지정

불건전 도서류·영화·광고물의 지정

제8조(불건전한 도서류의 지정) ① 지사는 다음 각호에 제시된 것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1. 판매 혹은 배포, 또는 열람 혹은 관람하도록 제공된 도서류 또는 영화등으로 그 내용이 청소년에 대해서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또는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판매 또는 배포되어 있는 완구류로서 그 구조 또는 기능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② 전항의 지정은 지정하는 것의 명칭, 지정의 이유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함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

③ 지사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했을 때는 곧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유해광고물에 대한 조치) 지사는 광고물의 형태 또는 그 광고의 내용이 청소년에 대해서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또는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이것을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당해 광고물의 형태 또는 광고의 내용의 변경과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해 설

조례 제1항제1호는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제7조가 단순히 관계자의 자주규제임에 대해서 후자는 불건전한 도서류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지정에 의해 여러가지 법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특별히 요건을 엄격하게 한 것이다.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란, 예를 들면 남녀의 육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이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쉽게 연상시켜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 또한 사회도덕이나 법률에 반하는 폭력을 용인하고 찬미하는 듯한 묘사를 한 것이라든가 잔학한 살인상해, 폭행, 처형 등의 장면이나 살상에 의한 육체적 고통 또는 언어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자극적으로 표현, 묘사한 것(고문, 私刑, 학대를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완구류로서 그 구조 또는 기능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란 그 구조 또는 기능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외에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성기구나 그밖의 성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등 정신면에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포함된다.

제2항은 불건전지정을 할 경우의 절차규정으로서, 지정의 방법은 고시에 의해서 수행되어야만 하고, 고시는 “東京都公報”에 등재해야 한다.

제3항은 고시와 동시에 지정된 사실을 관계자에게 주지시켜야만 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의 주지방법으로는 서점, 편의점, 비디오소프트 판매점,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엽서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불건전도서류의 지정에 있어서는 심사하는 도서의 구입처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일반서점,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이며 구입후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선별한 뒤 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에 자문해서 그 답신을 접수한 뒤에 결정한다.

또한 비디오 소프트에 관해서는 지정후보가 되는 비디오의 구입선은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상황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에 수납되어 있는 것 등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도서와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광고”란 수시 또는 계속해서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은 상업상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많지만, 반드시 상업상의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광고주”란 상업상이나 그밖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광

고를 하는 자란 당해 광고물을 공중에게 표시 또는 당해 광고물을 제시하는 물건을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 결정을 한 자를 말한다.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광고의 효용을 얻기 위해 당해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는 물론 기업체등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관리업무를 행하는 자,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자기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물, 공작물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승인한 광고대리업자등도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이다.

“그밖의 필요한 조치”란 당해 광고물의 제거, 게시장소의 이전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또한 지사가 이들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는 제15조에 규정된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본 조에 위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

□ 참고법령

- 헌법 제21조
- 형법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 총포도검류소지등규제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
- 關稅定率法 제21조제1항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항

□ 제8조에 의한 지정에 관한 인정기준

조례 제8조(불건전한 도서류등의 지정) 제1항제1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 또는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도서류의 지정에 관한 인정기준

가.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

- (가) 남녀의 육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
- (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쉽게 연상시켜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
- (다) 의학적, 민속학적, 그밖의 학술적 내용이더라도 성에 관한 묘사, 표현이 청소년에 대해서 성적 열정을 자극하는 것
- (라) 앞의 것 외에 소재, 묘사, 표현 등이 앞의 (가)에서 (다)까지와 동일한 정도로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

나.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는 것

- (가) 사회도덕이나 법률에 반하는 폭력을 용인하고 또한 찬미하는 듯한 묘사를 한 것
- (나) 잔학한 살인, 상해, 폭행, 처형 등의 장면이나 살상에 의한 육체적 고통 또는 언어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자극적으로 표현, 묘사한 것(고문, 私刑, 학대를 포함한다.)
- (다) 살인, 상해, 폭행 등의 준비, 실행행위를 모방가능하도록 상세 또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 (라) 앞의 것 외에 소재, 묘사, 표현 등이 앞의 (가)에서 (다)까지와 동일한 정도로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는 것

영화·비디오테이프·비디오디스크의 지정에 관한 인정기준

가.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

- (가) 남녀의 육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
- (나) 동작이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혹은 쉽게 연상시켜서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 또는 대사, 설명, 가곡 등 언어가 현저하게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
- (다) 의학적, 민속학적, 그밖의 학술적 내용이더라도 성에 관한 묘사, 표현이 청소년에 대해서 성적 열정을 자극하는 것
- (라) 앞의 것 외에 소재, 묘사, 표현 등이 앞의 (가)에서 (다)까지와 동일한 정도로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

나.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는 것

- (가) 사회도덕이나 법률에 반하는 폭력을 용인 또는 찬미하는 듯한 묘사를 한 것
- (나) 잔학한 살인, 상해, 폭행, 처형 등의 장면이나 살상에 의한 육체적 고통 또는 언어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자극적으로 표현, 묘사한 것(고문, 私刑, 학대를 포함한다.)
- (다) 살인, 상해, 폭행 등의 준비, 실행행위를 모방가능하도록 상세하게 또는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 (라) 앞의 것 외에 소재, 묘사, 표현 등이 앞의 (가)에서 (다)까지와 동일한 정도로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는 것

완구류의 지정에 관한 인정기준

제8조제1항제2호에 있어서 "구조 또는 기능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 가. 첼포 등을 모방한 것, 날리는 도구 또는 던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신체에 위해를 주는 것
- 나. 불꽃등 폭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신체에 위해를 주는 것
- 다. 구조 또는 기능이 성적 자극을 부여하거나 또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등 청소년의 정신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 라. 앞의 것 외에 구조 또는 기능이 청소년의 심신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것

유해 광고물에 의한 조치명령에 관한 인정기준

조례 제14조(유해광고물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또는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1) 심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

- 가. 남녀의 육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
- 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쉽게 연상시켜서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것
- 다. 의학적, 민속학적, 그밖의 학술적 내용이라든가 성에 관한 묘사, 표현이 청소년에 대해서 성적 열정을 자극하는 것
- 라. 앞의 것 외에 소재, 묘사, 표현 등이 앞의 가·나·다와 동일한 정도로 비속한 것

(2)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는 것

- 가. 사회도덕이나 법률에 반하는 폭력을 용인 또한 찬미하는 듯한 묘사를 한 것
- 나. 잔학한 살인, 상해, 폭행, 처형 등의 장면이나 살상에 의한 육체적 고통 또는 언어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자극적으로 표현, 묘사한 것(고문, 死刑, 학대를 포함한다.)
- 다. 살인, 상해, 폭행 등의 준비, 실행행위를 모방가능하도록 상세 또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 라. 앞의 것 외에 소재, 묘사, 표현 등이 앞의 가·나·다와 동일한 정도로 심하게 잔학성을 조장하는 것

(5) 유해매체물의 유통제한

유해도서류 판매제한

제9조(지정도서류의 판매등의 제한) ①도서류의 판매 또는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와 영업에 관련하여 도서류를 배포하는 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거 지사가 지정한 도서류(이하 "지정도서류"라 한다)를 청소년에게 판매, 배포하거나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별칙: 30만원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②누구도 청소년에게 지정도서류를 열람 또는 관람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 설

본조 제1항은 지정도서류의 판매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당해 영업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이다.

“사용인”이란 영업자에 고용되어 그 영업상의 지배권에 따르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밖의 종업자”란 대리인, 사용인 등의 영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종업자는 반드시 영업자 자신이 직접 그 사업에 종사시키고 있는 자일 필요는 없다. 영업이라는 집단적 활동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업자의 통제감독하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종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영업에 관해서서 도서류를 배포하는”이란 영업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가 영업자의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도서류를 배포하여 그 결과가 영업자에게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영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예를 들면 상품, 경품 등의 명목으로 도서류를 배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

제2항은 1992년의 조례개정에서 도서류의 정의중에 비디오 소프트가 추가됨에 따라 “지정도서류를 열람시키지”를 “지정도서류를 열람 또는 관람시키지”로 일부를 개정하였다.

모든 사람이 청소년에 대해서 지정도서류를 열람 또는 관람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도”란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에 거주 또는 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키는 것이다. 따라서 본 항의 규정은 이들(법인을 포함)에 대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본 항 위반에 관해서는 벌칙의 적용은 없다.

유해영화의 관람제한

제10조(지정영화의 관람의 제한) ①홍행장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사가 지정한 영화(이하 “지정영화”라 한다.)를 상영할 때는 당해 홍행장을 경영하는 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는 이것을 청소년에게 관람시켜서는 안된다. (벌칙: 30만원이하 벌금 또는 과료)

②누구도 청소년에게 지정영화를 관람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해 설

제1항 “상영”이란 영화를 비추어서 관객에게 보이는 것을 말하고, “관람”이란 구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조에 있어서의 관람은 청소년이 지정영화를 볼 목적으로 당해 흥행장에 입장하여 지정영화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관람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장내가 만원이 되어 실제로는 청소년이 영화를 관람할 수 없거나 다른 입장객으로부터 꾸중을 받거나 해서 입장한 뒤 바로 퇴장한 경우에도 관람시킨 것으로 되며, 이 해석은 다음 조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벌칙의 적용이 있다.

제2항은 누구도 청소년에 대해서 지정영화를 관람시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의 노력의무를 정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본 항 위반에 관해서는 벌칙의 적용은 없다.

또한 영화가 2편 이상 상영되는 경우, 그중 1편이라도 지정영화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지정영화가 상영되는 시간대는 청소년이 입장 또는 관람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동경도에서는 映倫管理委員會가 “성인영화”로 지정한 것에 관해서는 제8조와 관련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의 것이어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동경도 興行環境衛生同業組合의 자주규제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인영화관에 입장시킬 수 없다.”는 합의가 있고 현재 조합원에 의해서 그것이 준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연극의 관람제한

제11조(지정연극등의 관람의 제한) 흥행장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사가 지정한 연극, 연예 또는 공연물(이하 “지정연극등”이라 한다)을 상연하거나 관람하도록 제공할 때는 당해 흥행장을 경영하는 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는 이것을 청소년에게 관람시켜서는 안된다.(벌금 : 30만원이하 벌금 또는 과료)

□ 해 설

“상연”이란 연극, 연예, 또는 공연을 무대 등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관람하도록 제공하는”이란 연극, 연예, 공연을 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 영화의 경우는 영화필름이라는 매체를 통해 비추어진 영상을 관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해 영화가 지정되면, 다른 흥행장에서 상영되는 경우에도 지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지만, 연극등의 경우는 그와 같은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이어서 다른 흥행장등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상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조의 지정처분의 효력은 지정시의 당해 흥행장에서 상연되고 있는 연극 등에만 미치는 것이다.

본 조의 규정에 위반하면,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벌칙이 적용된다.

유해공연물의 표시

제12조(관람등의 제한의 게시) 지정영화 또는 지정연극등을 상영, 상연, 또는 관람하도록 제공하는 흥행장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 흥행장의 입구의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동경도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게시를 해야만 한다.

□ 해 설

“쉽게 눈에 띄는 곳에 … 게시”란 관람희망자가 입장하는 경우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 예를 들면 입구정면이나 매표소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게시를 하더라도 그 앞에 차단물이 덮혀있는 경우는 본 조에서 의미하는 게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0조의 해설에서 설명한 대로 “성인영화”에 관한 청소년의 입장제한에 관해서는 업계의 자주규제가 준수되어, 성인영화상영관 입구에는 본 조의 취지를 받아들인 업계에서 정한 양식의 게시물이 걸려 있다.

□ 참 고

제14조(관람등의 제한의 게시의 양식) 조례 제12조의 게시의 양식 및 조례 제16조제2항의 게시의 양식은 각각 별기 제1호 양식 및 제2호 양식으로 한다.

제1호 양식

현재 상영중(상연중)인 “ ”는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에게 관람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정되었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분들의 입장을 금지합니다.

크기 횡 70 Cm, 종 40 Cm

제2호 양식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8세 미만의 분의 입장을 금지합니다.

크기 횡 70 Cm, 종 40 Cm

* 영업종료시각이 오전 4시 이전인 경우에는 이 양식중 “다음날 오전 4시”로 된 부분에 그 영업종료시각을 기재할 수 있다.

유해완구류의 판매제한

제13조(지정완구류의 판매등의 제한) ①완구류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 아울러 영업에 관련하여 완구류를 배포하는 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사가 지정한 완구류(이하 “지정완구류”라 한다)를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배포해서는 안된다.

(벌칙 : 30만엔이하 벌금 또는 과료)

②누구도 청소년에게 지정완구류를 소지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해 설

제1항은 지정완구류의 판매·배포의 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본 항의 규정에 위반하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

제2항은 누구도 청소년에 대해서 지정완구류를 소지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본 항 위반에 관해서는 벌칙의 적용은 없다.

“소지”란 반드시 물리적으로 물품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해 완구류를 집에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도 그 완구가 사실상 그 사람의 지배하에 있으면 소지에 해당한다.

(6) 유해업소의 출입제한

홍행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 심야출입제한

제16조(심야에 있어서의 홍행장등에의 입장제한등) ①홍행장을 경영하는 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 아울러 설비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볼링, 스케이트 또는 수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영업을 행하는 자(이하 "볼링장등 경영자"라 한다.) 및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는 심야(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있어서는 당해 영업의 장소에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벌칙 : 30만엔이하 벌금 또는 과료)

②홍행장을 경영하는 자 및 볼링장등 경영자는 심야에 영업을 행하는 경우는 당해 영업의 장소 입구의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동경도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게시를 해야만 한다.

□ 해 설

제1항은 홍행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시설의 경영자등에게 심야, 청소년이 당해 시설에 입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심야에 있어서의 홍행장등에의 입장제한에 관해서는 청소년이 심야의 시간대가 되기 전에 이미 당해 홍행장등에 입장해버린 경우의 대처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야구의 야간경기 등에서 연장전이 되거나 또는 극장등에서 사고때문에 종영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오후 11시 이후까지 입장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청소년에게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호자등의 동반자가 있거나 오후 11시 이후라도 곧 종료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영업의 장소”란 영업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하고,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된다”란 영화등의 관람이나 볼링등을 행하려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됨을 말한다.

제1항에 위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2항은 제12조의 관람등의 제한의 게시와 동일하게 동경도 규칙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한 게시의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서 이것을 위반한 경우는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받게 된다.

“심야에 영업을 하는 경우”란 영업의 형태상 항상 심야에 영업을 하는 경우는

물론 통상은 오후 11시에 종료하는 영업의 형태라도 종종 영업시간이 심야로 연장되는 경우도 포함한 것이다. 이 경우에 후자에 있어서는 입장제한의 게시는 오후 11시에 게시하면 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입장시에 이미 퇴장시간이 오후 11시 이후가 되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후 11시 전에 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게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 참고법령

-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2조, 제28조
- 노동기준법 제61조제1항

(7) 심의·자문기구

지사의 의무

제15조(심의회의의 자문) ①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거나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 동경도 청소년건강육성심의회의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한다.

②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경도 청소년건강육성심의회의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7조에 규정된 자주규제를 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한다.

□ 해설

본 조 제1항에서는 지사가 제5조의 규정에 기초한 우량도서류등을 추천하거나 제8조에 의한 불건전 도서류등을 지정할 때 혹은 제14조의 유해광고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는 지사의 자문기관인 동경도 청소년건강육성심의회의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함을,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심의회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제7조에 규정된 관계업계에 자주규제단체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의견을 청취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제1항의 지정등에 있어서 심의회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추천하거나 혹은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을 부과함에 있어서 지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3자기관의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의견청취는 심의회 개최에 앞서 행해지게 된다.

□ 참고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8조의4제3항

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

제19조(설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 심의하기 위해 동경도 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조례규칙 제17조(심의회외의 사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동경도 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외의 사무는 생활문화국 여성청소년부 청소년과에서 처리한다.

제20조(조직)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제시된 자와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20인 이내로 조직한다.

1. 업계에 관계가 있는 자 3인 이내
2. 청소년의 보호자 3인 이내
3. 학식경험이 있는 자 8인 이내
4.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3인 이내
5. 동경도의 직원 3인 이내

제21조(위원의 임기) 전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회장) ①심의회에 회장을 두고, 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회장을 정한다.

②회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사전에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3조(소집) 심의회는 지사가 소집한다.

제24조(정족수 및 표결수) ①심의회는 위원들의 반수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②심의회회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회장인 위원(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과반수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의2(소위원회) ①회장은 심의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당해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심의회에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회장 및 회장이 심의회회의 위원 중에서 제20조 각호에 제시된 구분에 따라 지명하는 위원 5인으로 조직한다.

③소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회장이 이를 담당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⑥심의회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소위원회회의 의결을 심의회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⑦제2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회의 정족수 및 표결수에 관해서 준용한다.

□ 해 설

제19조는 심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 심의회는 지사가 우량도서류등을 추천하거나 불건전한 도서류등을 지정, 혹은 유해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 의견을 청취하는 기관으로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을 청취함으로써 이 조례의 공정한 적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제 20조에서 “업계에 관계가 있는 자”란 이 조례의 집행과 관계가 있는 업계에 관계를 가진 자, 예를 들면 출판관계자, 영화관계자, 흥행장관계자, 서적판매업관계자 등을 말한다.

“청소년의 보호자”란 친권을 행하는 자, 후견인, 그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현재 감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학식경험이 있는 자”란 청소년문제에 관해서 학식이 있는 자 또는 청소년문제에 관해서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이란 청소년대책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행정기관, 예를 들면 동경법무국, 동경소년감별소, 경시청 등의 직원을 말하고, “동경도의 직원”이란 동경도의 생활문화국, 복지국, 교육청 등 청소년문제에 관계있는 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제21조는 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것이다. 업계와 관계가 있는 자,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식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사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보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및 동경도의 직원에 관해서는 임기가 정해지지 않고 그 직에 있는 기간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제24조의2는 1992년의 조례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규정이다.

불건전한 도서류등의 지정에 관해서 긴급성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심의회에 있어서의 심의의 특례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본 조례의 취지를 토대로 하여 절차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절차의 신속화를 기하려는 동경도의 독자적인 방식이다.

제1항의 “심의회가 정한 바에 따라”란 심의회가 “심의회운영요령” 등을 규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요령”등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란 본 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8조에 규정된 불건전한 도서류등의 지정에만 한정하는 것이다.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이란 “요령”등에 명시된 것으로서, 심의회 개최 직후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도서류가 대량으로 판매되어 다음 심의회에서 결정할 경우 지정의 효과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경우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제2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규정한 것으로 업계와 관계가 있는 자, 청소년의 보호자, 학식경험이 있는 자,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동경도의 직원의 각 구분마다 한명씩 선출해서 위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출방식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요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항은 소위원회의 소집은 심의회의 경우 지사가 소집하는 것과는 달리 제1항에서 회장이 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서 회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곧 심의회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것은 소위원회가 긴급성을 요하는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되는 점에 착안해서 정한 것이다.

“심의회는 그 규정한 바에 따라”란 제1항과 동일하게 “요령”등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소위원회가 심의회의 예외적인 조치라는 사실에 비추어 소위원회 의결후 바로 다음 심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7항은 소위원회의 정족수, 표결수에 관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심의회의 그것을 준용해서 정족수는 반수 이상, 표결수는 과반수로 한다. 즉 정족수는 회장 및 5인의 위원의 반수 이상, 요컨대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다. 이 경우 표결이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본 조에 기초하여 불건전한 도서류의 지정을 행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자주규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8) 행정적·사법적 규제

영업장 조사권

제17조(입회조사) ①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의 각호에 제시된 장소에 영업시간(제4호에 제시된 영업의 장소에 있어서는 심야에 있어서의 영업시간으로 한다.)내에 입장하여 조사를 행하거나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서류의 판매 또는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장소 및 영업에 관련하여 도서류를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
2. 흥행장
3. 완구류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장소 및 영업에 관련하여 완구류를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
4. 볼링장등 경영자의 영업장소

②전항의 관계공무원은 지사의 사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사가 지정한 자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관계공무원은 동경도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사전에 이것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 해 설

제17조는 관계공무원이 이 조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관계자의 영업장소를 영업시간대에 입장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그를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 입회조사는 조례의 규정내용의 집행, 즉 행정상의 지도감독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입회조사의 권한의 범위는 그 목적의 범위에 한정된다. 그 범위는 영업의 장소에 입장한 뒤 조사를 행하고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관계공무원”이란 지사의 지정을 받아서 입회조사증을 교부받은 지사의 사무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도서류의 판매 또는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의 장소”란 개인 경영의 서적상등에 있어서는 그 점포부분을 말하고, 점포의 내부에 있는 주거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완구류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의 장소”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영업에 관련하여 도서류를 배포하는 자의 영업의 장소”란 영업에 관련하여 도서류를 배포하는 자가 영업활동을 행하는 장소로서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입회조사의 목적에서 보아 필요한 범위내의 장소로서 그 자체의 한계가 있다. 즉 영화의 선전활동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장소와 촬영을 행하는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유해한 선전 포스터에 관해서 조사를 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전활동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장소로 한정될 것이다. “영업에 관련하여 완구류를 배포하는 자의 영업의 장소”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입회조사는 개인이 지닌 권리나 자유의 제한이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고 그 실시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여 이것을 행하는 자는 권한있는 기관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2항, 제3항을 둔 이유이다.

즉, 입회조사를 하는 직원은 지사의 사무부서(공안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행정위원회의 사무부서 등을 제외한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지사가 지정한 자이며, 당해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 참고 법령

○헌법 제35조

○규칙 제15조(입회조사의 증표의 양식) 조례 제17조제3항의 증표의 양식은 별기 제3호 양식으로 한다.

제3호 양식(제15조 관계)

앞

제 호 입 회 조 사 증			
사	진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흥행장 등에 입회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거 나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경도지사 (유효기간 1년)			

뒤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발체)
제17조(입회조사) ①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의 각호에 제시된 장소에 영업시간(제4호에 제시된 영업의 장소에 있어서는 심야에 있어서의 영업시간으로 한다.)내에 입회하여 조사를 행하거나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서류의 판매 또는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장소 및 영업에 관련하여 도서류를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 2. 흥행장 3. 완구류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장소 및 영업에 관련하여 완구류를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 4. 볼링장등 경영자의 영업장소 ②전항의 관계공무원은 지사의 사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사가 지정한 자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관계공무원은 동경도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사전에 이것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크기 종 6 Cm, 횡 9 Cm

고발전 사전경고제

제18조(경고) ①전조의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지정도서류를 판매, 배포 또는 대여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지정영화를 관람케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지정연극등을 관람케 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지정완구류를 판매, 또는 배포한 자
5. 제12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를 태만히 한 자

②전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다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일 때, 그 법인 또는 개인 및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전항의 경고를 발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고는 동경도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경고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것으로 한다.

□ 해 설

제1항은 제17조의 관계공무원이 지정도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배포, 또는 대여한 자, 지정영화, 지정연극등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자, 지정완구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배포한 자, 지정영화의 게시 혹은 심야에 있어서의 흥행장, 볼링장등의 입장금지의 게시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해서 경고를 발할 수 있다는 것과 경고의 양식등에 관해서 규정한 것이다.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우선 그 사람에게 경고를 발하고, 또한 그 경고에 따르지 않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벌칙을 적용한다. 단, 제5호의 지정영화의 관람등을 제한하는 게시의 의무위반에 관해서는 경고를 발하는 것 이외의 벌칙의 적용은 없다.

제2항은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일 때는 그 법인 또는 개인 및 대리인에 대해서도 경고를 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제3항은 경고의 형식에 관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제25조의 벌칙적용을 고려해서 경고는 동경도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경고서를 교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조례규칙 제16조(경고서의 양식) 조례 제18조제3항의 경고서의 양식은 별
기 제4호 양식으로 한다.

제4호 양식 (제16조 관계)

앞	
	제 호 연 월 일
피경고자 주소 성명 귀하 동경도 소속 직·성명 인	
경 고 서	
귀 ____가 행한 아래의 행위는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1964년 동경도 조례 제181호) 제__조제__항__의 규정(뒷면 참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동조례 제18조제1항 제__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고한다.	
다 음 1. 일 시 2. 장 소 3. 내 용	

(주) 복사식으로 한다.

(일본공업규격 B열 5번)

30만엔이하 벌금 또는 과료 (사전경고방식)

제25조(벌칙) 제18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혹은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에 따르지 않거나,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해 설

본 조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지정도서류를 판매·배포·대여한 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지정영화를 관람시킨 자,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지정연극등을 관람시킨 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지정완구류를 판매·배포한 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발한 경고에 따르지 않고 다시금 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을 규정한 것이다.

본 조는 한 번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곧 고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른바 直罰 방식이 아니라 고발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해서 사전에 경고를 필요로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 참고 법령

- 형법 제15조,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제5항, 제6항

30만엔이하 벌금 또는 과료 (직벌방식)

제26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해 설

본 조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광고물에 대한 지사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야에 있어서의 흥행장등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해서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을 규정한 것

이다.

제2호는 위반사실이 증명되면 곧 고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직벌방식을 도입한 규정이다.

10만엔이하 벌금 또는 과료 (직벌방식)

제27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입회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및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해 설

본 조는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문서류의 판매등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장소등에 관계공무원이 행하는 입회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혹은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규정이다.

본 조를 위반하면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전 조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의 경고 없이 벌칙이 적용된다.

본 조에서 말하는 “기피”란 관계공무원의 입회조사시 그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적극적인 거부행위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그 장소에서 책임자등이 사라지거나 하여 적극적으로 입회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연령확인 의무 과실

제2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제25조 또는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단지 과실이 없을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 설

본 조는 제9조제1항의 지정도서류의 판매등의 제한, 제10조제1항의 지정영화의 관람의 제한, 제11조의 지정연극등의 관람의 제한, 제13조제1항의 지정완구류의 판매등의 제한, 제16조제1항의 심야에 있어서의 흥행장등에의 입장제한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본 조에서 말하는 “과실”이란 주의를 기울이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란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극적으로 본 조의 벌칙적용을 취소한다는 의미이다.

즉, 연령확인을 할 때 당해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명서나 연령을 사칭한 정기간을 제시한 경우 등 누가 보더라도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오인한 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상황인 경우는 굳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 단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대리인, 사용인과 그밖의 종업자가 한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 설

본 조는 현실의 행위자를 벌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례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도 처벌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양벌규정을 설정한 이유는 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행해진 경우 영업이익등을 획득하는 자는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행위자 이외의 사업주이기 때문에 그들이 종업자들을 통해 행하는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

기 위한 것이다.

단, 법인등의 사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명이 있는 경우는 굳이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한다.

청소년의 면책

제30조(청소년에 관한 면책) 이 조례에 위반한 자가 청소년일 때는 이 조례의 벌칙은 당해 청소년의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해 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 즉 청소년을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환경으로부터 지킬 의무를 청소년 이외의 성인 都民에게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례를 위반한 자가 청소년일 때에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조례의 본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조에 의거하여 당해 청소년의 위반행위에 관해서 처벌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한 것이다.

(9) 유익환경 조성 정책

우량도서류 추천제

제5조(우량도서류등의 추천) 지사는 다음의 각호에 제시된 것으로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유익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

1. 도서류로서 그 내용이 특히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것
2. 영화, 연극, 연예 및 공연물(이하 “영화등”이라 한다)로서 그 내용이 특히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것
3. 완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하 “완구류”라 한다)으로서 그 구조 또는 기능이 특히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것

우량도서류 추천에 관한 인정기준

조례 제5조(우량도서류등의 추천)에 있어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 (1) 사회의 양식과 윤리관념의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
- (2) 올바른 지식과 교양을 심화시키는 것
- (3) 인간적 애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
- (4)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세련되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
- (5) 건전한 오락작품으로서 뛰어난 것
- (6) 사고력, 비판력 또는 관찰력을 배양하는 것
- (7) 앞의 각호 외에 건전한 심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

□ 해 설

이 조례에 있어서는 본 조에 의한 우량도서류의 추천 외에 제8조의 불건전한 도서류등의 지정 및 제14조의 유해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이 가능한데, 이들의 운용에 있어서는 공평하고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조에 의한 추천이나 제8조의 불건전한 도서류의 지정등에 있어서는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관한 인정기준”(1964년 10월 22일부 39總生健 제29호에 의한 지사결정, 최종개정 1992년 6월 2일부 4生女青健 76호에 의한 지사결정)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무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에 의한 추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2조의 도서류·영화·완구류로서 그 내용이 특히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의 양식과 윤리관념의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나 올바른 지식과 교양을 심화시키는 것, 또한 인간적 애정을 풍부하게 길러줄 수 있는 것 등이 그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추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선정에 관해서는 앞서의 “인정기준”에 의해서 행해진다.

또한 지사가 이것들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에 규정된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제8조의 불건전한 도서류등의 지정과 동일한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공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 제7항

유공자 표창제

제6조(표창) 지사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 각호에 제시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로서 그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가 추천한 도서류, 영화등 및 완구류로서 특히 우량으로서 인정되는 것을 작성하거나 또는 공중이 관람하도록 제공한 자 및 이것에 참여한 자
4.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규제를 행한 자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한 바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자

□ 해 설

본 조의 표창제도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현저한 공적 또는 모범으로서 추천할만한 업적 혹은 덕행이 있는 자를 표창함으로써 심신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이 조례의 이념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의 표창절차에 관해서는,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2조에서 제13조까지에, 또한 표창후보자의 추천기준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에 기초한 표창사무취급요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표창자의 결정에는 공정을 기할 필요에서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청소년 건전육성 표창심의회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표창후보자의 추천

조례규칙 제2조(표창후보자의 추천등) ①區市町村長은 조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표창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적을 정밀히 조사해서 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계속)

②관계국등의 장은 그 소관사무와 관련해서 廣域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조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표창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적을 정밀히 조사해서 지사에게 내신하거나 또는 추천할 수 있다.

③생활문화국장은 조례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표창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적을 정밀히 조사해서 지사에게 내신해야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내신을 할 경우, 표창후보자와 관련된 다음에 제시된 서류로서 지사가 지정하는 것을 첨부해야 한다.

1. 추천조서

2. 형벌등조서

3. 전2호에 제시된 것 외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피표창자의 결정) 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내신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 건전육성표창심의회와 심사를 거쳐 피표창자를 결정한다.

제5조(결격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을 받을 수 없다.

1. 조례 또는 동경도 표창규칙(1972년 동경도 규칙 제17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표창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동경도의 구역밖에서 행한 자. 단 동경도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 또는 사무소를 가진 단체로서 조례 제6조제2호의 규정과 관련된 행위를 행한 자는 제외한다.

3.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형에 처해진 자. 단 형이 삭감된 자는 제외한다.

4. 파산자 또는 금치산자 혹은 준금치산자

5. 그밖에 지사가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재표창) 전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새로운 공적에 한해서 표창할 수 있다.

1. 동경도 표창규칙에 의거하여 표창된 뒤 만 2년을 경과한 자일 때.

2. 조례 제6조제2호와 관련된 표창을 받은 자일 때.

제7조(표창의 방법) ①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덧붙이는 것으로 한다.

②표창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적은 동경도 公報에 등재하여 공표한다.

제8조(표창의 시기등) 표창은 매년 1회, 지사가 정하는 시기에 한다.

제9조(심사회의 설치 및 관장사항) ①표창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생활문화국의 청소년건전육성표창심사회(이하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회는 표창후보자에 관해서 피표창자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제10조(심사회의 구성) ①심사회는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서 구성한다.

1. 생활문화국장

2. 총무국 지사실장

3. 생활문화국 총무부장

(계속)

4. 생활문화국 여성청소년부장

5. 복지국 아동부장

6. 노동경제국 노정부장

②지사는 전항에 정한 자 외에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동경도 교육위원회 또는 동경도 공안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회에 추가할 수 있다.

1. 교육청 생애학습부장

2. 경시청 방범부 소년제1과장

제11조(심사회의 부의절차) 심사회의 의안은 생활문화국 여성청소년부 청소년 과장이 조정하여 제출한다.

제12조(심사회의 운영) 심사회는 생활문화국장이 주재한다. 단 회람하여 심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심사회의 서무) 심사회의 서무는 생활문화국 여성청소년부 청소년과에서 처리한다.

2. 독일의 청소년보호 법제

1) 청소년보호법규 개관³⁾

(1) 기본법

Bohn기본법의 제5조는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6조제2항은 필요한 제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위한 환경조정에 관한 법규제가 정당화된다. 이와 같은 헌법 규정에 바탕을 두고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몇 가지 법제가 정비되어 있는데 그 개요를 간략히 소개한다.

□ Bohn 기본법

제5조 ①누구든지 구두, 문서 및 도서에 의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며 전파할 권리 및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출처’로부터 자유로이 정보를 얻는 “알 권리”를 갖는다. 출판의 자유와 라디오 및 영화에 의한 보도의 자유도 보장된다. 검열은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②이러한 기본권은 법률,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의 명예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한된다.

③예술과 학문, 연구와 가르치는 것은 자유다. 가르치는 것이 자유롭다고 해서 헌법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6조 ②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부모에게 최우선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다. 국가는 부모의 그러한 행위를 감시한다.

(2) 형 법

규제내용

1960년대 후반 북부독일에서부터 ‘성 자유화’ 물결이 밀려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형법 개정법(1973년 11월, 제4차 개정)은 형법 174조~194c조까지

3) 이광호 역(1992) 「청소년 유해환경과 규제의 정당성」 (한국청소년 연구, 제9호)과 일본청소년유해국민회의 편(1985) 「청소년유해환경-구미제국에 있어서 각종 규제와 일본의 현생과 과제」중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재편집하였다.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엄격한 성도덕에 기초한 몇몇 규정이 폐지되고, 기본적으로 성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을 해하는 행위나 표현으로부터 청소년은 보호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인들의 성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호권자의 미성년자(18세미만자) 성적 학대 금지(174조), 아동(14세미만자)에 대한 성적 학대 금지(176조), 16세미만 소녀와의 성행위 금지(182조), 미성년자에게 포르노 문서·도화를 제공하거나 보고 듣게 하는 행위 금지(184조1항), 아동의 성적 학대 등을 내용으로 한 포르노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행위의 금지(184조3항)등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형(自由形 : 행위의 양태에 따라 법정형은 각각 다르지만, 176조에서 성적학대 행위에 대해 최고 10년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처벌된다.

유해도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184조 1항은 포르노 문서·도화를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인도하거나 듣고 보게 하는 것(1호), 18세 미만자가 출입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 진열·게시·관람하게 하거나 듣고 보게 하는 것(2호), 18세 미만자가 출입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제공·광고·추천한 자(5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단, 1호에서 미성년자에게 포르노물을 관람시킨 자가 보호권자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184조4항). 이는 부모의 교육권(Bohn 기본법 6조2항)을 배려한 것이다. 또한 잔학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인간에 대한 폭력행위를 기술했고 이러한 폭력행위를 찬미 혹은 그것을 경미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인종간의 증오심을 유발하는 문서·도화를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또는 인도하거나 듣고 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지만(131조1항3호), 여기에서도 보호권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동조 4항)

운용 실태

한 예로 1983년의 독일 연방경찰 범죄통계서를 보면, 형법 176조에 의한 아동

의 성적 확대는 매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70년대에 약 1만 5천건에서 80년대에는 1만 2천건 정도로 감소하였다(83년에는 10,939건). 이것은 독일 전역에서 아동학대가 문제시되어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혀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종래에 비해 검거율은 15% 감소하고 있다(83년 6,839건 검거, 검거율 62.5%).

184조의 포르노 문서·도화 배포에 있어서는 1,538건(81년), 1,436건(82년), 1,487건(83년)의 인지건수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90% 이상의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는 184조 전항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규정에 의해 경찰 차원에서는 포르노물 배포규제가 엄격히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법정에서 유죄를 얻도받은 경우는 드물다. 법원은 성형법(性刑法)의 자유화라는 목표를 존중하는 동시에, 포르노 개념의 불명확함 때문에 법조문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다.

□ 형법의 폭력표사 금지

제131조(폭력 묘사) (1) 누구든지 잔인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찬양, 과소시하는 방법으로 묘사하거나 혹은 잔인함, 비인간적인 과정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묘사한 문서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1. 반포

2. 공연히 전시, 선전, 상영하거나 입수할 수 있게 하는 행위

3. 18세 미만의 자에게 제공, 인도, 혹은 입수할 수 있게 하는 행위

4. 제작, 거래, 공급, 보관, 제시, 광고, 권유하거나 반입 혹은 반출함으로써 해당 문서나 그것의 일부를 제1호 내지 3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만든 행위

(2)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을 방송에 의해 반포하는 행위

(3) 제1항과 제2항은, 실제 과정이나 역사의 보도를 위해 행해졌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3호는 양육권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형법의 포르노그래피 반포금지

제184조 (포르노그래피의 반포) (1) 누구든지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1. 18세 미만인 자에게 제공, 인도, 입수할 수 있게 한 자
2. 18세 미만인 자들이 출입할 수 있거나 그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전시, 게시, 상연 혹은 접할 수 있게 한 자
3. 판매점포박에서의 소매, 가판대나 고객이 출입할 필요없는 기타의 판매처에서의 판매, 통신판매나 도서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상점 혹은 독서실에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인도한 자
- 3a. 영업적인 대여나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적인 방식에 의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인도한 자. 단, 18세 미만의 자가 접근하거나 들여다 볼 수 없는 점포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4.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입수케 만든 자
5. 18세 미만인 자가 출입할 수 있거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에서나 혹은 해당 영업거래 이외의 방식으로 문서를 전파함에 의해 공연히 광고·선전한 자
6. 요청도 받지 않고서 타인에게 위 포르노그래피를 보낸 자
7. 상영료를 전부 혹은 일부 받고 공개 상연한 자
8. 포르노그래피 자체나 그로부터 발췌된 부분을 제1호 내지 7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 해당 포르노그래피를 제작, 거래, 공급, 비축하거나, 유통시키려고 한 자
9. 포르노그래피 혹은 이로부터 발췌된 부분을 해당국의 형법을 위반하면서 반포하거나 공연히 입수가 가능하게 만들 목적으로 해당 포르노그래피를 국외로 반포시킨 자

(2) 포르노그래피의 내용을 방송에 의하여 반포한 자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3) 포르노그래피, 제반 폭력묘사물이나, 어린이의 성적 남용, 혹은 수간을 내용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를 성적으로 남용하는 내용의 문서의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기타의 포르노그래피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1. 반포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연 혹은 입수할 수 있게 한 자
3. 제1호 내지 2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포르노그래피나 그로부터 발췌한 부분을 제작, 거래, 공급, 보관, 제공, 격려, 반입하거나 반출하려 한 자
- (4) 제3항의 경우에 포르노그래피 문서가 어린이의 성적 남용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실제로 묘사한 경우에는, 만약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

(계속)

위를 계속 하기 위해 결속된 단체의 구성원이라면 6월이상 5년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5) 어린이의 성적 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를 스스로 취득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취득시킨 자는, 만약 그러한 성행위가 실제로 묘사된 경우, 1년이하 자유형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한 포르노그래피를 소유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6) 제1항의 1호는 18세미만인 자의 양육권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의 3a호는 영업적인 대여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항은 전적으로 합법적인 업무나 직업상 의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7) 제4항의 경우에 법 제73d조를 적용한다. 제5항에 규정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상물은 몰수된다. 법 74d조도 적용된다.

(3)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법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57년 7월에 개정된 것으로서 청소년을 둘러싼 풍속영업 등 모든 환경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제내용

음식점에서의 체류제한 :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음식점에 출입·체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2조1항).

○카바레 등 : 레뷔⁴⁾나 카바레 등에 18세 미만자는 입장할 수 없다(5조).

○댄스홀 :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댄스홀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4조 1항),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24시까지만 출입·체류가 허용된다. 단 22시 이후에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동조2항).

○영화 : 6세 미만의 아동은 영화관에 입장할 수 없다(6조1항). 6~11세의 아동은 6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고 지정받은 것으로서 20시까지 종료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12~15세의 청소년은 해당연령 관람가능 영화로서 23시까지 종료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6조2항). 각 연령에 따른 관람가능 영화를 선정하는 것은 고등청소년국이 결정한다(실제로는 FSK가 수행한다).

4) 춤과 음악이 주가 되는 쇼의 일종

○알콜 : 음식점 또는 매점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증류주(브랜디 등)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밖의 알콜음료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다(3조).

○담배 :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공공의 장소에서 흡연해서는 안된다(9조).

그외에도 많은 규제가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복지국 등의 건의에 의해 후견 재판관이 지시를 언도한다(12조). 규정을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알콜을 제공하거나 댄스홀 등에 체류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13조).

운용실태

음식점, 영화관 등의 청소년 출입제한은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 법률의 운용은 14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소지하는 신분증명서(Personalausweis)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관 등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거나 혹은 입장할 때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각 조항에 따른 엄격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1920년대 뉴욕을 무대로 한 'Once upon a time in America'(마피아 이전의 역사를 묘사)라는 영화는 폭력장면이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해서 18세 이상이 아니면 관람할 수 없었다. 영화관 입구는 엄격히 통제되어 영화관내에서 18세 미만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일본에서는 무제한 출입, 상영되었음). 또 섹스상점에서도 18세 미만자의 입장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입구에서 연령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15세 안팎의 청소년들 5~6명이 포르노잡지가 진열된 가게에 들어가자 가게안에 있던 50세쯤의 부인이 진열장의 셔터를 내리고 무섭게 그들을 쫓아내는 인상적인 장면들도 있었다). 위반자에게는 형사벌이 가해지고 영업이 규제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통제가 선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법 규제와 그 치밀한 운용에도 불구하고 독일에는 복잡하고 심각한 청소년문제가 산적해 있다. 실업문제나 폭력, 마약 등은 그 전형이다. 이 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청소년의 알콜남용과 비디오나 T.V. 게임이라는 '뉴미디어의 남용'이 현재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수년 동안 이러한 문

제에 대해 의회나 대학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결과, 1983년 12월 1일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개정초안이 연방의회에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안은 84년에 심의되어 85년 4월경에 공포·시행되었다.

개정의 주요 이유는 첫째,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57년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 둘째, 범람하는 비디오 필름과 그 업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음주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해문서 규제법 5조의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유해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 중 1호에 있는 형법 131조에 해당하는 문서의 요건을 완화하여 폭력 일반을 찬미·조장하는 출판물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초안은 레뷰나 카바레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디오 필름이나 레이저디스크에 대해서도 영화와 같은 연령별 규제를 도입하고(7조), 알콜류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4조). 실제로 자동판매기는 일본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 규정이 청소년의 음주억제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지만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6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보호자가 동반하면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6조)이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도 20시까지는 간단한 음식점에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3조)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도 제시되고 있다.

□ 유해업소 출입제한

제2조(개념정의, 조사와 증명의 의무) ①이 법의 의미에서 어린이는 14세 미만을 말하며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을 말한다.

②이 법의 의미에서 교육자격자란

1. 민법에 따라 혼자 혹은 다른 자와 함께 이들을 보호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말하며,
2. 18세이상의 사람으로 자격자로 부더의 동의로 보호자로의 과제를 인지하거나 보호자 자격교육중에 있거나 자격자의 허락으로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 따라 한 교육자격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제2항에서 지정한 사람은 요구시에 자신의 자격을 설명하여야만 한다. 행사자와 영업자는 의혹이 있을시에는 자격을 조사하여야만 한다.

(계속)

④이 법에 따른 연령제한에 관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요구시에 적당한 방법으로 연령을 증명하여야 한다. 행사자와 영업자는 의혹이 있을시에는 자격을 조사하여야만 한다.

⑤이 법은 결혼한 청소년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식당 및 야간유흥업소 등에서의 체류) ①음식점에서의 체류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한 교육자격자가 그들을 동반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1. 인정받은 청소년후원자가 개최하는 모임에 참가할 경우
2. 여행중에 있는 경우
3. 한끼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②16세 이상의 청소년은 교육자격자의 동반이 없이도 24시까지 음식점에 머물 수 있다.

③야간유흥업소와 같은 음식점에서의 체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유해약물 사용제한

제4조(알콜함유의 음료들) ①음식점들, 상점들 또는 그밖의 공공장소에서

1. 화주와 화주종류의 음료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물과
2. 다른 알콜함유의 음료들은 16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주어지거나 소비될 수 없다.

②위의 1항2호는 청소년들이 보호자격자와 동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공공장소에서 알콜함유의 음료들은 자판기에서의 판매가 불허된다. 이것은 자판기가 상업적 공간에 세워져 있거나 계속적인 감시하에서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판기에서 알콜함유의 음료를 꺼낼 수 없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식업법의 20조1항은 유효하다.

제9조(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불허한다.

□ 유해매체물 유통제한

제5조(공공의 舞蹈행사등) ①교육자격자의 동반없이 공공의 무도행사에는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가를 불허하고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24시까지만 허용한다.

②1항의 예외로 무도행사가 인정된 청소년육성자에 의해 열리거나 예술적 혹은 전통보존의 행사일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22시까지 청소년은 24시까지 허용된다.

③1항의 예외는 청소년관청의 제안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제6조(영화) ①공공영화관 입장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주정부관할부서에 의하여 상영이 허가된 영화 상영시에만 허용된다.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양육권자의 동반시에만 입장이 허용된다.

②아동 및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영화는 그들에게 상영이 불허된다.

③주정부 관할부처는 영화상영허가 또는 불허를 다음과 같은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1. 연령제한없이 허용
2. 6세이상 허용
3. 12세이상 허용
4. 16세이상 허용
5. 18세미만 불허

제1항에 준하여 제3항제5호(18세미만 불허)에 해당하는 영화가 형법 제131조(폭력 묘사, 인종차별 처벌죄) 또는 제184조(외설물 반포죄)의 범법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에는 주정부 관할부서는 당해지역 검찰당국에 인지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관 입장이 허용되더라도 양육자격권자의 동반이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입장이 제한된다.

1. 상영이 20 : 00시까지일 경우, 어린이들에게 허용
2. 상영이 22 : 00시까지일 경우, 16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허용
3. 상영이 24 : 00시까지일 경우, 16세이상의 청소년에게 허용

⑤광고자막, 중간삽입 프로그램 상영규제 조항(생략)

⑥제1항에서 제5항까지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제작·사용되는 영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⑦제3항 각 항목에 의하여 주정부 관할부처가 등급을 매긴 각 영화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문서반포에 관한 연방법 제1조 및 제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 (비디오 카세트, 영상음반 및 영상물) ①모든 녹화된 비디오카세트, 영상음반 및 영상필름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

다. 단, 그 프로그램들은 주정부 관할부처로부터 청소년 연령별 등급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한다.

②승인은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연령구분은 제작시 사용자가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③주정부 관할부처에 의해 연령별 구분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18세미만은 불허' 표시된 비디오물, 영상물 등은

1.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되거나 접해질 수 있도록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2. 상업지역외의 소매점, 간이상점(가판대 및 편의점) 또는 고객의 출입이 잦지 않은 은밀한 판매장소나 통신판매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④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등은 자동판매기로 판매할 수 없다.

제8조(도박실, 도박장, 전자오락실) ①공공도박실 혹은 그와 유사한 도박성이 있는 공간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불허한다.

②당첨금이 적은 가격의 상품일때는 국민축제, 사격대회, 대목장, 특별장 그리고 이와 유사한 행사시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당첨이 걸린 도박에 참여할 수 있다.

③상금이 걸려있지 않은 전자오락실(유폴)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1.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통행장소
2. 상거래상으로 하자가 있는 장소
3. 감시하지 못할 통로나 시설내부

④상금여지가 없는 유료사용 전자오락실이라 하더라도 16세미만의 청소년은 양육권자가 동반한 경우에만 입장이 허용된다.

⑤성적행위 또는 인간이나 동물들을 학대한 폭력묘사가 있는 오락기나 전쟁을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락기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진열, 설치할 수 없다.

<참고> 청소년유해 문서 반포에 관한 연방법

제1조 ①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도덕적으로 유해한 내용을 게재한 문서들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한 유해문서로는 무엇보다도 외설 등 부도덕한 것, 야만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력 묘사, 범죄 또는 인종차별조장 및 전쟁을 찬양하는 것들을 말한다. 블랙리스트 등재는 반드시 공시되어야 한다.

②다음과 같은 문서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는다.

1. 단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세계관적인 관점에서의 논술일 경우
2. 예술이나 학문연구나 학습지도에 기여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저술되었을 경우

제11조 ①연방심의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②연방심의위원회는 유해문서 제소만으로도 개최된다. 연방 여성·청소년성 장관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득한 법제정을 통하여 제소권자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 별 칙

제12조(질서위반, 형사행위) ①고의거나 태만으로 질서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사자나 영업자의 경우는

1. 제3조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의 음식점체류를 허용하는 자
 2. 제4조1항을 위반하여 알콜함유의 음료와 음식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주거나 먹고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자
 3. 제4조 3항1호를 위반하여 알콜함유의 음료를 자판기에 설치하는 자
 4. 제5조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공공 무도행사장에 있는 것을 허락하는 자
 5. 제6조1항 또는 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공공 영화관람을 허락하는 자
 6. 제7조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금지된 영상물 관람을 하게하는 자
 7. 제7조2항2호와 3호를 위반하여 연방주 최고당국에서 지정한 형태나 연령제한에 해당하는 방법의 표시가 아닌 경우
 8. 제7조3항2를 위반하여 금지된 영상물을 제공하는 자
 9. 제7조4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영상물을 자판기에 설치하는 자
 10. 제8조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공공 도박실이나 혹은 그 공간에의 입장을 허용하는 자
 11. 제8조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당첨금이 있는 도박에 참가케하는 자
 12. 제8조3항 혹은 5항을 위반하여 유흥도박설비를 설치하는 자
 13. 제8조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흥도박설비를 사용케하는 자
 14. 제9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나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흡연케하는 자
 15. 제10조의 수행규정을 위반하는 자
 16. 제11조1항을 위반하여 그의 영업설비나 행사장에 적용되는 훈령을 지시된 표시로 알리지 않는 자
 17. 제11조2항을 위반하여 제6조3항1의 표기를 하지않는 자
 - 17a. 제11조3항을 위반하여 상영자가 나이제한에 관한 표시없이 공공영화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자
 18. 제11조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내용을 선전이나 광고로 알리는 자
- ②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위의 1항1호에서 14호까지 이거나 제7조3항1호에서 금지하거나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행규정을 방해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을 유혹 또는 권유하는 자 또한 질서위반자로 간주된다.

(계속)

③질서위반은 벌금 3만 마르크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④다음과 같은 행사자나 영업자는 1년까지의 형사처벌과 벌금에 형사처벌 될 수 있다.

1. 위의 1항에서 말한 고의적 위반으로 적어도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혹은 예절의 발전에 심하게 해를 끼치거나
2. 위의 1항에서 말한 영리추구를 위하여 고의적 위반을 집요하게 반복하는 자

(4) 청소년 유해문서 반포에 관한 법률

규제내용

이 법률은 청소년을 부도덕 내지는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문서·도화나 범죄, 인종간의 증오심을 조장하는 문서·도화로부터 청소년 정서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제1조) 1961년 4월에 제정된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 연방 청소년·가정·보건성, 각 주의 청소년국 및 청소년복지국 등의 건의를 받아 연방심사위원회가 유해문서를 지정하고 목록을 게시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유해문서 목록에 게시된 문서·도화를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고 청소년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3조;4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21조1항).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 분명한 문서·도화(형법 131조, 184조3항에 해당하는 포르노물 등과 도덕상 현저하게 해할 것이 명백한 기타 문서·도화)는 유해문서 목록의 수록여부에 관계없이 배포를 규제한다(6조). 연방심사위원회는 연방 청소년·가정·보건성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주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 그리고 예술, 문학, 도서관, 출판, 청소년단체, 청소년복지, 교직, 종교단체 등 각 집단의 대표자들(연방 청소년·가정·보건성 장관이 임명)로 구성되어 있다.

운용 실태

환경정화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동법에 의거한 행정상의 조치(유해문서를

지정하여 청소년 배포를 규제함)가 중요하다. 청소년복지국이나 주정부의 청소년국 등이 유해문서의 지정을 연방심사위원회에 제소하지만, 그것이 모두 유해지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81년의 상황을 보면 총 345건이 건의되었지만 243건만이 지정되었다. 유해지정을 받게 되면 목록화되어 관보로 고시되는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고된다. 연방심사회는 격월로 ‘BPS Report’를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유해지정 도서목록이 게재되며, 최근에는 비디오 필름에 대한 유해지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보다는 폭력, 잔학성을 과장한 것이 지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라데나 쿡후 등도 목록에 게재되어 있는데, 독일에서는 성보다는 폭력에 더욱 규제의 중점을 두고 있다. 포르노에 대한 유해성 인정기준은 매우 미묘하다. 인간의 삶을 성적 향락으로만 집약시킨 것, 여성을 멸시하는 내용인 것, 여성을 성적 배출구로 묘사하는 것 등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유해지정의 제소는 당초 연방정부 주도로 실시되었지만, 70년대 이후 연방차원에서의 제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78년에는 각 도시의 청소년복지국이 제소권한을 가지게 되어, 현재 절반 이상을 청소년복지국에서 제소하고 있다. 주정부에 의한 제소는 주마다 각기 다른데, 프랑크푸르트가 위치한 헤센주나 베를린, 브레멘에서는 제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에 제소권자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2)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 조문 해석⁵⁾

(1) 블랙리스트 심의기준

제1조 ①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윤리적으로 유해한 내용을 게재한 문서들은 블랙리스트에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유해문서로는 무엇보다도 비윤리적인 것,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력 묘사, 범죄 또는 인종차별조장 및 전쟁을 찬양하는 문서가 속한다. 블랙리스트 지정은 반드시 공시되어야 한다.

(계속)

5) 독일 청소년유해문서 연방심의회위원회(1995)에서 발간한 「'95 연간 활동보고서」의 원본을 번역하여 일부내용을 재편집하였다.

②다음과 같은 문서는 블랙리스트에 지정되지 않는다.

1. 단지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세계관적 내용을 지니는 경우
2. 예술이나 학문, 연구나 학습지도에 기여한 경우
3. 서술방법에 이의가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저술되었을 경우

③이 법에서 말하는 문서란 음향물, 도화, 복사물 및 기타 표현물을 포함한다.

④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4세미만의 자를 말하며, 청소년이라 함은 14세이상 18세미만인 자를 뜻한다.

제6조 다음과 같은 문서는 블랙리스트에 지정·공시되지 않고서도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제반 제약요건에 해당한다.

1. 형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131조가 지정한 문서
2. 포르노그래피(형법 제184조)

제7조 정기간행물류는 3개월에서 12개월 기한부로 블랙리스트에 지정될 수 있다.

단, 12개월내에 그 간행물 중의 2호 이상이 블랙리스트에 지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일간신문이나 정치적인 간행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유해매체물의 종류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윤리적으로 유해한 내용을 게재한 문서들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야 한다.”

연방심의위원회의 결정과 확립된 판례에 의해 “윤리적으로 유해한”이라는 구성요건 표지가 해석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란,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회윤리적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매체를 말한다.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GjS) 제1조3항에 따라 이법에서 말하는 “문서”란 음향물, 도화, 복사물, 기타 표현물 등이다. 따라서 연방심의위원회가 오로지 인쇄물만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종류의 매체가 심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매체가 일정한 내용, 특정한 사고체계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난감은 원칙적으로 문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에 지정될 수 있는 유효한 매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도서, 문고판, 정기간행물, 잡지, 팜플렛, 광고선전물, 만화 기타 유사한

인쇄물

- 음반, 음향물, CD, 카세트테이프
- 컴퓨터게임
- 게임(특히 게임의 진행을 통해 나찌의 폭력행위를 찬미하거나 그것의 무해성을 주장하는 특정 서양장기와 같은 것)
- 영화자율감독위원회(FSK)로부터 관람허가표지를 얻지 못했거나 혹은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음” 표지가 붙어있는 비디오필름

따라서 연방심의위원회는 영화업계의 자율감독위원회로부터 “연령제한없음”, “6세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6세 이상 관람가”와 같은 표지를 부착한 비디오필름은 블랙리스트로 지정할 권한이 없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필름에 대해서는 해당필름이 영화자율감독위원회에 의해 심의된 바가 없거나 관람허가표지를 부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연방심의위원회에 의해 블랙리스트 지정심의를 받는다.

TV방영물에 대해서는 연방심의위원회가 관정권한이 없다. TV방송용 영화에 대해서는 방송국가조약 제3조가 규율하고 있다.

연방행정재판소는 정간물의 일정페이지만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해 왔다. 또한 연방심의위원회는 영화의 일부삭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허용한다면, 성인관람자가 삭제된 장면을 보는 기회조차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매체의 어떠한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인가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에게 윤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에 적합한 문서는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에는 비윤리적이거나, 야만적인 폭력·범죄·인종혐오를 부추기는 것, 전쟁을 찬미하는 것 등을 담고 있는 문서가 속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체의 종류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연방심의위

원회의 심의실무를 통해 항상 보충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블랙리스트 지정의 중점영역이 된다.

폭 력

연방심의위원회는 폭력묘사를 가장 많이 다루어 왔다. 연방심의위원회는 이 영역에서 주로 비디오필름과 컴퓨터게임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있다.

매체에서의 폭력묘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폭력을 대규모로, 또한 장황하게 묘사한 경우
- 폭력을 최고의 분쟁해결책이라고 선전하는 경우
- 법의 이름하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폭력사용을 전적으로 자명하고 통례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폭력이 법과 질서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 자칭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적 형벌권을 유일하고도 확실한 수단으로 묘사하는 경우
- 살인이나 도살을 자기목적적인 것으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경우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찬양, 인종혐오주의

소위 “제 3제국”의 국가사회주의 세계관을 찬양하는 것은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유해성을 지니는 유형의 범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일찍이 연방행정법원은 연방심의위원회가 그와 같은 매체를 통제하는 것을 인정하여 왔다. 헌법 적대적인 문서는 사회윤리를 혼란시키는 문서이다. 즉 극우적인 문서나 신나찌주의 문서는 청소년유해문서이다.

나찌이데올로기는 회고전 등의 도서나 음반물, 최근에는 컴퓨터게임의 방식으로 반포된다. 또한 나찌경향은 인종주의적 태도와 결합된다. 외국인 혐오는, 예컨대 “나찌수용소 관리인”이라는 컴퓨터게임에서와 같이 부추겨질 수 있는데, 그 컴퓨터게임은 강제수용소를 터키인으로 가득 채우고 나찌방식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나찌이데올로기 선전의 예>

- 나찌이념, 나찌의 인종론·권위주의적 영도자원칙·국민계도 프로그램·전

쟁준비·전쟁수행을 선전하는 경우

- 수많은 인명 살상, 제 3제국에서의 특히 유대인의 체계적인 멸종기도를 부정하는 경우
- 날조되고 불완전한 정보를 통해 나찌정권을 높게 평가하거나 명예회복을 시키는 경우, 특히 히틀러와 나찌당원을 귀감이 되는 것 혹은 비극적인 영웅으로 묘사한 경우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문서의 예>

- 특정인간을 어떠한 인종·국가·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등하거나 멸시받는 것으로 묘사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전쟁을 찬미하거나 전쟁의 해악성을 무해시하는 경우

전쟁을 찬양하는 묘사는 모든 종류의 매체에 존재한다.

- 전쟁을 매력적인 것이거나 명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 전쟁의 해악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전쟁을 찬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해하며, 따라서 살인·파괴·전쟁의 고통·재난을 경시하는 경우 언제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성윤리를 문란시키는 매체, 포르노그래피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매체는 포르노그래피, 즉 모든 다른 인간적 관점은 무시한 채 성행위만을 중점적으로 강렬하게 묘사하거나 혹은 매체의 객관적인 경향이 주로 성적 충동을 겨냥하고 자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매체가 포르노그래피는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윤리를 문란시키는 것이다. 즉 인간을 품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성적객체로 전락시키는 경우, 예컨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경우, 여성차별적 술책을 찬양하는 경우, 사디즘적 행동을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선전하는 경우, 그리고 강간을 쾌락을 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경우
- 아동포르노그래피, 수간, 그리고 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는 형법 제184조3항

에 의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포르노그래피를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형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성윤리를 교란시키는 내용을 지닌 매체중 인쇄물(정간물, 소책자)이 가장 빈번하게 연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도 연방심의위원회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것으로는 외설적인 컴퓨터 게임이 상당수 있다. 외설적인 비디오필름은 반면 아주 드물게 심의대상에 올려졌는데, 왜냐하면 그런 비디오 필름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별 상점들에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명백히 금지되는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매체가 청소년에게 중대한 유해성을 지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중대한 유해성을 지니는 경우이다.

- 인종혐오적인 것
- 유대인 대학살을 부인하는 매체
- 폭력을 찬미하거나
- 폭력의 유해성을 무시하거나
-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묘사하고 있는 경우
- 외설적인 매체
- 예컨대 마약사용을 선동하거나 마약사용의 해악을 무시하는 경우와 같이
기타 명백히 청소년에게 유해성을 미치는 매체

청소년에게 중대한 유해성을 지니는 매체는 법률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지정된다. 따라서 연방심의위원회의 지정이 없어도 그러한 매체의 판매, 반포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판매과정에서의 불투명을 제거하기 위해 연방심의위원회는 유해도가 높은 청소년유해문서들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관보에 게재 · 공시한다.

□ 유해매체물지정의 예외사항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해서 모든 매체가 곧바로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은 지정심의시 유의해야할 예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비록 청소년에게 유해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사회적·종교적·세계관적인 내용만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지정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이유에 의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지정된다.

헌법 적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매체는 위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유해성이 단지 정치적 주장으로부터 생긴 경우 - 무엇보다도 신나찌주의적 선전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 블랙리스트로 지정된다.

기타 예술·학문·연구·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청소년보호에 우선할 수 있다.

최고법원은 여러 차례 예술과 청소년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변경하였다. 현재 예술과 청소년보호와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명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Mutzenbacher 판결(1990.11.2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은 자유로운 창작의 산물이며, 여기에는 예술가의 인상, 경험, 상상력이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예술가의 개인적인 인격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예술의 자유의 범위안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예컨대 폭력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지니는 성을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예술가 스스로 선택한 묘사방식에 따라 가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청소년보호보다 예술에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가 심각해서 예술의 자유를 그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후면에 두어야 할 것인가는 이 두 법익의 형량문제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예술에 있어서는 작품에 적합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그 때 예술가의 창작의도, 작품의 전체적 구상, 그리고 그것의 개별적인 형상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작품에 적합한 해석이외에도 예술작품이 실제 가저을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는 성인이 이해하는 바와는 달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의 예술성에 우위를 둔다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더라도 블랙리스트로 지정할 수 없다. 반면 유해성의 정도가 보다 우위에 있다면, 예술작품이더라도 블랙리스트로 지정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학문, 연구, 교육에 기여하는 것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2차대전의 원인을 잘못 서술하거나, 특히 나찌전범들을 찬양하거나 해악을 과소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일삼는 작가들은 이러한 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문, 연구, 교육에 기여하는 매체란 자세한 관찰을 시도하고, 사실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매체를 말한다.

공공의 이익은 블랙리스트 지정보다 우선할 수 있다. 예컨대 대중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실에 대한 것을 다루거나 혹은 일반인이 범죄행위의 보도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보도의 형태로 행해지는 묘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블랙리스트 심의·결정 절차

제11조 ①연방심의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연방심의위원회는 신청에 의해 활동을 개시한다.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 장관은 연방참의회의 동의를 얻은 조례를 통하여 신청권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해당 매체의 출판업자와 저자에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부여된다.

제13조 제9조제3항의 경우 블랙리스트 지정을 명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찬성, 적어도 심의에 참여한 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4조 ①연방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다음의 각처에 송달되어야 한다.

1.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 장관
2. 각 주정부
3. 가능한 경우 해당 매체의 출판업자 및 그 저자
4. 지정신청절차에 참여한 각 부서, 단체 및 인사

②결정이유가 첨부되어 직접 전달되거나 혹은 1주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계속)

제15조 ①연방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즉 해당문서가 블랙리스트에 지정될 것이 명백하고 또한 해당문서가 단시일에 대량판매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문서를 블랙리스트에 지정할 것을 잠정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②잠정적 긴급결정은 위원장 1인과 2인의 다른 배석위원에 의해 만장일치로 내려진다. 단, 2인 배석위원중 1인은 반드시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업계대표이어야 한다.

③잠정적 긴급심의결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

1. 그 잠정결정의 공시이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해당문서에 대해 연방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이 공표되었을 때
제1호의 경우, 그 잠정결정의 기한은 만기전 최장 1개월동안 연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 연장은 공표되어야 한다.

제15조의a ①연방심의위원회는 제1조의 요건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간이절차를 통하여 해당문서를 블랙리스트에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그 결정은 1명의 위원장과 두 명의 위원에 의해 만장일치로 내려지며, 이 경우 두 명의 위원중 한 명은 제9호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 언급된 단체에 속해야 한다. 해당문서를 블랙리스트에 지정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통하여 연방전체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제7조에 따른 명령은 간이절차에 의해 내려질 수 없다.

④간이절차에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당사자들은 송달받은 지 1개월 이내에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정식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유해매체물의 지정신청

청소년유해문서 연방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활동한다. 물론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심의신청의 권한이 있는 자는 주정부 최고 청소년 주무부서, 주정부 산하 각급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주무부서, 그리고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장관이다. 통독이후 심의신청권한이 있는 관청은 전체 800개 이상에 달한다.

음반, 영상물, 복사물 기타 표현물은 똑같이 문서로 간주된다.

따라서 비디오, 영화, 게임, 컴퓨터게임, 라디오극, 레코드, CD, 더 나아가 CD의 표지판까지도 블랙리스트의 지정대상이 된다. 물론 극장용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의 상영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만 블랙리스트의 지정신청

이 이루어진다.

비디오용 영화도 유사한 제한을 받는다. 즉 비디오용 영화는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에 의해서 “18세 이하 관람불가” 판정을 받거나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의 어떤 상영허가도 받지 못한 때에 한하여 청소년 유해문서 연방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신청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심사대상에 관한 표시(책/만화/비디오용 영화 등)
 - 잡지의 경우, 호수와 연도
 - 책의 경우, 출판번호
 - 컴퓨터게임의 경우, 이름과 시스템(Amiga, SEGA 등)
- 저자의 이름
- 출판사, 판매, 대여 또는 제조회사의 이름 및 소재지(가능하면)
- 취득일시 및 장소 또는 어떻게 해당매체를 청소년 주무부서가 소유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판매가격 혹은 대여가격
- 만약 가능하다면 대상물의 크기(쪽수, 영화의 길이, 컴퓨터게임의 경우 - 등급구분)

신청시 해당매체물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비디오나 컴퓨터게임의 경우 그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출연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제목자막 뿐만 아니라 앞과 뒤의 광고도 포함되어야 한다. 컴퓨터 게임의 경우, 가능한 한 완전한 복사본임을 요하며, ‘핸드북’이나 지침서를 첨부하게 되면, 청소년 유해문서 연방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광고내용이나 영상의 경우 복사본이라도 첨부하게 되면, 배석위원들에게 종종 큰 도움이 된다.

신청시 핵심적인 사항은 간단한 내용진술과 신청하게 된 이유제시이다.

신청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수록

되어 있는 해당 영상이나 원본 혹은 서술의 정도 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물론 해당매체를 전체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예컨대 마약소비/전쟁찬양/민족차별을 찬양하거나 무해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 등) 이러한 정황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제시는 “지정신청의 당사자”가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해당매체가 청소년 유해문서 반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인가에 대한 근거는 궁극적으로 연방심의위원회가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방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한 근거를 감정을 통해 제시한다.

□ 12인 위원회에서의 정식심의 절차

제출된 심사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12인 위원회에서 내린다. 이 위원회는 연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8인의 관련단체추천배석위원, 3인의 주정부대표배석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련단체추천배석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추천을 할 수 있는 관련 단체는,

- 예술계
- 문학계
- 서점상연합회
- 출판협회
- 사설 청소년보호단체
- 공공 청소년복지기관
- 교육자단체
- 종교계 등이다.

주정부대표배석위원은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위원장과 각 배석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배석위원이나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연방심의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9인 이상이고, 9인 중 적어도 2인이 예술계, 문학계, 서점상연합회 혹은 출판업계가 추천한 배석위원이어야 한다.

12인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연방심의위원회에서 개최된다. 위에 열거한 단체로부터 각각 여러 배석위원, 즉 1인의 주배석위원과 부배석위원이 추천된다. 이 추천에 의해 연방심의위원회는 매월 번갈아 개최되는 2개의 12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외에도 배석위원은 누구나 특정회의시 자신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회의의 성립 정족수는 9인이상이다.

심의객체인 매체의 블랙리스트지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다. 블랙리스트로 지정의결하기 위해서는, 11~12인이 출석한 경우는 8인, 10인이 출석한 경우는 7인이 찬성해야 한다. 단지 9인만이 출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6인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해야 할 것이나, 연방의회는 더 넓은 지지기반을 얻기 위해 이 경우 7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블랙리스트지정이 부결된다.

블랙리스트지정결정은 소송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위원장과 배석위원은 명령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연방심의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구두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의절차의 이해관계인도 물론 회의참가권이 있다. 더 나아가 위원장은 그외 사람들의 방청도 허가할 수 있다.

회의에 앞서 이해관계인 —예컨대 소설·정기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업자, 비디오필름의 제조자·판매업자—은 그들의 매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의 여부에 따라 연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심의의 이해관계인은 소송절차에서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연방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할 수 있다.

매체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정 이외에도 12인 위원회는 블랙리스트지정으로부터 삭제할 것을 의결할 수도 있는데,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유해성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해가 경미하다는 것은, 해당매체의 반포지역이 좁거나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2인 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장래 12개월 동안 블랙리스트지정

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정기간행물이 과거 12개월 동안 2번이상 블랙리스트에 지정되었을 때에 행해진다. 다만 일간신문은 사전에 블랙리스트지정을 할 수 없다. 연방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는 무료이다.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은 심의관계자의 비용전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3인 위원회에서의 긴급심의 절차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은 명백히 청소년 유해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이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3인 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지정결정을 하게 된다. 3인 위원회는 연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2인의 배석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인의 배석위원은 예술계, 문학계, 서적상 연합회, 혹은 출판협회 대표 배석위원이어야 한다.

3인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3인 위원회는 매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거나,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12인 위원회에 결정을 회부한다. 3인 위원회는 해당매체가 청소년유해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매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다. 즉 블랙리스트지정거부는 단지 12인 위원회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3인 위원회는 유해성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블랙리스트지정으로부터 해제하자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3인 위원회나 12인 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지정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연방법무장관에 의해 간행되는 연방관보에 고시되어야 한다. 연방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연방관보에 블랙리스트 지정결정을 게재한다.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연방심의위원회는 3개월마다 BPjS-Aktuell(연방심의위원회의 간행물)을 발간한다. 여기에는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모든 비디오필름, 컴퓨터게임, 음반물 등의 목록 및 형법 제131조에서 말하는 폭력행위물과 형법 184조 3항에서 말하는 포르노그래피의 압수/몰수 목록을 수록한다.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인쇄물은 BPjS-Aktuell에 계속 게재된다.

더 나아가 BPjS-Aktuell은 청소년매체보호를 위해 편집자의 긴급공시란을 두

고 있다.

BPjS-Aktuell의 전 내용이 발간되지 않는 달 동안(BPjS-Aktuell은 3개월마다 출간되므로) 연방심의위원회는 그 달에 새로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목록에 대한 정보를 인쇄물의 형태로 제공한다.

□ 기타 심의유형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8의a조는 직권으로, 즉 청소년부서의 신청없이 심의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것과 전체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동일시되는 매체의 경우 흔히 행해진다. 예컨대 어떤 비디오필름의 판권이 다른 회사로 매각되면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필름이 새로운 회사의 명의로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된다.

연방심의위원회는 이 필름을 내용이 동일하므로 블랙리스트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심의신청이 심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3) 블랙리스트 공시

제16조 블랙리스트는 연방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관리된다.

제17조 블랙리스트 지정이 명령된 해당문서는 블랙리스트에 즉시 지정되어야 한다.

그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15조제3항제1호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서 즉시 해당문서를 삭제해야 한다.

제18조 ①법원 판결에 의해 해당 문서가 포르노그래피이거나 혹은 형법 제130조제2항과 제131조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확정된 경우, 연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 판결 또는 법적 결정과 함께 해당문서를 블랙리스트에 지정한다. 이 때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여하한 지정신청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12조가 준용된다.

②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블랙리스트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해당문서에 대한 반대되는 법원의 판결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위원장은 연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내린다.

제18조의a ①해당문서가 블랙리스트에 지정되어 있는 문서나 전체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연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 문서를 블랙리스트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여하한 심의지정신청절차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12조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속)

②제1항제1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가 의심스럽다면, 위원장이 연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9조 ①해당 매체가 블랙리스트에 지정되거나 혹은 삭제된 경우, 이 사실은 해당 결정과 함께 연방 각 지역내에 공시되어야 한다.

②연방 각 지역에 대한 공시는 연방관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블랙리스트 지정결정은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행위이다. 다시 말해 블랙리스트에 지정된 매체는 앞으로 청소년유해문서의 목록에 계속 수록된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법적 구속력있는 판결로 블랙리스트 지정이 부당하다고 결정하면, 연방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해당매체를 블랙리스트 목록으로부터 삭제하고, 이것을 연방관보에 공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해관계인은 목록삭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방심의위원회는 기속재량에 따라 이러한 심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은 명백히 청소년유해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이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3인 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지정결정을 하게 된다. 3인 위원회는 연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2인의 배석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인의 배석위원은 예술계, 문학계, 서적상 연합회, 혹은 출판협회 대표 배석위원이어야 한다.

(4) 블랙리스트 유통제한

제3조 ①블랙리스트에 지정된 사실이 공시된 문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허용될 수 없다.

1.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양도 혹은 입수하게 만드는 행위
2.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전시, 게시, 진열하거나 입수할 수 있게 하는 행위
3. 영업적인 대여나 혹은 이와 비슷한 영업적인 행위에 의해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또는 양도하는 행위. 단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거나 그들이 볼 수 없는 상점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② 영업목적으로 대여하는 자에 의한 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

제4조 ①블랙리스트에 지정된 사실이 공시된 문서에 대하여는, 다음의 장소에서 판매, 반포, 대여하거나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없다.

1. 정식 점포이외의 소매점
2. 간이점포(가판대 및 편의점)나 기타 고객의 출입이 잦지 아니한 점포
3. 통신판매
4. 도서대여점, 독서실

②출판업자와 중간도매상들은 그러한 유해문서를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 단, 이들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를 하거나 업주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에게 유해매체를 인도할 경우, 출판업자, 중간도매상 및 알선자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만 그러한 문서를 유통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구매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제반 판매제한을 고지해야 한다.

③블랙리스트에 지정된 사실이 공시된 문서는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안에 유입될 수 없다.

제5조 ①상업광고시 당해 매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절차가 계류중이거나 혹은 과거에 계류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다.

②블랙리스트에 지정된 사실이 공시된 문서는 공공연하게 혹은 반포를 통해 제공, 광고, 찬양될 수 없다.

③제2항은 문제된 교역을 하는 거래나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거래에는 유효하지 않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지정되고 지정사실이 연방관보에 공시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그것의 판매·제시·반포 및 광고가 규제된다. 이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위반시에는 벌금형 혹은 자유형이 부과된다.

□ 블랙리스트 지정문서의 청소년접근금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문서를 제공, 양도, 접근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접근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란 함”은 상위개념으로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도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매체의 내용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경우 미성년자에게 해당매체를 직접 제공 하는 것이나 혹은 간접적으로 입수가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비디오 필름을 VTR에 넣어 두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앞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도서를 읽는 것도 미성년자가 해당매체에 접근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공이나 양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지정된 매체를 직접 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친권과 청소년보호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친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므로 교육할 권한이 있는 자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매체를 자녀가 접근가능한 상태에 두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 점은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 제21조4항에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가진 자가 교육권한이 있는 자인데, 일차적으로 부모가 그러한 권한을 지닌다.

남용의 경우(예컨대 어린이 포르노그래피를 접근할 수 있게 한 경우), 만약 남용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안녕이 심히 침해되었다면 청소년 주무부서가 개입한다. 그 결과 민법 제1066조에 따라 후견법원에 의해 친권을 제한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기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은 금지된다

영업소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매체를 취급하는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이 접근가능하거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그 매체를 전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즉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대중매체는 단지 “판매대 뒤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매체가 “영업적으로 (예컨대 비디오대여 등) 대여”되는 경우, 그와 같은 매체가 제공되거나 대여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고객에게 대여하는 블랙리스트에 지정된 매체는 소위 판매업소 안에서만 전시되고 제공된다.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대중매체가 전시되거나 제공되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상점은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유해매체물의 판매가 허용된 판매업소는 독립된 외부입구를 갖고 있고 공간적으로나 조직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매상점으로서 여기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공의 교통통로로부터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
- 분리된 외부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다.
- 해당상점에만 소속된, 상점고유의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 고객의 물건선택에서 판매·대여료의 지불에 이르기까지 전 영업과정이 상점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비디오는 가족용 비디오상점에서 진열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소위 ‘상점내 상점(shop in the shop)’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점내 상점’은 비디오점 공간에 붙어 있는 일부인데, 거기서는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필름과 관람허가연령표시가 없는 필름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상점 일부를 분리하지 않은 채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판매업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금지된다. 미성년자가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러한 분리된 공간에 독자적인 현금계산대가 있다하더라도 “상점내 상점”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아동이나 청소년은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로부터 이 공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매체는 백화점에서도 진열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은 백화점내에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것을 취급하는 비디오 스텝을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디오점에 대한 출입이 판매에서 말하는 공공교통로가 아니라 백화점내의 영업장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상점내 상점’방식과 똑같은 것이다.

반면 상점로나 쇼핑중심지안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비디오상점을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 왜냐하면 판매업소 앞에 있는 통로가 공공교통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판매업소는 외부에서 내부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어야 한다. 내부식별가능성 여부를 다른 여러 개의 판결이 있다. 예컨대 출입문이 땅위 20센티미터 위까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한다. 땅과

출입문사이의 그 정도의 빈 공간은 내부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언제나 법원의 논쟁대상이 되었다. 즉 비디오점의 출입문이 출입시 열려지는 경우, 상점의 내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식별가능성은 부정되었는데, 왜냐하면 구체적인 경우에 입구에는 외부통로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 진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반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용 비디오점에 갈 수 없다. 부모가 아이의 동반을 고집할 때에는 비디오점측으로서는 난감하게 된다. 그러나, 위반한 업소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반복된 법률위반시에는 영업허가정지를 염려해야 할 것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는 별로 없게 된다. 즉 미성년자는 소위 성인용 비디오점에 부모와 동반하더라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이에 반해 일반인의 출입이 허가되는 가족용 비디오점의 경우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다.

☐ 통신판매나 가판대에서의 판매금지

이 법 제4조는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매체에 대한 일련의 영업제한을 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매체는 아래의 장소에서는 제공, 판매, 대여, 혹은 보관할 수 없다.

- 상업지역외의 소매점
- 가판대나 고객의 출입이 잦지 아니한 기타상점
- 통신판매
- 도서대여점 혹은 독서실

통신판매는 고객의 연령을 잘 조사할 수 없으므로 금지된다. 주문용지에 18세라고 기재한 자가 이러한 나이에 달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업자나 중개상인도 위에 열거한 사업체의 소유주에게 해당매체를 공급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 출판업자, 중개업자 혹은 수입상인은 매수한 자에게 해당매체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상품이라는 것을 통지할 의무를 진다.

☐ 광고행위 금지

이 법 제5조는 두 가지 유형의 광고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매체는 일반인에게 광고해서는 안된다. 단 성인에 한해서만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 내에서의 광고는 가능하다.
-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광고해서는 안되며, 특히 지정절차가 계류중이라거나 혹은 과거에 계류되었다는 사실을 광고해서도 안된다. 해당매체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그 자체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광고를 포함해서 모든 광고형태가 금지된다.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매체의 제목만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 판매·반포·광고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이 규정의 위반행위에는 벌금형이나 1년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된다. 고의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위도 형사처벌된다. 고의적인 행위란 자신이 법률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이란 자신이 반포한 매체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었거나 중대한 청소년유해매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형사소추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을 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매체를 입수가능하게 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양육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권리는 남용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제한된다.

(5) 블랙리스트 심의기관

☐ 청소년유해문서 연방심의위원회 (BPJS)

제8조 ①이 법에서 정한 제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심의위원회를 설립한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동의를 받아 조례를 통해 연방심의위원회의 소속을 정한다.

(계속)

③연방심의위원회의 설립 및 심의절차에 드는 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제9조 ①연방심의위원회는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각 주정부가 임명하는 배석위원,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 장관이 임명하는 배석위원들로 구성된다.

②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 장관이 임명하는 관련단체대표 배석위원은 다음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1. 예술계
2. 문학계
3. 서점상 연합회
4. 출판협회
5. 일반 청소년단체
6. 공공 청소년 복지기관
7. 교사연합
8. 교회, 유대인 문화단체 및 기타 공적 단체의 성격을 띠는 종교단체

③연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정부 배석위원 3인, 제2항에 명시된 단체대표 8인으로 구성되는 12인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회의에 소집된 배석위원이나 그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연방심의위원회는 최소한 9인의 참석으로 심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최소한 2인은 각 단체중 업계를 대표하는 예술계, 문학계, 서적상 연합회, 출판협회가 추천한 배석위원이어야 한다.

④위원장과 배석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그들이 연방심의위원회에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기전이라도 그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9조의a ①다음의 각 단체는 이하의 추천원칙에 따라, 제9조제2항에 의거해서 각 각 1인의 배석위원과 그 대리인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

1. 예술분야에서는
 - 독일 문화부 - 독일 예술교육협회조합
 - 예술가협회 - 독일연방 그래픽 -디자이너 조합
2. 문학 분야에서는
 - 독일 저작가협회 - 독일 자유기고가협회
 - 독일 작가협회조합 - 펜클럽 본부
3. 서적거래 분야에서는
 - 독일 서점증권협회 - 독일 驛서점상협회 조합
 - 독일 서적·신문·잡지협회 연방조합 - 독일 비디오점협회(IVD)
4. 출판 분야에서는
 - 독일 신문출판협회 연방조합
 - 독일 잡지출판협회조합
 - 독일 서점증권협회 및 출판사위원회
 - 독일 서점증권협회 산하 잡지출판노동단체

(계속)

- 독일 연방 비디오협회 산하 잠지출판노동단체
- 5. 민간 청소년보호 분야에서는
 - 민간복지후생사업 연방노동단체 - 독일 연방청소년연합
 - 독일 청소년체육회 - 연방 청소년보호노동단체
- 6. 공공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 독일 지방의회 - 독일 시의회 - 독일 시 및 구 연합
- 7. 교직 분야에서는
 - 독일 노동조합연맹 산하 교육 및 학술노동조합,
 - 독일 교원조합 - 교육협회 - 독일 가톨릭 여교사협회
- 8. 제9조제2항제8호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단체 분야에서는
 - 독일연방공화국내의 독일복음교회(EKD) 고문
 - 본 소재 독일 주교 - 가톨릭 사무소 - 독일 유대인중앙본부

추천권을 행사하는 각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1명씩의 배석위원과 대리배석위원이 임명된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 중 어떤 기관이 복수추천을 한 경우에는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 장관이 이 중 한 사람의 배석위원을 임명한다.

②배석위원과 대리배석위원은 제9조제2항에 명시된 단체들중 어느 하나에 의해 특정되지 않은 형태로도 추천될 수 있다.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 장관은 매년 1월 관보를 통해 6주간의 기간을 두고 이와 관련된 추천을 할 것을 요청한다. 장관은 법정기간내에 도착된 추천 가운데에서 각 단체마다 각각1명의 배석위원과 대리배석위원을 부가적으로 임명한다. 고유한 단체로 인정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조직의 추천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명을 추천한 경우, 그 추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첨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1항제3문이 준용된다. 연방심의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특정기관내에서의 추천이 수적으로 부족한 경우,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 장관은 다수의 배석위원과 대리배석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겐 제5문이 준용된다.

제10조 연방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정부 등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다.

☐ 불복에 대한 법적 보호절차

제20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예심을 통한 제심은 필요하지 않다. 제소는 유예하는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연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제소는 연방심의 위원회에 의해 대표되는 연방에 대한 것이다.

연방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

연방심의위원회는 자체예산권을 가진 연방상급행정관청이다. 이 위원회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BMFSFJ)장관하에 소속된다.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GjS) 제10조는 “연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떠한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명예직 : 배석직은 특별한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다. 여비와 경비만 지급된다.
- 독립성 : 위원장과 배석위원은 단지 법률에만 구속된다.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 중립성 : 중립성은 배석위원과 위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양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출판업자, 저자 등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기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위원장과 배석위원은 중립적으로 이해관계인을 대면하지 않고 학식과 양심에 따라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방심의위원회의 직무

- 청소년장관이나 청소년주무관청의 심의신청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
- 가치지향적인 매체육성을 촉진
- 해당사업체의 자율적 통제
- 청소년보호매체의 문제점에 관해 대중의 문제의식화

심의 소위원회

연방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번갈아 개최되는 12인 소위원회나 간소화된 3인의 소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판정을 한다.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심의위원회에 소속된 판정위원회는 전문지식과 사회대표성을 지닌다.

블랙리스트에 지정하는 절차에서 다원주의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 영향을 미친다. 회의는 비공개되지만, 위원장은 기타 사람들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지정은 검열이 아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 해서 해당매체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아동이나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문서 반포에 관한 법률(GjS) 제3조 내지 제5조는 본질적으로 금지로서가 아니라 제한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성인은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에 지정된 매체를 구입할 수 있다.

연방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행정행위이다

12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소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보호의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3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즉 12인 위원회의 결정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송절차의 길을 밟을 수 있다.

불복에 대한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다.

-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쾰른에 소재한 행정재판소에 제기한다.
- 행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뮌스터에 소재한 항소법원에서 이루어진다.
-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는 연방행정재판소(소재지: 베를린)에서 이루어진다.
-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은 연방헌법재판소(소재지: 칼스루에)에서 이루어진다.

해당매체의 압수와 몰수는 연방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압수와 몰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은 검찰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압수 및 몰수결정을 받을 수 있다. 압수와 몰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독일 형법 제 131조이거나 혹은 제184조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매체의 압수와 몰수가 가장 중요한 경우에 속한다.

형법 제131조의 규정은 폭력을 찬양하거나 폭력이 무해한 것이라 주장하는 대

중매체의 묘사, 특히 인명경시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표현하는 대중매체의 서술방식에 관한 것이다.

형법 제184조는 가학성애(사디스트적)와 계간을 내용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131조 또는 제184조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대중매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들의 반포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이들 매체들이 시장에 나타나면, 모두 압수 또는 몰수된다.

3) 영화자율감독위원회(FSK)의 영상물 규제

(1) 설치근거

영화자율감독위원회는 2차대전 후인 1949년에 영화계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은 점령기 군정당국의 검열을 나찌와는 무관한 일반인에 의해 대체하려는 데에 있었다(당시 우선시된 것은 아직 청소년보호는 아니었고 오히려 영화를 통해서 국가사회주의사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점령국들의 우려가 중시되었다). 얼마후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 따른 심사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이 통과되기보다 몇 년 앞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여하튼 영화자율감독위원회는 다른 연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영화를 상영할 기술적 장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비용이 들지 않았다. 주정부 청소년 주무부서는 -법률에 의하면 영화심사의 권한을 갖는 기관은 바로 주정부인데- 주협정에 의해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의 심사결정을 계속해서 수용하였다.

영화자율감독위원회에 의한 심사가 가능한 넓은 지지기반을 갖기 위해 기본위원회(Grundsatzkommission)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영화계와 주정부 청소년 주무부서의 대표외에 교회, 연방내무성 및 연방정부 청소년 주무부서의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발전된 'FSK-원칙'은 심사절차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도 규율한다.

☐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법

심사의 법적 근거는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법’ (JÖSchG)이다. 이 법 제6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는 공공장소에서의 영화관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성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사없이 모든 영화의 관람이 자유롭다. 공공장소에서의 영화관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주정부 청소년 주무부서에 의해 청소년관람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청소년에게 허용된다.

연령의 분류는 법률에 의해 아래와 같이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 연령제한없이 관람가능
- 6세 이상 관람가능
- 12세 이상 관람가능
- 16세 이상 관람가능
- 18세 이하 관람불가

1985년 2월 1일 이후 이에 상응하는 규제가 비디오용 영화에 대해서도 도입되었다. 이 법 제7조에 따르면 영화가 수록된 비디오카세트 또는 이에 준하는 영상물(예컨대 레이저디스크)은, 주정부 청소년 주무부서로부터 상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극장용 영화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등급분류가 비디오용 영화에도 적용된다.

(2) 조직과 기능

주협정에 따르면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인 동 위원회의 심사판정은 감정인에 의한 결정으로 평가되는데, 이 위원회는 주정부 청소년 주무부서 상설대표의 서명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상영허가를 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별 주들이 영화자율심의위원회의 결정실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신들의 관할영역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정을 내리고 관철시킬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 심사기준

관련 법률에는 몇몇의 일반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일반조항의 목적은 해

당영화가 관람이 허용되는 연령층에 대해 유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런 일반조항들은 근본원칙에 의해 서로 세분화된다.

심사기준으로 기여하는 것으로서는 발달심리학, 대중매체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연구성과등을 들 수 있다. 실제적인 심사를 학문적인 연구결과에 맞추려는 여러 시도가 있지만 아직도 재량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 외에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은 청소년들과 함께 영화시사회를 개최하는데, 논란이 되는 상영허가를 관련자들과 논의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아가 다른 유럽국가들의 영화심사기관과도 집중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 전문위원회

영화는 우선 7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해 감정된다. 즉 주정부 청소년 주무부서의 상근대표(위원장), 청소년보호 전문가(주정부 청소년 주무부서에 의해 직접 지명되며 상근직이 아니다), 2인의 공공단체 대표(교회, 연방 청소년연합 등으로부터 추천된다), 그리고 3인의 영화 및 비디오산업 대표로 구성된다. 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산업의 대표들은 영화나 비디오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상영허가는 다수결에 의해 부여된다(영화 및 비디오계의 대표는 3인에 불과함으로 언제나 공공단체측의 대표 1인이 상영허가에 찬성하여야 한다). 영화계에서 지명된 위원을 포함하여 'FSK원칙'에 따라 청소년보호에 대해 책임을 진다.

□ 항소위원회

신청인(대여점, 판매점)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본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결시 소수의견을 취한 전문가위원회 위원(적어도 2인)도 항소를 청구할 수 있다. 기본위원회는 공공단체와 영화계로부터 각각 대표 1인씩이 더 추가한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원칙위원회의 공공단체 대표와 연방 비디오연합 대표와 협조하여 영화계의 중앙부서에 의해 선임된다. 즉 상설대표는 투표권없는 고문위원이다.

주정부 청소년 주무부서가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에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영화계 및 비디오계의 중앙부서도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되면 항소위원회는 회합을 갖게 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으로서 법률가 1인, 청소년보호에 관하여 특히 정통한 자 2인 그리고 주정부 청소년 주무부서에 의해 지명된 심사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 삭제명령

제출된 영화에 대한 상영허가는 원칙적으로 원본 전체에 대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화사는 보다 유리한 상영허가판정을 받는 것을 원한다. 만약 유리한 상영허가판정이 몇몇의 장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 즉 원본에 대해 불리한 상영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상응하는 장면을 삭제하여 유리한 상영허가를 받든지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그 영화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 성인에 대한 상영허가

성인관람가의 영화는 어떤 영화도 영화자율감독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영화는 내용과 무관하게 성인만이 관람하게 된다.

청소년에 대한 상영허가가 영화자율감독위원회의 주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18세 이하 관람불가” 판정이 SPIO에 의해 선임된 위원들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다. 최종심사결과는 삭제결정과 연계되어서는 아니된다. 영화계는 스스로 ‘18세 이상 관람가’라는 판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는데(영화자율감독위원회 원칙 제2조), 그렇게 함으로써 극단적인 폭력이나 성애묘사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가 영화자율감독위원회의 판정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판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영화는 이 판정없이도 상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극장용 영화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은 대부분 극장용 영화를 영화자율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한다. 비디오 프로그램 판매업자도 ‘18세 이상 관람가’라는 판정을 중시하게 된다.

□ 심사 제외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모든 영화와 영상물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예컨대 강의영화)는, 그것이 영리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나아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일련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예컨대 스포츠, 취미 그리고 뮤직비디오), 원칙적으로 이러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심사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의심할 여지없이 청소년 관람허가를 얻을 수 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상설대표에 의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간이절차).

□ 심의결정의 법적 효과

모든 극장용 영화는 각각의 복사본에 대해서 모두 상영허가증을 받게 되는데, 이 허가증은 치안당국의 검사시 극장 대표소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극장 소유주는 관람가능한 연령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게 대표소에 공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여 관람가능한 연령에 달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해야 할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의 의무가 비디오 프로그램제공자에 의해 진품표시만 부착된 비디오 카세트의 판매에도 적용된다. 청소년 관람허가증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심사를 받지 않은 비디오용 영화에 대해서는 통신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3) 다른 심의기구와의 유기적 관계

□ 청소년유해문서 연방심의위원회와의 관계

영화자율감독위원회는 극장용 영화, 특히 비디오용 영화, 그리고 이에 준하는 영상물만을 관할하는 비정부기관인 반면, 연방심의위원회는 연방기관으로서 다른 대중매체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그러나 이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두 부서간에는 독립된 업무영역 뿐만 아니라 연결된 업무도 있다. 개별 주들이 연방심의위원회의 12인 위원회에 파견하는 일부 심사위원들은 동시에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다. 두 부서간의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연방심의위원회를 해당 영화가 청소년

주무부서(즉, 영화자율감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만 블랙리스트 판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비디오카세트는,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의 청소년에 대한 상영허가를 얻은 때에만, 즉 16세미만 관람가의 판정을 받았을 때에만 연방심의위원회의 심사로부터 제외된다. 만약 비디오카세트가 “18세이하 관람불가”라는 판정을 받거나 아예 심사조차 받지 아니했다면 그 비디오카세트는 연방심의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관한법률(GjS)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지정될 수 있다.

극장용 영화와 비디오용 영화를 서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 비디오업계는 항의하였다. 그러나 비디오업계에 의해 제기된 헌법소원은 기각되었다. 차별적인 대우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대우는 전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극장용 영화가 “18세 이하 관람불가”라는 판정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할 때- 극장측의 금지로 인해 청소년은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극장출입의 통제에 대한 권한은 경찰청과 치안당국이 갖는다.

비디오용 영화의 경우, 청소년은 자신에게 관람이 허용되지 않은 영화를 사거나 대여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극장용 영화와는 반대로 18세 이상의 제 3자를 통해 비디오용 영화와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에 의해 “18세 이하 관람불가”판정을 받은 영화를 아동과 청소년에게 대여하는 것은 질서위반범이 된다. 또한 청소년 유해문서 연방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지정된 비디오카세트를 미성년자에게 상영하는 행위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방송자율심의위원회와의 관계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은 극장용 영화와 비디오용 영화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지만, 이들에 의한 영화의 상영허가는 간접적으로 텔레비전에서의 영화방영에도 적용된다. 독일에서의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라디오에관한계약 제3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시간이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의 상영허가와 연계되어 있다. 즉 극장이나 비디오영업에 대해 “18세 이하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23시 이후에야 비로소 텔레비전에서의 방영이 허용된

다. 16세 이상 관람가의 판정을 받은 영화는 22시 이후에야 비로소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수 있다.

12세 또는 16세 이상인 자의 관람이 허용되거나 연령제한없이 관람되었던 영화들에 대해서는 지정된 텔레비전 방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아무런 제한없이 방송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동 계약 제3조제2항제2문).

이러한 방송시간 규제외에도 또한 폭력을 찬양하고 포르노그라피를 담은 프로그램(형법 제131조 이하 또는 제184조)을 방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비디오관으로 블랙리스트에 지정된 프로그램이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디오에 관한 계약에 따라 23시 이후에 방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동 계약 제3조제3항제1문).

라디오에 관한 계약에서 취해진 이러한 규제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권한은 모든 주에 있는 주 방송협회(Landesmedienanstalten)가 갖는다. 이 기관은 방송국을 인가하고, 프로그램제작에 있어서 라디오에 관한 계약이 준수되었는가를 감독하고, - 예컨대 방송시간과 영화계의 자율감독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 특정 규율내용을 세분화하거나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중대한 위반의 경우 해당 주 방송협회는 최후수단으로서 방송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법률적 대안

개방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이다¹⁾.

동 법률의 제정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장에서는 동법률 조문·해설·유사업법례 등을 수록하였다.

1. 청소년보호법의 개관

1) 청소년보호법의 주요특징

☐ 청소년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음란·폭력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행위에 대한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되 이밖에 청소년유해업소와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유해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본법률로서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타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청소년대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유해매체물과 약물에 대한 규제법률 기존의 매체물과 약물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매체물 및 신종약물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대상의 유통규제가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1)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3월에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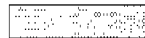
□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기존의 법률체계를 인정하는 법률

보호대상을 18세미만자로 함으로써 향후 청소년보호관련 입법추진시 대표적인 청소년연령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법률과의 상호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기존 매체물심의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률

각종 매체물의 제작과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고, 단지 “청소년 대상”의 “유통”만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동법률의 적용영역을 쉽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매체물제작·생산	성인대상유통
	청소년대상유통

 : 동법률의 적용영역

□ 매체물사전심의제도 위헌결정에 대체기능으로서의 법률

최근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으로 각종 매체물심의가 사전심의에서 사전등급심의 또는 사후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각종 형태의 음란·폭력매체물이 광범위하게 사회전반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입은 매체물의 제작, 발표이후 “유통단계에서의 개입”이 헌법상 문제를 해결하는 규제방식이다. 따라서, 동법률은 이와 같이 향후에 예상되는 “매체물의 사후심의 원칙”과 “청소년대상 유통규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법률로서 성안되었다.

□ 민간의 자율규제에 중점을 둔 법률

매체물관련단체나 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인정하고 책임을 부여한 법률이다.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들 자율규제단체의 지도·지원 및 유해성의 판단, 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등에 주력하는 개념이다.

□ 공공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기하고 있는 법률

공공성	자율성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심의기관 유해환경관련단체등 각종 시민단체
심의·유통단속(고발)·심판기능수행 자율규제지원 감시고발활동 및 시민운동지원	심의위주 기능수행 자율규제 감시고발활동, 시민운동
“청소년보호”라는 전체이익대표	매체물·업소·약물별 각종단체의 자율성 존중

□ 유해환경정화에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장치를 마련하는 법률

기존 법률들은 단속의 실효성을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오늘날 청소년유해환경은 국민 모두의 동참하에서만 정화될 수 있음에 착안하여 국민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유해약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고발토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고발활동을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단속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삼았다.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각 심의기관, 매체물·약물관련중앙행정기관, 지도단속기관 등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단속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검사·조사권, 수거·과기 명령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단속이 가능토록 하였다.

□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담행정조직의 설치근거로서의 법률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업소, 그리고 청소년유해약물이나 기타물건 등의 규제를 위한 다수의 정책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예시하면, 공통 심의기준작성, 필요시 직접심의, 유해매체물목록표 작성·통보, 시민 감시활동조장·지원, 기존의 심의위원회와의 연계사업, 청소년유해약물유통규제, 관련단체 지원 및 교육,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수거·과기 등 각종 행정처분과 이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행정심판권행사 등이다.

그러나, 기존행정부서 중 “청소년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동법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구는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 독일의 연방 청소년유해문서심의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 불법유통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초점을 둔 법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매체물은 대부분 정상적인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음성적으로 유통(복사, 수입, 유통 등)되고 있는 매체물들임을 착안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부여된 법적 기능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심의기능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에 대해 직접 심의가 가능하다.

둘째, 신고접수기능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신고접수 및 처리”를 주요기능으로 관장한다.

셋째, 수거파기기능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표시나 포장이 안된 매체물의 유통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거를 명령하거나 필요시 직접 수거·파기할 수 있다.

2) 현행법률과 청소년보호법과의 차이점

구분	기 존 법 률	청소년보호법
목적	○매체별 관련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이 목적(문화산업육성, 정보통신산업 육성등) ○청소년대상의 약물유통에 대한 고려 미약 ○유해업소를 공중위생·식품위생·풍속영업규제 등에서 파악, 청소년보호에 대한 고려미약	○청소년보호를 위해 각종 유해환경을 종합규제
보호 대상	○일반국민(일반법) -청소년보호는 부분적으로만 취급	○18세 미만자(특별법적 성격) - 청소년보호가 이 법의 목적

구분	기 존 법 률	청소년보호법
규제 근거	○ 일부 매체물영역에 대한 관련 법률 미비 - 특히 만화, 스포츠신문등 간행물에 대한 법적 규제근거 미비 ○ 일부 약물에 대한 단속근거 미비 ○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 미흡	○ 모든 매체물에 대해 심의후 규제가능 - 인쇄매체의 심의·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스포츠신문, 만화, 전자출판물, 인터넷, 컴퓨터프로그램 등 현행 법률체계에서 누락된 매체 내용에 대한 심의규제 근거 마련 - 기존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요청 ○ 법률적 규제장치가 미비한 매체물과 약물 영역등 적극 보완 ○ 유해업소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근거 규정 신설 - 대상 : 18세 미만자
심의 (매체물)	○ 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 및 적용의 불일치 등 - 공통심의기준 결여로 매체물간 심의내용 불일치 및 자의적 심의가능	○ 모든 매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청소년보호” 심사기준 제정 및 적용으로 기존위원회 심의기능 보강
규제 방법	○ 매체물관련법률과 단속법률의 연계성부족으로 법과 단속의 괴리현상 ○ 자율규제와 시민운동 근거없음	○ 각종 매체의 특성을 감안한 심의 및 유통의 유기적 체계 확립 - 청소년용과 성인용 구분, 포장판매, 표시의무, 등급구분, 방송시간제한, 자동판매기판매 금지 *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유통의 전과정이 아닌 최종 단계만 단속·처벌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와 단속근거 강화 ○ 자율규제와 민간단체의 감시활동권장 등 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 보강

구분	기 존 법 률	청 소 년 보 호 법
처분 절차	○정식사법절차(수사→기소→재판)에 따른 시간과 경비 과다 및 이로인한 단속·처벌의 실효성 미흡 - 사법적 판단위주(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만 고려), 이로인한 청소년 보호기능 미흡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준사법권 부여 및 시정요구와 고발권 등의 행사로 신속한 처리 및 단속·처벌 효과 거양 - 행정심판적 요소 도입
추진 주체	○각 매체별, 업소별, 약물별로 소관법률에 따른 해당부서장관 책임 하에 추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관련 업무 종합추진

자료 : 문화체육부

3) 다른 법령과 청소년보호법의 관계

□ 법률의 성격

실제로 이 법과 타법과의 상충관계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규제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이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제6조제1항 근거). 다만 벌칙조항에 있어서는, 매체물과 업소분야는 현행법률중 가장 처벌의 강도가 높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나 풍속영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약물분야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등 해당법률의 처벌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상충관계를 해소하였다.

□ 약물과 유해업소 관련조항도 타법률과 상충을 최소화하여 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약물의 경우 본드·부탄가스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필로폰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등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대마와 마약은 각각 대마관리법과 마약법의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예 :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합성진통제등)의 유통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유해업소의 경우도 타법률과의 상충은 없으며 다만 위반자의 처벌을 상향조정하였다. 처벌의 상향조정내용은 행정쇄신위원회나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법률의 제정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청소년유해약물의 유통규제가 가능하고 청소년유해업소정화도 가능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청소년의제조항 신설

공연법, 음비법등에서 18세미만자를 “연소자”라고 규정하는등 보호대상의 명칭이 개별법률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입법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타법률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 아동 등을 청소년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제6조제2항 근거).

□ 미성년자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관계

	미 성 년 자 보 호 법	청 소 년 보 호 법
특징	담배·술판매금지, 불량만화등 판매금지,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등에 한정(총7개조항)	매체물·약물·업소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관련사항 총망라(총56개조항)
보호대상	20세 미만자 적용	18세 미만자 적용
성격	경찰의 단속근거 법률	종합적·기본적 법률

미성년자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시대변화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20세미만자를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단속이 곤란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성년자보호법은 그 법률의 목적이 경찰청에서 청소년범죄단속을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그들을 선도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규제하기에는 곤란하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보호법의 내용을 흡수 반영하였기 때문에 동법률로 미성년자보호법의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단 미성년자보호법은 경찰의 단속근거

법규로서 기능수행과 18세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보호기능은 계속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경찰청 입장은 동법률제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감안하여 조만간 미성년자보호법 중 미진한 부분을 경찰청주관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관계

청 소 년 기 본 법	청 소 년 보 호 법
육성법률(단체, 지도자, 시설, 기금관리, 각종 프로그램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규정)	보호법률(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규정)
청소년 행정의 2대축(육성+보호)	

4)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과 청소년보호법의 관계

□ 매체물 규제와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영화, 도서, 음반·비디오·광고 등 각종 매체물은 국민의 알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들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서는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개별법률에서는 사전심의 또는 사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법률체계하에서 사전심의의를 택하고 있는 매체물은 비디오, 컴퓨터게임, 공연물(영화등 일부), 방송물(극영화, 만화영화 등), 선전물 등이며,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이 깊은 간행물의 경우는 사후심의가 원칙이다.

최근의 선진각국의 추세는 청소년보호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는다. 미국의 “통신품위법”, 독일의 “청소년유해문서 반포에 관한 법률” 등이 그 예이다.

□ 영화진흥법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1996. 10. 4 영화진흥법 제12조제1,2항 및 제13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정의 주요 골자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영화법 제12조 등에 규정된 영화심의제는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을 중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에 위배된다.

둘째, 비록 공윤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해 공윤위원이 위촉되고 심의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등 행정권이 공윤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윤도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위헌결정과 청소년보호법의 관계

공윤에 의한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결정의 핵심이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대상의 유해매체물에 대한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허가나 검열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뿐만 아니라 상기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함께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며 등급심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대상의 유통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유해매체물의 규제방식

본 절에서는 1997년 3월에 신규 제정될 청소년보호법과, 각종 매체와 관련된 현행 법률들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관련법조문과 해설을 수록하였다. 매체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세부적으로, 사전심의, 등급구분, 자율규제, 납본, 표시

· 포장·판매금지, 구분격리, 방송시간제한, 광고선전제한, 수거·파기명령, 사법심사 등 다양한 행정적·사법적 규제 방식이 있다.

〈표 21〉 「청소년보호법」과 현행 법률의 매체물 규제방식 비교2)

매체물 종류 보 호 법	음반·비디오·컴퓨터 게임		전자유기 기구 기판		공연물		정보통신물		방송물		간행물		광고물	
	현행법	보호법	현행법	보호법	현행법	보호법	현행법	보호법	현행법	보호법	현행법	보호법	현행법	보호법
심의결정 (8조) - 심의기관 (1항) - 사전심의 (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구분 (9조)	○	○	×	○	○	○	×	○	△	○	×	○	×	○
심의기준 (10조) ○ 일반인 기준 ○ 청소년 기준	○ ○	NA ○	×	NA ○	○ ○	NA ○	×	NA ○	○ ×	NA ×	×	NA ○	○ ×	NA ○
자율규제(12조) 납 본(13조)	○ ○	○ ×	×	○ ×	○ NA	×	○ ×	○ ×	△ ×	○ ×	×	○ △	×	○ ×
표시의무(14조) (벌칙: 3년 / 2천만원) 포장의무(15조) (벌칙: 2년 / 1천만원)	○ ×	○ ○	×	○ NA	○ NA	×	○ NA	○ NA	×	○ NA	×	○ ×	×	○ ○
표시·포장훼손금지(16조)(벌칙: 5백만원)	×	○	×	○	×	○	NA	○	NA	○	×	○	×	○
판매금지(17조) - 청소년대상판매·배포·대여·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1항)(벌칙: 3년/2천만원) - 표시없이상업적전시·진열·보관 금지(2항) - 포장없이상업적전시·진열 금지(3항) (벌칙: 2년 / 1천만원)	○ ○ ×	○ ○ ○	×	○ ○ NA	○ NA NA	×	○ ×	○ ○ NA	×	○ ○ NA	○ ×	○ ○ ×	×	○ ○ ○
구분격리 (18조) - 구분하여 상업적 전시·진열(1항) (벌칙: 2년 / 1천만원) - 자판기 전시·진열 금지(2항) (벌칙: 2년 / 1천만원)	○ ×	○ ○	×	○ ×	NA NA	○ NA	NA NA	NA NA	NA NA	×	○ ×	×	×	○ ×
방송시간제한(19조) (벌칙: 3년 / 2천만원)	NA	NA	NA	NA	NA	NA	NA	NA	△	○	NA	NA	×	○
광고선전제한(20조) (벌칙: 2년 / 1천만원)	×	×	×	×	○	×	×	×	×	×	×	×	△	○
수거·파기 명령(36조) (벌칙: 3년 / 2천만원) 시정명령(37조)	○ △	○ ○	×	○ ○	×	○ ○	NA ○	NA ○	NA ○	NA ○	△ ○	○ ○	△ ×	○ ○

* ○ : 직접규정, △ : 일부·간접 규정, × : 규정되어 있지 않음

NA : 매체특성상 규정할 필요가 없음

* 매체별 기존 현행법률

음반비디오물 : 음반및비디오물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유기 기구 기판 : 공중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공 연 물 : 공연법, 영화진흥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물 : 전기통신사업법

방 송 물 :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간 행 물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광 고 물 : 옥외광고물관리법, 음반및비디오물등에관한법률

1) 매체물의 범위

☐ 青少年保護法

第7條(媒體物の範圍) 이 法에서 媒體物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것을 말한다.

1.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音盤 및 비디오物
2.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한 電子遊技機具機板
3. 公演法 및 映畫振興法의 規定에 의한 映畫·演劇·音樂·舞踊, 기타 娛樂的 觀覽物
4. 電氣通信事業法, 電氣通信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音聲情報·映像情報 및 文字情報
5. 放送法 및 綜合有線放送法의 規定에 의한 放送프로그램중 敎育·音樂·娛樂·演藝物
6. 定期刊行物の登録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特殊日刊新聞(經濟·産業·科學·宗教분야를 제외한다), 一般週刊新聞(政治·經濟분야를 제외한다), 特殊週刊新聞(經濟·産業·科學·時事·宗教분야를 제외한다), 雜誌(政治·經濟·産業·科學·時事·宗教분야를 제외한다)와 同法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 이외의 刊行物 중 漫畫·寫眞帖·畫報類·小說 등의 圖書類, 電子出版物,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
7. 屋外廣告物等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看板·立看板·壁報·傳單 기타 이와 유사한 商業的 廣告宣傳物과 第1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各種 媒體物에 收錄·掲載·展示,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商業的 廣告宣傳物
8. 기타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健康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媒體物

☐ 해 설

이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해의 우려가 있는 모든 종류의 매체물을 포괄한다. 단,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청소년에게 유해의 우려가 없는 매체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로서, 공연물중 국악과 정기간행물중 일부(산업, 경제, 시사, 과학, 종교분야 등)가 제외된다.

현행 법률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기술,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매체물에도 동법을 적용토록 규정하였다(제8호). 여기에서 말하

2) 이명숙 외(1996), 「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 인용.

는 “적용”의 의미는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유해여부를 심의하는 대상이 되며, 관련단체와 협회 등의 자율규제 등의 대상이 됨을 말한다.

제7조에 해당되는 매체물일지라도 곧바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한 매체물(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에만 청소년대상의 유통규제가 가능하다.

매체물의 구분과 종류는 기존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음비법, 공중위생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이 관련된 주요 법률이다.

2) 유해매체물의 심의기관

□ 青少年保護法

第8條(青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 ①第27條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保護委員會(이하 “青少年保護委員會”라 한다)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의 青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青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青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當該 媒體物의 倫理性・健全性의 審議를 할 수 있는 機關(이하 “各 審議機關”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青少年保護委員會는 各 審議機關이 該當 媒體物에 대하여 青少年有害與否의 審議를 하지 아니할 경우 青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青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 단서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青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青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青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

1. 第1項 단서의 各 審議機關의 요청이 있는 媒體物

2. 第1項 단서의 各 審議機關의 青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는 媒體物

④青少年保護委員會의 審議・決定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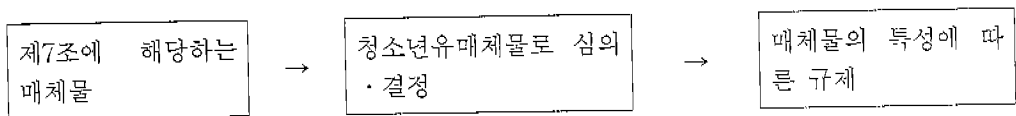
모든 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유해여부 심의가 가능케 된다. 다시말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심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매체물을 직접 심의할 수 있다.

심의방식은 사전심의·사후심의가 있는데, 개별법령에 의거 각 심의기관이 자율결정할 사항이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는 명백히 사후심의가 원칙이다.

매체물에 대한 법정 심의기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하여 5개 심의기관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결정함이 원칙이나, 단서조항에 의해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관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법에 의한 심의기관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될 수 있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관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4개이다. 매체물별 심의기관 유형은 <표 17>과 같다.

간행물에 대한 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함이 원칙이나 동법 제8조단서조항,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심의기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는 2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과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보호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림 4>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절차

〈표 22〉 매체물별 심의기관 유형

음반·비디오·컴퓨터게임	공연윤리위원회
공연물	공연윤리위원회
정보통신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물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간행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전자유기기구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광고선전물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해당위원회
기타 신종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해당위원회(위탁)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비디오물	음비법 17조(심의) ①販賣·配布·貸與·視聽提供등의 目的으로 비디오物을 製作하거나 輸入 또는 搬入推薦을 받고자 하는 者は 당해 비디오物의 내용에 關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公演倫理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販賣·配布·貸與등의 目的으로 音盤을 製作하거나 輸入 또는 搬入推薦을 받고자 하는 者は 당해 音盤의 內容에 關하여 미리 公演倫理委員會의 審議를 받을 수 있다.

* 음비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구 분	현 행 법 령
공연물	공연법 14조의2(각본등 심의) ①공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대 또는 음악연주등에 대한 실연심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합격되지 아니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한 공연은 이를 할 수 없다. 영18조의2(각본등 심사의 예외) ①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를 규정에 의하여 각본 또는 대본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극·음악·무용공연(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창작한 공연물은 제외한다) 2. 마술·차력 및 이에 준하는 공연 ②공연자가 제1항제1호의 공연에 대하여 연소자의 관람을 허용하고자 한 때에는 공연윤리위원회(특별시 관할구역안에서 공연하는 경우와 특별시·직할시·도지사 중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공연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공연지를 관할하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관람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영화진흥법 12조(심의) ①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연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편영화, 소형영화 및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합격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할 수 없다. (벌칙 : 심의미필·심의불합격한 영화상영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③공연법 제14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미성년자보호법 영3조(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의 허가등) 공연물의 공연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주무관청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을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영2조 : 미성년자관람 공연물의 범위)

구 분	현 행 법 령
방송물	방송법 17조·유선방송법 38조(위원회의 직무) ③위원회는 방송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송물에 대하여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한다. 1.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비디오물등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 (운동경기등의 중계 및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한다) 3.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 영7조의2(방송용 극영화의 심의범위)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 극영화 및 만화영화(비디오물등을 포함한다)의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방송국이 직접 제작하였거나 방송국이 기획하여 제작하게 한 것은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 (운동경기등의 중계 및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한다)의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라디오방송의 방송순서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광고물	음비법19조(선전물의 심의) ①비디오물에 관한 廣告나 宣傳物を 配布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者는 그 配布 또는 게시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演倫理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②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規定은 音盤에 관한 廣告나 宣傳物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벌칙 : 심의받지 않고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한자는 300만원이하 벌금)

* 음비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3) 등급구분

□ 청소년보호법

第9條(等級區分 등) ①青少年保護委員會와 各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時에 青少年有害媒體物로 審議·決定하지 아니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青少年有害의 程度, 利用青少年의 年齡, 當該 媒體物의 特性, 利用時間과 場所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當該 媒體物의 等級을 區分할 수 있다.

②青少年保護委員會는 各 審議機關이 該當 媒體物에 대한 青少年有害與否의 審議·決定時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의 對象, 種類, 方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해 설

제8조제1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용(18세미만) 매체물과 성인용(18세이상) 매체물을 구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9조제1항은 청소년용 매체물로 결정된 것에 한하여 세부등급(예: 초등, 중등, 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동법률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성인대상 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의 등급구분(예: 연소자불가, 등급외 판정 등)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타법률소관 사항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는 매체물은 직접 등급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각 심의기관에 등급구분을 요청할 수 있다.

청 소 년 용 (제9조)				성인용(청소년유해매체물) (제18조)
				동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님
유아용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그림 5> 등급구분의 기준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공연물	공연법 14조의3(年少者觀覽)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연소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인지의 여부와 관람이 가능한 경우의 연소자의 범위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범위는 연소자의 연령, 사회적 경험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영15조(공연신고) ①공연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물 제명·공연장소·관람료액 및 18세미만인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의 관람가부 등을 기재한 공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연소자관람가부 의견서(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말한다)사본 1부 (영18조의2제3항 : 공윤, 시도지사의 연소자관람허용에 관한 의견서)
방송물	종합유선방송법 92조(심의 의결) ①위원회는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채널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사전심의 신청된 방송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방송가 또는 방송불가의 결정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문제되는 내용이 부분적이고 그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는 조건으로 방송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영화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방송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영화의 등급 부여와 방송시간 제한에 대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⑤신청인이 제3항의 조건이나 제한을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방송불가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청소년보호법

第10條(青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基準) ①青少年保護委員會와 各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함에 있어서 當該 媒體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青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1. 青少年에게 性的인 욕구를 자극하는 煽情的인 것이거나 淫亂한 것
2. 青少年에게 暴惡性이나 犯罪의 衝動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性暴力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暴力행사와 藥物의 濫用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青少年의 健全한 人格과 市民意識의 形成을 저해하는 反社會的·非倫理的인 것
5. 기타 青少年의 精神的·身體的 健康에 明白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現在 國內社會에서의 一般的인 通念에 따르며 그 媒體物이 가지고 있는 文學的·藝術的·教育的·醫學的·科學的 측면과 그 媒體物의 特性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青少年有害與否에 관한 구체적인 審議基準과 그 適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해 설

각종매체물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기준은 우리사회의 사회규범 또는 윤리의식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매체물의 특성에 따라 하부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심의기관의 자체규칙 등)에서 동법의 심의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유해여부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국내외 음란·폭력물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동법에서는 3가지를 명시하였다. 즉, 시점은 “현재”이고, 지역은 “국내사회에서”이고, 판단기준은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다. 예외사항으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의 매체물”은 그 독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점, 지역, 예외사항 등에 관한 기준은 현재 각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공

통적인 고려사항이기도 하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비디오 ○ 일반인 기준	음비법 18조(심의기준) ①公演倫理委員會는 제1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審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비디오物에 대하여는 이를 審議받은 것으로 決定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부분을 削除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削除하고 審議를 받은 것으로 決定할 수 있다. 1. 憲法の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되거나 國家의 權威 또는 이익을 損傷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美風良俗을 해치거나 社會秩序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 기준	음비법 18조(심의기준) ②公演倫理委員會는 제1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審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비디오物에 대하여는 年少者가 視聽할 수 없음을 決定할 수 있다. 다만, 年少者가 視聽할 수 있음을 決定한 비디오物에 대하여는 年少者의 年齡, 社會的 經驗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視聽等級을 다시 세분할 수 있다. 1. 年少者의 건전한 德性涵養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2. 年少者에게 射倖心을 誘發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年少者에게 性的衝動을 誘發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年少者에게 暴惡性·殘忍性 기타 犯罪行爲를 助長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③제1항 및 제2항의 審議基準에 관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음비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구 분	현 행 법 령
공연물 ○일반인 기준	공연법 영16조(각본등 심의)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각본을 심의한 결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하거나 당해 부분의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적성국가(대한민국과 분쟁중에 있는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국민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영화진흥법 13조(심의기준) ①공연윤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에 합격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로서 해당 부분을 제한하거나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제한하거나 삭제하고 심의에 합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질서를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확립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19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벌칙 : 위반자는 100만원이하 벌금)

구 분	현 행 법 령
정 보 통신물 ○ 일반인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④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 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영16조의3(정보의 범위)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구 분	현 행 법 령
방송물 ○ 일반인 기준	방송법 20조·유선방송법 41조(심의규정) ①위원회는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유민주주의의 신장과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음란·퇴폐·폭력을 배제하고)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 국제적 우의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유선방송법) (유선방송법 벌칙 :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공서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음란물을 편성·송출한 자는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방송법 40조의2·유선방송법 16조(외국방송순서의 수입추천) ②공보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방송순서에 대하여는 그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순서 2. (음란·퇴폐·폭력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순서 3. 국제적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순서

구 분	현 행 법 령
광고물 ○ 일반인 기준	옥외광고물관리법 5조(금지광고물등)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5) 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청소년보호법

第21條(青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作成·通報) ①青少年保護委員會와 各 審議機關은 所管 媒體物에 대하여 青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한 때에는 當該 媒體物의 目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各 審議機關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目錄을 青少年保護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青少年保護委員會는 青少年有害媒體物의 目錄을 綜合한 青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青少年保護委員會는 各 審議機關, 青少年 또는 媒體物과 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 青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團束機關, 기타 青少年保護를 위한 關聯團體 등(이하 “關係機關등”이라 한다)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를 通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媒體物의 流通을 業으로 하는 個人, 法人, 團體에게 通報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들에게 通知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作成方法, 通報時期, 通報對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文化體育部令으로 정한다.

☐ 해설

동 조항은 청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단속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동 법률에서 도입한 중요한 제도중의 하나이다. 현행법률체제의 문제점은, 법규정과 단속의 괴리현상에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해 경

찰이 불량 음란만화를 단속하고 있으나 무엇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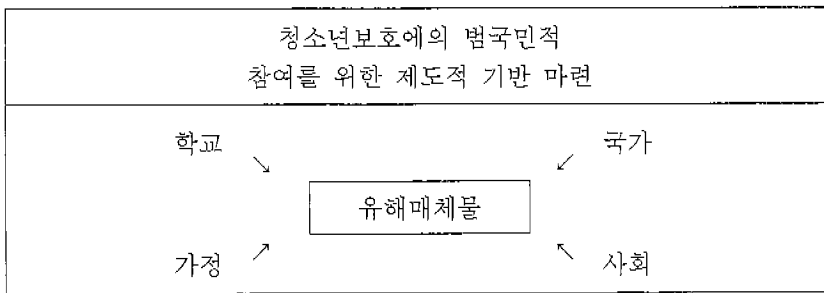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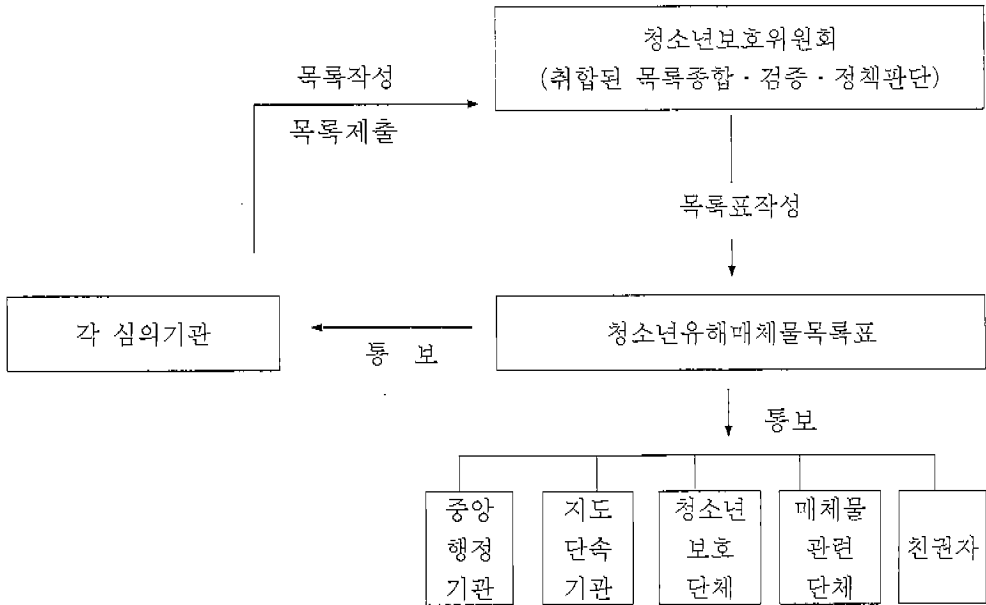
매체물 관련단체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보호 관련단체도 정보 부재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활동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는 기관은 권위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하고, 목록표를 통보받을 기관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목록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된다. 목록표의 통보기관은 각 심의기관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포함될 것이고,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내부무등에서 목록표를 정책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지도단속기관으로서 경찰, 검찰도 이를 유해매체물 단속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로서 유해환경민간감시단 등에도 통보하여 민간의 감시활동 및 시민운동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매체물 관련단체로서는 영화협회, 도서협회, 음반협회 등에 광범위하게 통보하여 자율규제 및 자율정화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친권자에게도 통보하여 자녀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목록표 작성 및 통보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며, 주별·월별·분기별 작성통보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전산망발달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중앙전산망을 설치하면 목록표를 즉시 일선현장에 배포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 법에 의한 각종 유통행위 제한이 영업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있으나, 청소년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영업권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인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음은 국내외 관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림 6〉 목록표작성·통보절차 도식

6) 유해매체물의 고시

□ 청소년보호법

第22條(青少年有害媒體物의 告示) ①青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青少年保護委員會는 第8條第1項 本文 및 第3項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確認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이를 青少年有害媒體物로 告示할 수 있다.
②各 審議機關은 青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하여 審議意見書를 첨부하여 青少年保護委員會에 當該 媒體物의 告示를 요청할 수 있다.
③青少年保護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을 告示할 때에는 告示의 事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體育部令으로 정한다.

□ 해 설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종단계의 고지방식이 고시제도이다. 목록표의 작성, 통보 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특정 매체물의 청소년유해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의 정도가 매우 높고 대량으로 유통될 수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고시”방법을 채택하여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 신고하여 → 단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고시제도의 도입취지이다.

고시의 주체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서 각 심의기관은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요청을 할 수 있다. 고시의 요건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 중에서도, 매체물 전파속도의 신속성과 전파범위의 광범위성을 고려하여 시급히 전체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청소년에 대한 해악의 정도 및 매체물 제작자의 악의성·비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고시의 효과로서, 당해 매체물에 대한 국민적 불매운동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고시로 인해 제작 및 유통업자의 도덕성 훼손 및 심리적 압박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시제도의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시로 인해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오히려 당해 매체물을 불법적으로 구입·이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역기능이 일부 우려되나, 동법률체계상 민간시민단체의 감시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강력한 행정처분권(수거·폐기등)이 발동됨에 따라 매체물유통자들이 더 이상 청소년대상의 유통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표 23〉 목록표작성·통보제도와 고시제도의 비교

목록표작성·통보 (제21조)	고 시 (제22조)
· 기관위주 통보 · 단속 및 자율규제목록표 · 의무규정 · 별도의 목록표 작성	· 일반 국민에게 고시 · 사전예방·교육에 목포 · 임의규정 · 관보활용
· 모든 유해매체물은 당연히 목록표에 포함	· 유해매체물일지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고시하고, 고시사유도 명시

□ 유사입법례

구 분	법 률 내 용
독일의 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 - 지정고시 : 유해문서로 심의결정되면 연방심의위원회 블랙리스트 목록에 등재후 연방관보에 블랙리스트로 등재·고시 - 판매, 대여, 열람 등의 규제 : 블랙리스트에 등재·고시된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보급·대여·광고규제를 받음 * 블랙리스트제소권자가 주정부, 청소년보호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
일본의 유해 매체물	“유해도서류 등 지정”제도를 조례로 법규화 - 개별지정, 포괄지정, 긴급지정 - 지정될 경우 판매·대여·배포 등 금지 * 일반시민도 청소년유해도서류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신청 가능

7) 신 고

□ 청소년보호법

第44條(申告) ①누구든지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생각되는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에 靑少年이 雇傭 또는 出入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靑少年保護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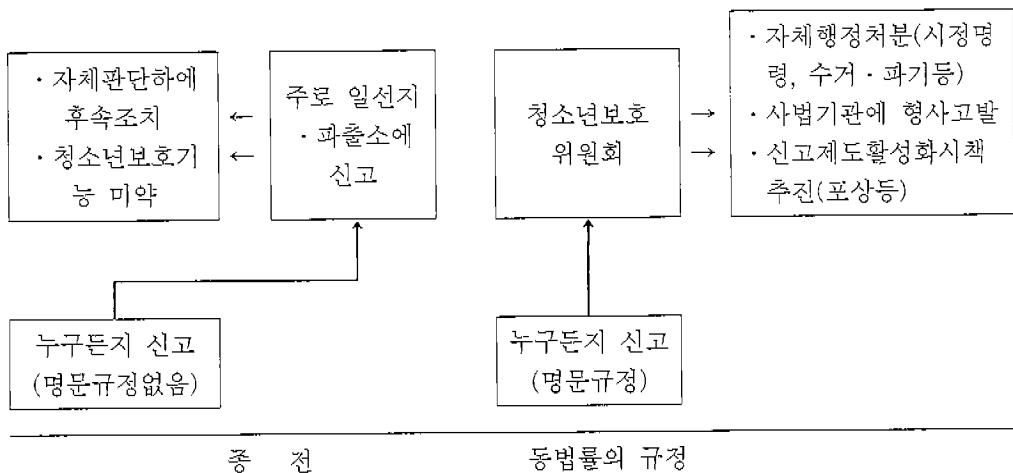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活性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施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申告者에 대한 褒賞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해 설

법적규정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나 동 법에서 신고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신고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아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규제를 범국민적 시민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고를 동 법에 규정하되 임의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종전에는 국민이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잘 몰랐으며 경찰 등에 신고해도 경찰력의 한계 및 기관간 협조체제 미약등으로 처리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상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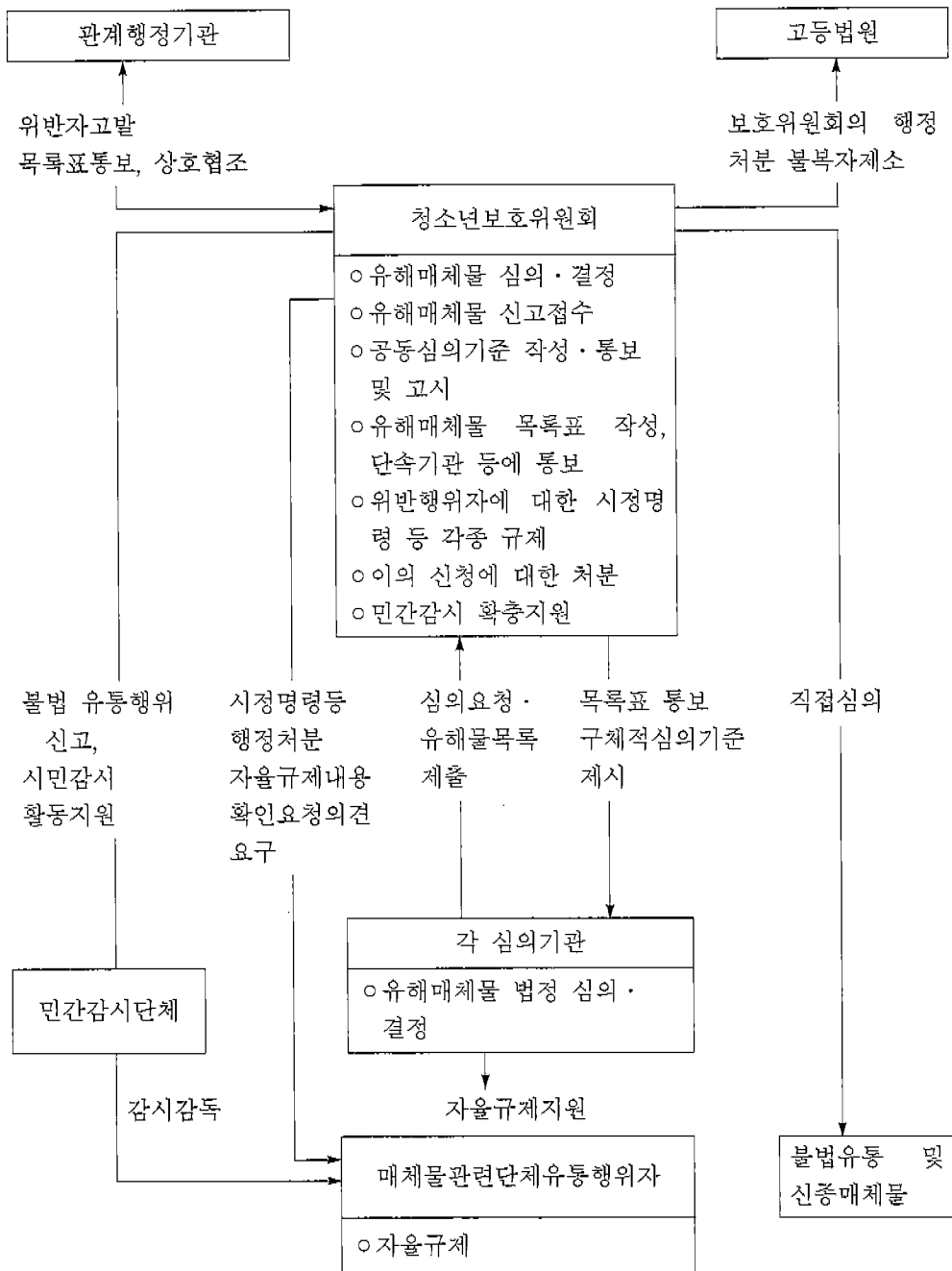
동 법률에서는 신고접수처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종래 경찰서나 민원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나타난 처리지연, 회답지연, 후속조치 부실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고접수건을 종합하여 단속기관에 고발하는 등 신속·강력하게 후속처리할 수 있는 유기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그림 7〉 청소년 보호법 시행전·후의 신고체계 비교

신고제의 기대효과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중심축이 된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관계부처와의 연계하에서 신고접수후 처리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단계 판단을 하고, 필요 시에는 자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형사고발권을 행사하여 검찰·경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법·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강력한 유통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청소년유해매체물 처리절차

8)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 청소년보호법

第12條(有害媒體物의 自律規制) ①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自律的으로 青少年有害與否를 決定하고 青少年保護委員會에 그 決定한 內容의 確認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요청을 받은 青少年保護委員會는 그 決定內容이 적합한 경우에는 確認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各 審議機關에 委託하여 處理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關聯團體는 미리 青少年保護委員會에 當該 媒體物에 대한 青少年有害與否의 決定에 관한 意見을 구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有害與否 決定과 確認의 節次 및 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12조 해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매체물이 자율규제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 전자유기기구기관, 영화·연극·음악·무용·기타 오락적관람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문자정보, 방송프로 중 교육·음악·오락·연예물, 일간지·주간지·잡지 등 정기간행물,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 도서류, 전자출판물, 상업적 광고 선전물 등이 포함된다. 자율규제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상기 매체물과 관련된 기관, 단체, 협회 등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단체 등이 스스로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스스로 판단하여(1차적으로) 스스로 유해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정화운동이 일어날 때만 비로소 청소년대상 유통규제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 12조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대부분의 매체물관련기관·단체·협회등은 자율규제를 요구하고 정부나 심의기관이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단속과정에 국가공권력이 적극 개입하는 한편 사전규제장치로서의 민간자율규제체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국가의 직접개입 부담을 줄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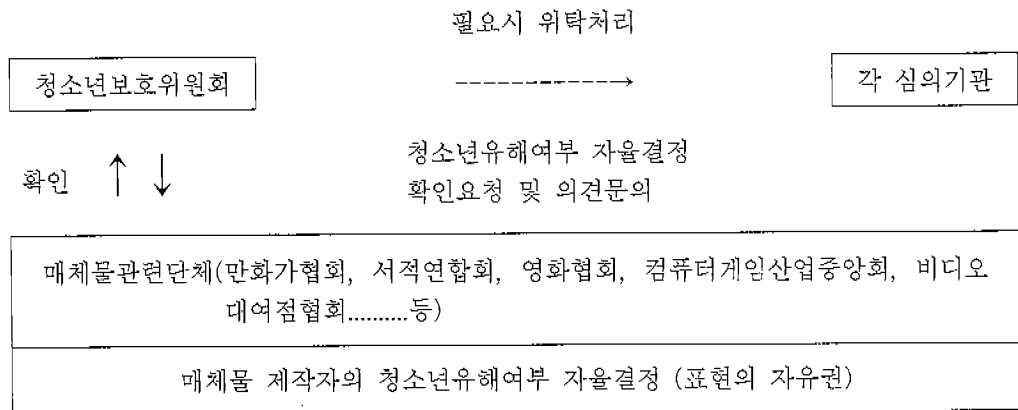
다. 일본의 경우는 “자율규제”를 유해매체물 정화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의 1차적인 책임을 관련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 조항은 매체물관련단체에 대한 적정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음성적 유통의 근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단체들이 자율규제를 제대로 못해 청소년에게 잘못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 정부(청소년보호위원회)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과 정부간의 유해매체물 규제의 단계별 분업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구 분	1 차	2 차	3 차
기 관	자율단체	법정 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국가)
내 용	사전 자율심의	사후 심의, 확인	사후 단속



〈그림 9〉 자율 규제 절차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비디오물	음비법 23조(協會) ①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는 音盤 또는 비디오物의 製作·販賣·貸與 또는 視聽提供등의 秩序를 自律的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業種別로 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에 관하여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방송물	방송법 30조의2(자체심의) 방송국은 그 내용에 방송순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하며,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하고는 방송순서가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음비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9) 납 본

□ 청소년보호법

第13條(納本) ①第7條第6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媒體物을 靑少年을 대상으로 流通시킬 목적으로 輸入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當該 媒體物 1부를 靑少年保護委員會에 納本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에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벌칙 : 과태료 1백만원)

□ 해 설

납본대상이 되는 간행물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주간지·잡지·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 도서류, 전자출판물 등이다. 단 대통령령에서 납본의무가 제외되는 간행물을 지정할 것이다. 납본의무자는 당해 간행물을 수입한 자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간행물을 납본하게 한 사유는, 동법률체계상 간행물의 청

소년유해여부심의·결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관련업무를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납본을 받게 될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납본규정을 둔 이유는, 간행물이 청소년에게 손쉽게 접촉되고 있으며 그 폐해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형편에서 음란폭력성 만화 등 유해한 수입간행물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납본자체가 사전심의는 아니며 음란·폭력간행물(특히 만화, 잡지등)의 무분별한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동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납본대상 간행물은 최대한 신중히 고려하고 그 범위를 극히 일부에 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비디오물	음비법 20조(納本) ①音盤 또는 비디오物을 製造하거나 外國音盤 또는 外國비디오物을 輸入한 者는 販賣·配布·貸與 또는 視聽提供하기 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音盤 또는 비디오物 1개를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納本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음비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구 분	현 행 법 령
간행물	정기간행물법 10조(納本)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定期刊行物を 발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공보처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출판사법 4조(刊行物の 納本) ①제3조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出版社가 刊行物を 出版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출판물 2부를 등록청을 거쳐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納本하여야 한다. (벌칙 : 납본의무위반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영5조(간행물의 납본)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납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납본서에 당해 간행물 2부를 첨부하여 출판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판(전정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정기간행물법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판사법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10) 표시·포장 의무

☐ 청소년보호법

第14條(表示義務) ①青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青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임을 나타내는 表示(이하 “青少年有害表示”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青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者, 青少年有害表示의 種類와 時期·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第15條(포장의무) ①青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이를 包裝하여야 한다. 다만, 媒體物의 특성상 包裝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包裝을 하여야 할 媒體物의 種類, 包裝義務者, 包裝方法, 기타 包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第16條(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青少年有害表示 및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包裝을 毀損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5백만원이하 벌금)

□ 해 설

청소년유해표시 대상 매체물은 표시 가능한 모든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구체적인 매체물유해표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다. 표시방법을 예시하면, 간행물, 음반·비디오물, 전자유기기구기관, 광고선전물 등은 당해 매체물에 유해표시를 하고, 공연물은 당해공연장에 유해표시를 하고, 정보통신물은 이용제공 전에 유해고지를 하고, 방송물은 방송전 또는 중간에 자막으로 고지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표시해야 할 필요성은 없고, 매체물의 성질에 따라 제작, 유통업자의 의견을 들어 신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컨대, 청소년유해간행물에 대해서는 “청소년구독을 금함”, “성인용”, “18세미만자 이용금지” 등에서 하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있는 매체물은 포장하여 유통시켜야 한다. 포장해야 할 매체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인데, 간행물과 광고선전물 등이 포장해야 할 매체물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성인에게 유통시킬 경우에도 동법의 해석상 유해표시 및 포장된 상태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외국의 경우도 포르노그래피(청소년유해간행물)는 “포장”하여 성인에게 판매함이 원칙이며, 비포장상태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방치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비디오물	음비법 6조(表示義務) 販賣·配布·貸與 또는 視聽提供등의 目的으로 音盤 또는 비디오物을 製作하거나 輸入하는 者는 당해 音盤 또는 비디오物마다 製作 또는 輸入한 者의 商號 및 登錄番號, 製造年月日 또는 輸入年月日, 제18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視聽等級, 圖書에 附隨되는 音盤 또는 비디오物은 圖書를 發행한 出版社의 商號 기타 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사항등 각각의 해당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칙 : 표시의무를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음비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1) 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 청소년보호법

第17條(販賣禁止 등) ① 青少年有害媒體物은 이를 青少年을 대상으로 販賣, 貸與, 配布하거나 視聽・觀覽・利用에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② 第14條의 규정에 의하여 青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媒體物은 青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當該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③ 第15條의 규정에 의하여 包裝을 하여야 할 媒體物은 包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當該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④ 青少年有害媒體物의 販賣禁止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해 설

판매금지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모든 유해매체물로서, 간행물, 음반, 비디오물, 전자유기기구기관, 공연물, 정보통신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방송물과 광고선전물은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르고 동조항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판매금지 등 유통행위제한의 구체적 종류로는,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또는 이용제공 등이 적용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금지”되는 유통행위의 종류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가두판매, 자동판매기・우편・통신판매 등 모든 방식의 판매가 금지된다.

개별매체물의 특성에 따라 제한되는 유통행위를 유형화해 보면, 간행물, 음반, 비디오물은 판매, 대여, 배포 등이 금지되고, 공연물과 방송물은 시청, 관람제공 등이 금지되며, 정보통신물과 전자유기기구기관은 이용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유해매체물을 전시・진열할 시에도 의무사항이 부과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표시 또는 포장한 후에만 판매 또는 대여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전시

· 진열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 이후에 성인용 음란·폭력물(예 : 포르노그래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첫째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하다. 둘째, 18세 이상자의 경우는 ①유해표시와 포장된 매체물에 한해 정상적인 유통경로(가두판매점 포함)로부터 구입가능 ②표시와 포장된 상태에서 우편·통신판매방식으로 구입가능하며(단, 연령확인하여야 함) ③자동판매기로부터 구입은 불가능하다.(관련조항제18조)

청소년대상의 판매 및 대여 금지조항은 유통행위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률에서 청소년대상 판매금지등과 관련하여 유통행위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통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을 판매, 대여할 때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유사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비디오물	미성년자보호법 4조(영업자의 의무) ②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그 영업장내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 1년이하 징역·300만원이하 벌금·구류·과태료) 미성년자보호법 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구류·과태료)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2.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도서, 도화, 음반 또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을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구 분	현 행 법 령
비디오물	음비법 17조(심의) ③누구든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를 받지 아니하거나 審議結果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販賣·配布·貸與 또는 視聽提供하거나 販賣·配布·貸與 또는 視聽提供할 目的으로 陳列 또는 보관하거나 不特定多數人이 出入하는 場所에서 上映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視聽等級을 위반하여 연소자(18歲미만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販賣·配布·貸與 또는 視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등록취소) 미성년자보호법 2조(금지사항) ①미성년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3.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유키장등에 출입하는 행위 ②제1항제3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와 제1항제5호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기준 및 그 출입제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1조(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장소중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풍속영업법 3조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풍속영업법 영5조(풍속영업소의 출입금지연령) 6. 제2조제5호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다만, 18세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음비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구 분	현 행 법 령
전 자 오락물	미성년자보호법 2조(금지사항) ①미성년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3.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유 기장등에 출입하는 행위 ②제1항제3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와 제1항제5호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기준 및 그 출입제 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1조(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 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장소중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풍속영업법 3조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 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풍속영업법 영5조(풍속영업소의 출입금지연령) 3. 제2조제2호의 전자유기 장업종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풍속영업법 7조(행정처분) 경찰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 령을 할 수 있다. (전자유기장이 18세미만자 출입금지 연령 위반)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때
간행물	미성년자보호법 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 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2.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도서, 도화, 음반 또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 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을 소지, 제작, 수입, 수 출하는 행위

12) 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 청소년보호법

第18條(區分·隔離等) ①青少年有害媒體物은 이를 青少年에게 流通이 허용된 매체물과 區分·隔離하지 아니하고서는 販賣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②青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6號에 해당하는 것과 音盤 및 비디오物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販賣하기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③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媒體物의 區分·隔離 및 販賣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해 설

구분·격리해야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분·격리가 가능한 시각적 매체물이 이에 해당되며 간행물, 비디오물, 전자유기기구기관 등이 구분, 격리해야 할 매체물의 예가 될 것이다.

자동판매기에 전시·진열이 금지되는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간행물, 음반·비디오물 등이다. 일본의 경우도 유해도서류, 장난감 등을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진열할 때도 성인용과 별도로 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였다.

□ 유사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비디오물	음비법 영제7조 :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등급에 따라 비디오물을 분리·진열할 것

13) 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 청소년보호법

第19條(放送時間 制限) 青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5號에 해당하는 것과 第7條第7號에 해당하는 廣告宣傳物중 放送을 利用하는 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時間에는 이를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해 설

방송의 건전성이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본 조항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특히 음란·폭력성 방송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주로 심야이외의 시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방송물의 방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인 방송제한시간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것에 대하여는 특정시간대에 한해서 방송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동 조항이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방송이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에 비추어 “법률”에 유해방송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방송위원회 규칙등 하부법령에서는 동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제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14) 유해매체물의 광고선전 제한

□ 청소년보호법

第20條(廣告宣傳 制限) ①青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규정에 의한 看板, 立看板, 壁報, 傳單,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宣傳物은 이를 公衆이 通行하는 場所에 公衆연히 設置·附着하거나 配布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②青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규정에 의한 廣告宣傳物중 다른 媒體物과 기타 物件 등에 收錄·掲載·展示·기타의 方法으로 포함된 것은 當該 媒體物과 기타 物件 등을 青少年을 대상으로 販賣·貸與·配布하거나 視聽·觀覽 또는 利用에 제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廣告宣傳物の 制限方法·場所, 기타 廣告制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해 설

동 조항은 광고선전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물에 한해 청소년대상 유통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식은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에 유해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설치·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며, 극장내부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광고선전은 가능하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은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을 이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기타 다른 물건에 포함하여 광고선전하는 행위의 예는, 화장품, 완구류, 문구류 등에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들 화장품이나 완구류까지 청소년대상 유통금지물이 된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공연물	공연법 16조(선전물) 누구든지 공연에 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 또는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건강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선전물이나 허위의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위반자는 100만원이하 벌금)
비디오물	음비법 제9조(선전물의 심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포 또는 게시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음비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3.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약물의 규제방식

1) 유해업소의 정의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해 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정시 관계부처 협의후 “청소년유해업소”명칭을 법규화하였다. 동법률 제정 취지인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정의가 필요하였다.

유해업소에 관한 법적용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유해업소에 관련된 주요 법률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종류를 비교해 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 유해업소의 종류에 관한 관련법률 비교

관련 법률	청소년기본법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입법 취지	청소년육성차원에서 선언적으로 규정	풍속영업의 규제차원에서 규정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규정
업소 종류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터키탕 - 사행행위장 - 무도학원 · 무도장 - 노래연습장 - 담배소매업 - 유독물제조 · 판매 · 취급소	- 유흥주점 - 사우나탕 · 터키탕 - 성인용전자유기장 - 소극장 (연소자불가) - 무도학원 · 무도장 - 노래연습장 - 만화대여점 - 비디오판매 · 대여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사우나탕 · 터키탕 - 성인용전자유기장 - 사행행위장 - 소극장 (연소자불가) - 무도학원 · 무도장 - 노래연습장 - 만화대여점 - 비디오판매 · 대여점 - 비디오 감상실 - 담배소매업 - 유독물제조 · 판매 · 취급소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 유흥주점	풍속영업법 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2조 1호: 법 제2조제1호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영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사우나탕 · 터키탕 · 성인용 전자유 기장	풍속영업법 2조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유기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2조2호: 법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유기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장업을 말한다.

구 분	현 행 법 령
○ 사우나탕 · 터키탕 · 성인용 전자유기 장	공중위생법 영3조(위생접객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목욕장업 나. 특수목욕장업 1) 사우나탕업 2) 터키탕업 3)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 3. 유기장업 가. 전자유기장업 : 기계식유기기구, 전자유기기구, 체련용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유기장업 1) 성인용 전자유기장업 2)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
○ 소극장	풍속영업법 2조 3. 공연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2조3호: 법 제2조제3호에서 “공연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객석이 300석이하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연극·음악·무용등 예술적 관람물의 전용공연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영업(이하 “소극장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음반·비디오 판매점·대여점	풍속영업법 2조 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업과 대여업
○ 만화대여점·무도학원·무도장	풍속영업법 2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영2조4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이라 함은 다음의营业을 말한다. 가. 만화대여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 나. 무도학원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무도과정을 교습하는 영업(학원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을 제외 한다) 다. 무도장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영업

구 분	현 행 법 령
○ 노래 연습장	풍속영업법 2조 6.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영2조5호: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받는 영업(이하 “노래연습장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57조(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 ①법 제48조제4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행하는 업소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중 터키탕업 3.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무도장업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5.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유독물판매업 및 유독물취급업 7.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2) 유해업소 고용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24조(青少年有害業所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①青少年有害業所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 해 설

개별법률의 제정취지와 목적, 상황의 변화, 정책적 비중강화 등의 사유로 인해 특정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더라도 동 법률에서 재차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대상의 담배판매 금지사항을 3개 법률에서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에서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유해업소와 유해약물을 이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관련법률로서도 규제가능하나 동 법률의 명칭이 “청소년보호법”으로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기본적인 법률이므로 타 법률과 일부 중복되더라도 규정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보호법률”을 지향하고, 유해업소와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정책적 비중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도 매체물, 약물, 업소 등 모든 유해환경요인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동법에서의 청소년유해업소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관한 규정이 타법률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다만 위반시 처벌만 더 강하게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기소단계에서 신법우선의 원칙을 따르고 제반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률을 적시하여 소추절차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안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등 적시가 가능할 것이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풍속영업	풍속영업법 3조(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18세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영4조(유흥종사자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종사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영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2. 댄서 3.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일반음식점에서 안락한 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자 및 단란주점에서 손님 노래를 반주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 1인을 제외한다) 4. 무용을 하는 자 5.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6. 유흥사회자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돌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제7조제8호 라목의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 풍속영업법 7조(행정처분) 경찰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풍속영업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유해업소 출입제한

☐ 청소년보호법

제24조(青少年有害業所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②青少年有害業所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當該業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親權者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률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보호법 2조(금지사항) ①미성년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3.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유키장등에 출입하는 행위 ②제1항제3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와 제1항제5호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기준 및 그 출입제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1조(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미성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 이외의 공연물을 공연 하는 장소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장소중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3.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장소 미성년자보호법 4조(영업자의 의무) ②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그 영업장내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 1년이하 징역·30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③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대하여 성도덕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3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구 분	현 행 법 률
풍속영업 감독	풍속영업법 3조(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별칙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영5조(풍속영업소의 출입금지연령)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에서의 출입을 금지하는 풍속영업별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의 유흥접객업의 경우는 20세미만의 자 2. 제2조제2호의 특수목욕업장중 터키탕업의 경우에는 20세미만의 자 3. 제2조제2호의 전자유기장업중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 4. 제2조제3호의 소극장업중 18세미만의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하는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5.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의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경우에는 20세미만의 자 6. 제2조제5호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다만, 18세 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2. 운영기준 가. 공통사항 : (생 략) 나. 개별기준 (1) 만화대여업 (가) 업소의 운영세칙을 정하여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음용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가) 업소의 운영세칙을 정하여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업소내에서 음식물 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를 상영하거나 음반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수강료표 또는 입장료표를 붙여야 한다. (마) 무도학원에서는 무도장영업을, 무도장에서는 무도학원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분	현 행 법 률
풍속영업 (계속)	(3) 소극장업 업소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노래연습장 (가) 출입구등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표를 붙여야 한다. (나) 출입구등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풍속영업법 7조(행정처분) 경찰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풍속영업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유해약물의 판매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4. “青少年有害藥物등”이라 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藥物과 物件을 말한다.

제26조(青少年 有害藥物등으로부터 青少年保護)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青少年有害藥物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 술·담배제외한 유해약물판매시)

(벌칙 :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 술·담배를 판매시)

☐ 해 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약물을 동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하여 청소년대상의 유통을 규제할 근거를 제공한다. 청소년유해약물의 종류는 기존 법령의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였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과 물건 등을 포함하여 현행 약물관련법에서 누락된 신종 유해약물이나 물건 등도 규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하는 청소년유해약물의 종류는, 술, 담배 필로폰,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초,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과 물건이다.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합성진통제 등 기존 법률에 규제근거가 없는 약물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이다.

술,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미 타법률에서도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상 18세미만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금지토록 규정하여 술,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약물별로 개별 법률에서 유통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차원에서의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인 동법률에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규제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항을 제정하였다.

신종 유해약물 개발, 보급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과 물건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산업발달에 따른 성기구 등의 판매(일부지역에 이미 판매중)가 예상되고 완구류의 아동유해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통규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에 약물남용 예방시책 추진,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작성 통보 등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약물보호의 주관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약물은 매체물과 유통규제방법에 있어서 비슷(심의를 제외)하므로 준용조항을 규정(제4항)하였다. 즉, 청소년유해약물의 자율규제, 청소년유해약물 표시의무 표시, 포장의 훼손금지, 신고 등이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통규제방식이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률
○ 술 · 담배	국민건강증진법 9조(禁煙을 위한 措置)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담배事業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담배事業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과태료 50만원 이하) ③담배事業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과태료 30만원 이하) 영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 3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9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未成年者保護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보호법 4조(영업자의 의무) ①담배 또는 주류판매자 및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흡연 또는 음주할 것을 알고 이들을 판매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1년이하 징역 · 300만원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미성년자보호법 6조(벌칙)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미성년자보호법 2조(금지사항) ①미성년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을 하는 행위 2. 음주를 하는 행위

구 분	현 행 법 률
○ 술 · 담배 (계속)	미성년자보호법 5조(담배등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미성년자가 흡연 또는 음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수거하여 소유권자 기타 권리인(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반환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다. 풍속영업법 3조(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자(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풍속영업소에서 담배나 술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2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풍속영업법 7조(행정처분) 경찰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풍속영업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구 분	현 행 법 률
○본드·신나·부탄가스	유해물질관리法 22條(有毒物の 販賣 및 供與의 제한) ①有毒物營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有毒物을 販賣하거나 供與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1년이하·5백만원 이하) 1. 14歲 未滿者 2. 精神疾患者 또는 痲藥 기타 有毒物질의 中毒者 유해물질관리法 26條(幻覺物質의 吸入 등의 禁止) ①누구든지 興奮·幻覺 또는 痲醉의 作用을 일으키는 有毒物을 含有하는 物質 또는 이에 준하는 有害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이하 “幻覺物質”이라 한다)을 攝取 또는 吸入하거나 이러한 目的으로 所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幻覺物質을 攝取 또는 吸入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情을 알면서 이를 販賣 또는 供與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3년이하·1천만원이하) 영11조(환각물질)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환각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콜 2. 제1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접착제 및 도료 3. 부탄가스
○대마초	관련조문 없음
○마약	마약法 46條의3(限外麻藥의 販賣 등의 制限)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는 限外麻藥을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1. 18歲 未滿者 2. 精神病者 또는 痲藥 기타 藥物中毒者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등)	향정신성의약품法 20條(販賣등의 制限)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해서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1. 18歲 未滿者 2. 精神病者 기타 藥物의 中毒者 (벌칙 : 10년이하·1천만원이하)

5) 유해약물의 교육·치료·홍보

☐ 청소년보호법

제26조(有害藥物등으로부터 靑少年保護)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藥物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치료·재활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를 작성하여 靑少年有害藥物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에 通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률
○술·담배	국민건강증진법 8조(禁煙 및 節酒運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본드·신나·부탄가스	관련 조문 없음
○대마초	대마관리법 12조의3(大麻中毒者の 治療保護)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大麻使用者의 大麻中毒與否를 判別하거나 大麻中毒者로 判明된 者를 治療保護하기 위하여 治療保護機關을 設置·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벌칙 : 2년이하·100만원이하)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大麻使用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에서 大麻中毒與否의 判別檢査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大麻中毒者로 判明된 者에 대하여 治療保護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判別檢査期間은 1월 이내로, 治療保護期間은 6월 이내로 한다. (벌칙 : 2년이하·100만원 이하)
○마 약	마약법 50조(麻藥中毒者の 治療保護)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麻藥使用者의 麻藥中毒與否를 判別하거나 麻藥中毒者로 判明된 者를 治療保護하기 위하여 治療保護機關을 設置·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벌칙 : 2년이하·2백만원이하)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麻藥使用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에서 麻藥中毒與否의 判別檢査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麻藥中毒者로 판명된 者에 대하여 治療保護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判別檢査期間은 1月 이내로, 治療保護期間은 6月 이내로 한다. (벌칙 : 2년이하·2백만원이하) (참고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13035호, 1990.7.6))

구 분	현 행 법 률
○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등)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1조(向精神性醫藥品 中毒者の 治療保護)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向精神性醫藥品 使用者의 向精神性醫藥品 中毒與否를 判別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中毒者로 判明된 者를 治療保護하기 위하여 治療保護機關을 設置·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벌칙 : 2년이하·2백만원이하)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向精神性 醫藥品 使用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에서 向精神性醫藥品의 中毒與否의 判別檢査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 中毒者로 判明된 者에 대하여 治療保護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判別檢査 期間은 1月 이내로, 治療保護期間은 6月 이내로 한다. (벌칙 : 2년이하·2백만원이하) (참고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13045호 1990.7.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2조(向精神性醫藥品 中毒者の 報告) 제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의 長 또는 向精神性醫藥品取扱醫療業者는 向精神性醫藥品에 中毒된 者를 發見한 때에는 그 中毒者の 住所·姓名·年齡·性別 및 中毒된 向精神性醫藥品의 品名을 市·道知事を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向精神性醫藥品 中毒者를 治療한 때 또는 그 死亡을 診斷한 때에도 또한 같다. (벌칙 : 1년이하·1백만원이하)

6) 유해약물의 표시

□ 청소년보호법

第26條(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⑤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靑少年有害藥物 등에 이를 준용한다.

第14條(表示義務) ①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임을 나타내는 表示(이하 “靑少年有害表示”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者, 靑少年有害表示의 種類와 時期·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包裝義務) ①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이를 包裝하여야 한다. 다만, 媒體物의 특성상 包裝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包裝을 하여야 할 媒體物의 種類, 包裝義務者, 包裝方法, 기타 包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表示·包裝의 毀損禁止) 누구든지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 및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包裝을 毀損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행법률
○담배	국민건강증진법 8조(禁煙 및 節酒運動)·③담배事業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벌칙 : 1년이하·5백만원이하) ④酒稅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벌칙 : 1년이하·5백만원 이하)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기방법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영12조(흡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배갑포장지의 앞·뒷면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주류	국민건강증진법 영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규칙4조(경고문구의 표기기준등) ①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기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며, 파음경고문구의 표기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본드·신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2조(有毒物의 販賣 및 供與의 제한) ②有毒物販賣業者, 藥事法에 의한 藥局開設者 또는 醫藥品販賣業者는 第20條第2항의 規定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有毒物을 販賣 또는 供與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1년이하·5백만원이하)

4. 청소년보호 전담기구의 권한

1) 보고·검사·조사

☐ 청소년보호법

第34條(報告 등) 青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確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青少年有害媒體物과 青少年有害藥物 등을 流通하는 者와 青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벌칙 : 1백만원이하 과태료)

第35條(檢査 및 調査 등) ① 青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確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青少年有害媒體物과 青少年有害藥物 등의 流通 및 青少年의 有害業所 雇傭과 出入 등에 관련된 帳簿, 書類, 場所,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벌칙 : 3백만원이하 과태료)

② 青少年保護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學識, 經驗이 있는 者에게 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業務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해 설

동 조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필요한 정책수단과 준사법권을 부여한 조항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여받은 권한의 종류는 보고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장부·서류·장소·물건의 검사·조사권, 의견진술청취권, 감정의뢰권 등이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하였다. 또한, 소속공무원이 검사·조사 등을 할 경우에는 증표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 청취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서 사무 및 경영상태,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수거·파기

□ 청소년보호법

第36條(收去·破棄) ①青少年保護委員會는 第14條의 규정에 의하여 青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하거나 第15條의 규정에 의하여 包裝되지 아니한 青少年有害媒體物이 유통되고 있거나, 各 審議機關의 青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媒體物로서 青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된 경우에는 그 所有者, 기타 當該 流通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그 媒體物의 收去를 命할 수 있다.

(벌칙 :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②青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收去命令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收去命令을 받은 者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收去 또는 破棄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收去·破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해 설

동법률의 제정취지중 하나가 불법·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특히 영화사전심의의 위헌결정후 향후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사회에 널리 무제한적으로 유통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불법·음성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를 공공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개입하여 차단시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로서 형사처벌, 행정벌, 과징금이외에 당해 매체물자체를 수거·파기함으로써 동법률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권한의 하나로써 수거·파기권 부여가 필요한 것이다. 수거·파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재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통행위가 반복 발생할 우려가 있다.

수거·파기대상 매체물은 두가지 부류로 분류된다. 첫째 유해표시나 포장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둘째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수거·파기권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당해 매체물의 유통이 청소년에

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수거·파기의 방식은, 당해 매체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 유통과 관련되는 자에 대한 수거명령을 발하는 경우와, 청소년보호위원회(소속공무원)가 직접 수거·파기하는 방식이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직접개입은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및 수거의무자를 알수 없을 경우에 적용된다.

□ 유사 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비디오물	음비법 22조(販賣·貸與·禁止措置等) ①文化體育部長官, 市·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音盤 또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收去하여 폐기하게 하거나 流通 關聯業者에 대하여 販賣·配布·貸與 또는 視聽提供등의 금지를 명하거나 당해 業所의 營業이 違法한 것임을 알리는 揭示物을 附着하게 하거나 당해 音盤·비디오物 또는 당해 營業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器械 또는 施設物에 封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가 販賣·配布·貸與 또는 視聽提供등의 目的으로 製造한 音盤 또는 비디오物 2. 제15조 또는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輸入·製造 또는 搬入된 音盤 또는 비디오物 3. 제1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物 (해석 - 심의위반 비디오물) 4. 製造에 대한 正當한 權利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販賣·配布·貸與 視聽提供등의 目的으로 製造한 音盤 또는 비디오物 (별칙 :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게시물 부착·봉인을 거부, 방해, 기피한자는 300만원이하 벌금) 미성년자보호법 5조(담배등에 대한 조치) ②경찰서장은 미성년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도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증명서를 교부하고 수거하여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음비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구 분	현 행 법 령
간행물	미성년자보호법 5조(담배등에 대한 조치) ②경찰서장은 미성년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도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증명서를 교부하고 수거하여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광고물	옥외광고물관리법 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도지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또는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식 품	식품위생법 56조(廢棄 處分등)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者가 第4條내지 第6條, 第7條, 第4項, 第8條, 第9條 第4項, 第10條 第2項, 第11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 등을 押留 또는 폐기하거나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제거하기 위하여 用途·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조치를 命할 수 있다.
일반 행정	행정대집행법 2조(代執行과 그 費用徵收) : 法律(法律의 委任에 의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直接 命令되었거나 또는 法律에 依據한 行政廳의 명령에 의한 行爲로서 他人이 代身하여 行할 수 있는 行爲를 義務者가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手段으로서 그 履行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害할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當該行政廳은 스스로의 義務者가 하여야 할 行爲를 하거나 또는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費用을 義務者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시정명령

☐ 청소년보호법

第37條(是正命令)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3條 내지 第20條, 第24條,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의 種類, 節次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5條(刑의 減輕) 第50條 내지 第52條 및 第54條의 罪를 범한 者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해 설

시정명령의 요건은 이 법에 의한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 사항(제13조 내지 제20조, 제24조, 26조)이 발생한 경우이다. 시정명령에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을 부과할 필요는 없다. 이유는 이 법에 의한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행위는 이법에서 각종 처벌(징역, 벌금, 과태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시정명령을 발하는 취지는 시정명령의 준수시에 법정 형량을 감경토록 하여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신속히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함이다(관련조항 제55조).

이 법은 장소제한이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주로 매체물등의 청소년 대상의 “유통”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유통과 관련된 시정명령만 부과하였을 뿐, 타법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의 대표적인 예인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을 이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영업정지 등의 시정명령은 타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다.

제13조 내지 제20조 및 제24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의 종류는 자동적으로 정해지므로, 시정명령의 종류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조문별로 적용될 시정명령의 종류는 <표 25>와 같다.

〈표 25〉 시정명령의 종류

법률 규정	의 무 내 용	시정명령의 종류(예)
제13조 제14조	납 본 표시의무	납본명령 당해매체물에 표시명령, 공연장 표시명령, 등급표시명령, 표시방법변경명령, 표시시기에 관한 명령 등
제15조 제16조 제17조	포장의무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판매금지등	포장명령, 포장방법변경명령 등 표시·포장의무 준수명령 등 판매금지명령, 대여금지명령, 배포금지명령,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명령, 전시·진열금지명령 등
제18조	구분·격리등	구분·격리명령, 전시·진열금지명령, 자동판매기에 의한 전시·진열금지명령 등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방송시간제한 광고·선전제한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유해약물판매금지	방송시간제한 준수명령 등 설치·부착금지명령, 배포금지명령 등 고용금지명령, 출입제한명령 등 유해약물판매금지명령 등

□ 유사입법례

구 분	현 행 법 령
공연물	풍속영업법 6조(위반사항의 통보등) ①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풍속영업법 7조(행정처분) 경찰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때

* 풍속영업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구 분	현 행 법 령
방송물	방송법 21조(시정 및 제재) ①위원회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정 및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내용의 정정·해명 또는 취소 3. 해당 방송순서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1년이내의 범위 안에서의 출연 또는 연출의 정지 (벌칙 : 심의결정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종합유선방송법 98조(시정조치의 명령) ①위원회는 심의결과 종합유선방송 내용에 이 규정에 위반될 때에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자에게 경고·해명·사과·정정·당해 광고방송 또는 방송 프로그램의 중단(이하 “시정조치”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②수신자나 관련단체로부터 종합유선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불만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이유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유민주주의의 신장과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간행물	풍속영업법 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풍속영업법 영2조4호: 만화대여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 풍속영업법 7조(행정처분) 경찰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만화대여점이 출입금지명령 위반)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때

구 분	현 행 법 령
공정거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수련시설	청소년기본법 29조(시정명령) :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논문 및 저서〉

- 교육개혁심의회 (1987). 교육환경 개선방안. 서울: 교육개혁심의회.
- 김문조 (1991). 청소년문제와 사회환경. 한국의 청소년과 교육환경. 서울: 대한 YMCA연맹·대한YWCA연합회.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1995).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활동 종합보고서.
- 도종수 외 (1990).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보고서.
- 독일청소년유해문서연방심사위원회 (1995). ‘95 연간 활동보고서.
- 東京都 편 (1995). 동경도 청소년보호육성조례 해설서.
- 문화체육부 (1995). 출판정책자료집. 문화체육부 출판진흥과.
- 문화체육부 (1997). 청소년보호법 설명자료집.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서울 YMCA연맹 (1990). 향락문화추방 시민운동 보고서. 서울: 서울 YMCA 연맹.
- 失鳥正見 (1987). 유해환경이란 것은. 소년보도, 제32권, 제4호.
- 유수현 (1989). 청소년유해환경과 지도대책. 청협, 제13권, 제4호.
- 유재천 (1989). 청소년성교육의 유해환경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서울: 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
-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 시민협의회 (음대협) (1996). 음대협 활동 홍보자료 (미발간자료).
- 이광호 역 (1992). 청소년유해환경과 규제의 정당성. 한국청소년연구, 제9호.
- 이상섭 (1991). 교육환경론. 서울:형설출판사.
- 이영 역 (1992). 인간발달생태학. 서울:교육과학사. (원저: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이춘재 외 (1988). 청년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日本 青少年育成國民會議 편 (1985). 청소년유해환경-歐美諸國에 있어서 각종규제와 日本의 현상과 과제. 동경:청소년육성국민회의.
- 임형진 (1991). 청소년유해환경정화,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청소년수법활동을 위한 대국민토론회 주제내용 모음집. 체육청소년부.
- 청소년학회 (1992). 청소년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체육청소년부.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3). 외국의 간행물윤리제도.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이명숙 외 (1996). 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한준상 (1991). 청소년유해환경과 청소년정책. 한국의 청소년과 교육환경. 서울: 대한YMCA연맹·대한YWCA연합회.
- Bronfenbrenner, U. (1974a). The origins of alienation. *Scientific American*, 231, 53-61.
- Bronfenbrenner, U. (1974b). Developmental research and public policy. In J. Romanyshyn(Ed.), *Social science and social welfare*. NY: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Bronfenbrenner, U. (1975). Reality and research i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19, 439-469.
- Lewin, K. (1931). Environmental forces in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 Murchison(Ed.), *A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Worcester, Mass.: Clark University Press.
- Lewin, K. (1935).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Y: McGraw-Hill.
- Lewin, K. (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Selected theoretical papers*. NY: Harper.

〈대한민국 법령〉

공연법

공중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대마관리법

마약법

미성년자보호법

방송법

소년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영화진흥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종합유선방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